

중소기업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6. 12.

김 학 수

서 언

기업에 대한 과세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쟁과 함께 정책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법인을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이고 기업에서 창출된 소득이 각 경제주체로 배분되어 흘러가는 도관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자연인과 동일시하고 누진과세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특징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법인을 자연인과 엄격히 구분하는 국제적 추이와는 크게 다르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시각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사회에 지속되어왔고 그 결과로서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하는 조세제도가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경우 조세지원제도에 기업규모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을 우대하기보다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경제주체이다. 중소기업이 왕성히 설립되고 건실한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에 의해 중소기업의 성장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원의 김학수 박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는 실증분석을 비롯하여 주요국의 과세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들이 보다 성장지향적이고 혁신지향적인 경제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중소기업 과세체계가 보다 우리 경제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일조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한 김학수 박사는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세미나에서 유익한 논평으로 보고서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원내외 전문가 여러분과 익명의 외부 심의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필요로 한 많은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담당한 김현숙 전문연구원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의 관련 세제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세법연구센터 정경화 전문연구원과 김민경 연구원에게도 깊이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의견이며, 저자가 속한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16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 형 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기준점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오랜 기간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해왔다. 그러한 정책들의 목적은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책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이 정부지원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회하고자 정부는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중기업과 소기업의 범위 기준을 기존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했다. 기업 쪼개기 이외에, 매출액은 기업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범위 기준 설정에 따른 결집효과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제도 개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하더라도 기업의 규모가 해당 매출액 기준에서 결집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살펴봤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추이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연구개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및 재정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 수준과 우리나라 연구개발 강도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고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구개발 활동의 총량이 대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성과라 할 수 있는 기업 당 평균 특허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연구개발활동의 궁극적 성과물인 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개발활동과 기업의 수익성 사이에는 강건한 양(+)의 관계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우리 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를 통한 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이용하여 법인의 세부담과 비교한 결과는 세부담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혜택은 주어지지 않지만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들을 활용하여 세부담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항목들에 의해 과세표준이 다소 낮게 설정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평균 실효세율이 법인의 평균 실효세율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수입금액 5억~50억원 구간에 속하는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사업자들보다 평균적으로 10~16%p 정도 높은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개인사업자에게 주어진 소득공제의 세부담 인하효과보다는 낮은 세율과 공제감면제도에 의한 수입금액 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세부담 감소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의 기업규모별 실효세율 추이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살펴본 공제감면 이전의 표면세율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표면세율은 2014년 귀속 16.2% 수준이나 표면세율이 가장 높은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의 표면세율은 2014년 귀속 21.8%로 나타나며 그 격차는 5.6%p 수준이다. 그러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 모든 공제감면을 반영한 실효세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12.6%,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16%, 중견기업의 경우 17%, 그 외 일반법인의 경우 19.1%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제감면율이 상호출자제한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일반법인의 순서로 높게 발생한 것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제감면율이 크게 나타난 것은 해외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이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을 중심으로 공제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사전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법인에 주어지는 공제감면제도들 중에서 중소기업에만 허용되거나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들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들에 의해 최소 3%p의 평균 실효세율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중 1%p 수준의 중소기업 실효세율 감면효과가 중소기업에만 허용되는 조세지원제도들에서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특정 요건을 수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긍정적 외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도로 판단되므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업 유형의 선택은 기업가의 선택의 문제이나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수입금액 5억~50억원 구간에 속하는 개인사업자들이 기업의 법인화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관대한 세무조사와 같은 조세행정 차원의 차별적 정책방향도 해당 개인사업자의 법인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으로 여러 서비스업종들이 세법상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대상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업종간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경우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매우 좁게 설정하고 있으며 여타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제도별로 정책대상자 중소기업의 범위를 달리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는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기보다는 대체로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업종 제한을 폐지한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세계경제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롭게 생성되어 발전하는 신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업종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세법상 중소기업의 규모를 현재의 수준보다 현저히 작은 규모로 다시 설정한다.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 한정하더라도 여타 국가들이 조세지원을 위해 제도별로 설정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를 일괄적으로 설정하지 말고 지원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제도의 정책대상자를 보다 특정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기본 개편방향을 견지하며 추진해야 할 두 가지 구체적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수입금액 5억~50억원 구간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단일 세율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수입금액 5억~50억원 구간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에 약 10~16%p 수준의 실효세율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세율격차는 법인세율을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익성을 확보한 중소기업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주고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폐지를 비롯하여 유사 중복제도의 과감한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정비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우대 조세지원제도들이 중소기업들을 보다 혁신지향적이고 성장지향적인 기업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도입된 혁신지향적이고 성장지향적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을 제한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부터 과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러 지원제도들을 하나의 군(群)으로 묶어서 어떤 기업들이 어떤 지원제도들을 주로 활용하는지 분석하고 특정 제도에 의해 다른 제도의 활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목 차

I. 서론	17
II. 중소기업의 현황	20
1.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 및 고용비중	20
가. 중소기업의 범위	20
나. 중소기업 비중	24
2.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결집효과	38
가. 상시근로자 수 300명 기준 적용 업종	40
나. 상시근로자 수 200명 기준 적용 업종	44
다. 상시근로자 수 100명 기준 적용 업종	47
라. 상시근로자 수 50명 기준 적용 업종	50
마. 매출액 기준에 따른 결집효과	51
3. 중소기업의 혁신성향	54
가. 기업의 연구개발비투자	54
나. 기업 연구개발비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58
다. 기업 연구개발비투자의 성과	67
4. 시사점	74
III. 현행 중소기업 과세체계 및 우대 정도	76
1. 기업 유형별 실효세율 비교	76
가. 전체 사업자 실효세율 비교	76
나. 수입금액규모별 평균 실효세율 비교	79
2. 법인 규모별 평균 실효세율 비교	84

가. 법정 법인규모별 평균 실효세율	84
나.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87
다. 기업규모별 차등적 조세지원제도	91
3. 시사점	98
IV. 주요국과의 중소기업 과세체계 및 우대 정도 비교	100
1.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100
가. 우리나라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100
나. 주요국의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112
2. 기업규모별 경감세율 적용 여부 및 요건 국제비교	116
3. 기업규모별 차등 조세지원제도 국제비교	118
가. 설비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	118
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	128
다. 고용 관련 조세지원제도	144
4. 주요국의 표준법인 세부담 비교	151
가. 표준법인의 설정	151
나. 세부담 비교	154
V.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159
참고문헌	163

표목차

〈표 II-1〉 현행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기준	22
〈표 II-2〉 과거 중소기업 범위 기준	24
〈표 II-3〉 2014년 기업생명행정통계 기업체 수와 전국사업체조사의 사업체 수	26
〈표 II-4〉 조직 유형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2010년 경제총조사 기준	27
〈표 II-5〉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2010년 경제총조사 기준	29
〈표 II-6〉 업종별 중소기업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31
〈표 II-7〉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개편효과	33
〈표 II-8〉 업종별 소기업 기준 개편효과	34
〈표 II-9〉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 개편효과	36
〈표 II-10〉 제조업 소기업 기준 개편효과	37
〈표 II-11〉 상시근로자 수 300명 기준 적용 기업규모 분포함수의 불연속성	41
〈표 II-12〉 상시근로자 수 200명 기준 적용 기업규모 분포함수의 불연속성	45
〈표 II-13〉 상시근로자 수 100명 기준 적용 기업규모 분포함수의 불연속성	48
〈표 II-14〉 상시근로자 수 50명 기준 적용 기업규모 분포함수의 불연속성	50
〈표 II-15〉 매출액 기준 적용 기업규모 분포함수의 불연속성	52
〈표 II-16〉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규모 및 비중추이	54
〈표 II-17〉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56
〈표 II-18〉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추이	57
〈표 II-19〉 「조특법」 제2장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원 추이	60
〈표 II-20〉 기업규모별 정부 R&D 지원 현황 비교	65
〈표 II-21〉 기업규모별·업종별 평균 특허 수	69
〈표 II-22〉 기업규모별·업종별 수익성(흑자기업 비율) 변화	70
〈표 II-23〉 기업규모별·업종별 수익성(매출액 대비 세전순이익 비율) 변화	72
〈표 II-24〉 자체연구개발, 특허보유건수, 매출액 대비 세전수익률 사이의 관계	73

〈표 III-1〉 기업 유형별·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실효세율 추이	82
〈표 III-2〉 2014년 귀속 법인규모별 실효세율 및 공제감면율 현황	86
〈표 III-3〉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추이	89
〈표 III-4〉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공제감면율 추이	90
〈표 III-5〉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한정적인 법인세 관련 조세지원제도와 2013년 귀속 수혜실적	94
〈표 III-6〉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규모별 차등 적용되는 법인세 관련 조세지원제도와 2013년 귀속 수혜실적	96
〈표 IV-1〉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와 「조특법」의 중소기업 대상 업종 비교	104
〈표 IV-2〉 농업, 임업 및 어업	104
〈표 IV-3〉 운수업	105
〈표 IV-4〉 숙박 및 음식점업	106
〈표 IV-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107
〈표 IV-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7
〈표 IV-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8
〈표 IV-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8
〈표 IV-9〉 교육 서비스업	109
〈표 IV-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0
〈표 IV-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10
〈표 IV-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11
〈표 IV-13〉 각국의 세법상 중소기업 규정 유무	112
〈표 IV-14〉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	117
〈표 IV-15〉 미국의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121
〈표 IV-16〉 영국의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122
〈표 IV-17〉 캐나다의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123

〈표 IV-18〉 일본의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125
〈표 IV-19〉 프랑스의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126
〈표 IV-20〉 독일의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127
〈표 IV-21〉 미국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	131
〈표 IV-22〉 영국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	133
〈표 IV-23〉 캐나다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	134
〈표 IV-24〉 일본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	137
〈표 IV-25〉 호주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	138
〈표 IV-26〉 프랑스 R&D 관련 조세지원 대상의 인정비용	140
〈표 IV-27〉 프랑스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	140
〈표 IV-28〉 R&D 조세지원의 중소기업 요건 비교	142
〈표 IV-29〉 미국의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	146
〈표 IV-30〉 미국의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146
〈표 IV-31〉 캐나다의 고용지원 조세지원제도	147
〈표 IV-32〉 일본의 기업규모별 고용 관련 조세지원	149
〈표 IV-33〉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매출액 및 실효세율: 2014 사업연도	152
〈표 IV-34〉 수입금액 규모별 실효세율 추정(2014년 기준)	155
〈표 IV-35〉 수입금액 규모별 표면세율 추정(2014년 기준)	155
〈표 IV-36〉 수입금액 규모별 공제감면을 추정(2014년 기준)	156
〈표 IV-37〉 주요국 대비 실효세율 차이	156

그림목차

[그림 II-1] 제조업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41
[그림 II-2] 건설업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42
[그림 II-3] 운수업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42
[그림 II-4] 출판영상방송통신업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	43
[그림 II-5] 사업시설관리·사업서비스업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43
[그림 II-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44
[그림 II-7] 도매 및 소매업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45
[그림 II-8] 숙박 및 음식점업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46
[그림 II-9] 금융보험업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46
[그림 II-10] 예술·스포츠·여가 등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47
[그림 II-11] 하수·폐기물 등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48
[그림 II-12] 교육서비스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49
[그림 II-13] 수리 등 개인서비스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49
[그림 II-14] 부동산임대업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50
[그림 II-15] 사업시설관리·사업서비스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매출액 기준	53
[그림 II-16] 숙박·음식업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매출액 기준	53
[그림 II-17] 상위기업의 연구개발비 집중도	58
[그림 II-18]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과 세부과제 수 추이	61
[그림 II-19] 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 추이	62

[그림 II-20] 연구개발비투자의 대기업 집중도	65
[그림 II-21] 2015년 법인세 조세지출 및 R&D 조세지출의 GDP 대비 비중	67
[그림 III-1] 납세자 유형별 평균 실효세율 추이	78
[그림 III-2] 수입금액 규모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실효세율 차이	83
[그림 III-3] 2014년 수입규모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비교	88
[그림 IV-1] 중소기업 R&D 조세지원 우대 정도 비교	144
[그림 IV-2] 수입금액 규모별 실효세율의 비교: 2014년 결산	154
[그림 IV-3] 주요국 대비 수입금액규모별·요인별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	157

I. 서론

중소기업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약, 상품시장 진입 장벽, 불공정 거래, 작은 규모 자체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세계상의 우대혜택을 포함하여 정책금융 등 각종 정부정책의 혜택을 받아오고 있다.¹⁾

물론 얼마나 작은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이 있지만, Freedman(2009)을 비롯한 최근 연구결과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대상을 매우 작은 소기업,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기업, 혁신적인 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Gale and Brown(2013)은 미국경제의 고용창출과 혁신성향을 제고하는데 중소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믿음으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믿음에 대한 회의적인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혁신성향을 제고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은 ‘소기업’이 아니라 ‘신생기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Autio and Holz(2008)도 고성장기업의 전형적인 특성을 파악하면서 고성장기업은 다양성을 갖고 있어서 전통적인 산업정책 측면의 규모 기준에 따른 지원보다는 다양한 단계별 지원방식이 필요하며 기존 중소기업 정책을 고성장 기업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오랜 기간 우호적인 세제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며 각 단계별 지원정책이 망라되어 있으나 중소기업 부문의 혁신성향과 생산성 향상은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지

1) 서론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년도 사업계획서 P. 36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하고 있다.

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제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기업들의 행태,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2012)는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위에서 벗어나면서 포기해야 할 세제상의 지원제도 32가지를 제시하고 중견기업의 세부담을 축소해줘야 한다는 이익단체로서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기업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중소기업의 지위를 벗어남에 따라 포기해야 할 세제상의 혜택이라고 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왕성한 성장은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의 근원이며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의 원동력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현행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현행 중소기업 과세체계에 대한 비교분석 및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하는 제도상의 문제점, 동일한 경제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대기업 등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비교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서 먼저 제Ⅱ장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범위 및 경쟁력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은 과거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을 혼용하여 업종별로 달리 설정되었으나 2015년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부정책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지 않으려는 유인이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설정된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성장성향이 제한되고 해당 기준 직전의 기업규모에 결집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과거 추이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고용, 혁신활동, 매출, 세부담 등의 지표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위상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현행 중소기업 과세체계를 수평적 형평성 차원과 수직적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들은 근로소득자와 달리 거의 모든 조세지원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중소법인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기업 유형의 선택에 따라 세부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 과세체계는 기업유형 선택의 문제를 가져온다. 본 보고서는 법인의 형태로 법인세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의 과세체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의 세부담 차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현재 기업 유형별 세부담 수준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또한 법인 규모별 과세체계 및 세부담 수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법인들의 성장성과 혁신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제Ⅳ장은 기업규모별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과세체계 및 우대 정도를 비교한다. 먼저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주요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범위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넓은지 혹은 좁은지를 비교한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범위의 차이에서 기업규모별 경감세율 적용 여부 및 차등 조세지원제도의 현황을 파악한다. 실증적으로 세부담 수준의 국제비교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들의 제도에서 우리나라의 표준법인과 동일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세부담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우대제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비교분석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세제상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보다 성장친화적이고 혁신지향적인 제도로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편방안을 제Ⅴ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II. 중소기업의 현황

1.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 및 고용비중

가. 중소기업의 범위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와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2015년부터 적용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중기업 범위를 정했다. 중기업 기준에 대한 동 개편은 2014년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2015년부터 적용됐으나 소기업 기준은 그대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유지한 바 있다. 제조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의 경우 소기업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이 적용되었으며 이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기준이 적용됐다.²⁾ 2016년부터 소기업의 범위를 기존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하여 적용하고 있다. 1982년 도입된 기존 상시근로자 수 10~50명 기준에서 2016년부터는 매출액 10억~120억원 기준으로 업종에 따라 달리 설정했다.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상시근로자 수는 축소되어 중기업에서 소기업으로 편입된 기업이 있고 피터팬 증후군이 유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작업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하게 된 것이다. 당시 중소기업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의 경우 경영진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출액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을 중심으로 중기

2) 2012년 이전에는 광업, 제조업·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소기업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이 적용됐으며 이후에는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50인 미만 기준 적용 업종으로 추가됐다. 이외의 업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기준이 소기업 판정기준으로 적용됐다.

업뿐만 아니라 소기업 범위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 이전에 제조업의 중기업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였으며 이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보다 낮은 기준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규정, 매출액 기준을 설정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종의 경우 자본금 규정보다는 매출액 기준을 사용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설정했고 기준 매출액 규모는 50억원에서 300억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범위 규정은 과거 개발연대부터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반영한 것이다. 제조업 영위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던 시대의 제도적 기반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이후 제조업 이외에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는 일부 서비스업종들의 중소기업 범위가 확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대부분 기업들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종 영위 기업들에 비해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었다.

최근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규정하는 새로운 기준도 제조업의 경우에는 보다 폭 넓은 범위의 중소기업들이 포함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반면 서비스업 관련 업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규모의 매출액 수준만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제조업종 중기업 기준은 매출액 1,000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의류 및 신발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등은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의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이 적용된다. 음료, 복제업, 의약품,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등은 매출액 800억원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의 경우 중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억~600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건설업과 도소매업의 중기업 기준이 1,000억원 이하로 제조업과 유사하다. 한편 농림어업 및 광업 등 1차 산업 영위 중기업의 기준은 매출액 1,000억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서 일부 제조업과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에 대한 기준보

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소기업에 대한 기준도 중기업 기준과 유사하게 제조업에 대해서만 매출액 80억~120억원 이하의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담배제조업, 의복을 제외한 섬유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의 경우에는 80억원 이하의 매출액을 가진 기업들이 소기업으로 분류되고 대부분의 제조업종의 경우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기업들을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소기업 기준은 대체적으로 매출액 10억~3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운수업과 금융보험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80억원 이하의 기업들을 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소매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기업들을 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기업 기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농림어업 및 광업 등 1차 산업 영위 소기업의 기준은 80억원으로 높게 설정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표 II-1〉 현행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기준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소기업
A. 농업, 임업 및 어업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B. 광업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C.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11. 음료 제조업	8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12. 담배 제조업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5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표 II-1〉의 계속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소기업
C.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24. 1차 금속 제조업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28. 전기장비 제조업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32. 가구 제조업	1,5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33. 기타 제품 제조업	8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0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0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F. 건설업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G. 도매 및 소매업	1,00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H. 운수업	8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I. 숙박 및 음식점업	4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80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K. 금융 및 보험업	4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40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P. 교육 서비스업	4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B%B3%B8%EB%B2%95#J6369527>, 접속일: 2016. 4. 2)

〈표 II-2〉 과거 중소기업 범위 기준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A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주: 1. 2009~2011년까지 적용되던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M) 영위 중소기업 범위는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에서 2012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확대됐음.

2.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이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규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c.do?menuId=0&subMenu=1&query=%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B%B3%B8%EB%B2%95#J6369527>, 접속일: 2016. 4. 2)

나. 중소기업 비중

1) 사용자료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중요도는 흔히 “99-88”로 회자된다.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기업체 수 비중이 99%, 종사자 수 비중은 88%에 달하

며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중요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이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이용하여 기업체 수 및 고용비중의 추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 파악은 가용한 자료 부재로 인해 쉽지 않다.

중소기업 현황 파악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는 ‘기업생멸행정통계’,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기업활동조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자료의 미시자료 공개여부, 조사방식의 차이 등에 의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일반 연구자가 수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기업생멸 행정통계’와 ‘전국사업체조사’를 비교하면 기업 단위로 조사를 수행한 ‘기업생멸 행정통계’상의 기업 수가 사업장 단위로 조사를 수행한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 수보다 많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체 수와 사업체 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업체 수는 사업체 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런데 농림어업 및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을 제외한 2014년 전국 사업체 수는 3,797,540개이나 ‘기업생멸행정통계’상 활동중인 기업체 수는 5,558,767개로 나타난다. 광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협회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분류 업종의 경우 ‘기업생멸행정통계’상의 기업체 수가 ‘전국사업체조사’의 사업체 수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기업체 수가 사업체 수보다 100만개 정도 더 많고 도소매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의 기업체 수가 사업체 수보다 각각 34만개, 22만 5천개, 17만 8천개, 9만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2015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 5년 주기의 ‘경제총조사’는 2010년 최초 실시되어 2010년 자료만 가용하고 현재 2015년 자료를 작성 중에 있다. ‘경제총조사’의 경우 사업체 단위로 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전국사업체조사’를 비롯한 다른 자료들은 2014년까지만 가용하고 매출액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2015년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비중에 대한 검토를 직

접 수행하기 어렵다. 고용 및 연구개발활동을 비롯한 여러 정보를 발표하고 있는 자료는 ‘기업활동조사’인데, 이 경우에도 세금 관련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50인 이상 고용하는 매해 1만 2천개 내외의 회사법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방식에 의해 구축된 자료이어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을 포함하여 조사된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개별 미시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표 II-3〉 2014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기업체 수와 전국사업체조사의 사업체 수
(단위: 개)

업종 구분	기업생멸행정(A)	전국사업체(B)	(B-A)
전체	5,558,767	3,797,540	-1,761,227
광업	1,684	2,013	329
제조업	487,541	397,171	-90,37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983	1,840	-7,143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484	7,761	-723
건설업	353,245	128,215	-225,030
도소매업	1,337,705	997,120	-340,585
운수업	556,405	378,884	-177,521
숙박 및 음식점업	773,634	703,364	-70,27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67,173	40,664	-26,509
금융 및 보험업	20,502	41,909	21,407
부동산 및 임대업	1,152,716	141,186	-1,011,5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3,617	96,376	-37,24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0,157	50,785	-29,372
교육 서비스업	136,677	175,389	38,7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3,149	131,505	58,35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7,690	103,635	-4,05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59,405	399,723	140,318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statisticsList>, 접속일: 2016. 7. 2)

전문가 간담회 결과 및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등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결과는 중소기업 업종별 범위가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되면서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기본 방향을 견지했으나 일부 업종의 경우 업계의 건의 등을 반

영하여 확대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기준 변경으로 중소기업 포괄 범위의 변화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가용한 과거 통계자료에 2015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과거의 중소기업 비중들과 비교함으로써 과거 기준과 현행 기준의 차이를 검토할 수 있다. 2010년 ‘경제총조사’ 자료에는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의 개편에 따른 중소기업 포괄 범위의 변화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010년 ‘경제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는 326만 4,993개에 달하고 이 사업체에 종사자 수는 1,561만 8,588명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유형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대분류 중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속하는 사업체는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제외된 결과이다. 조직 유형별로는 개인사업체 비중이 84.6%에 달하며 가장 높고 회사법인은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비중으로 살펴보면,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 사업체의 비중이 각각 43.5%와 46.4%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서 회사법인 1개당 종사자 수가 개인사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의 8.7배에 달한다. 이외에 회사 이외 법인과 비법인 단체의 경우 사업체 비중은 각각 1.6%와 3.5% 수준이고 종사자 비중은 각각 7.4%와 2.7%로 나타났다.

〈표 II-4〉 조직 유형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2010년 경제총조사 기준

(단위: 개, 명, %)

조직유형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개인	2,762,077	6,794,953	84.6	43.5
회사법인	336,890	7,246,555	10.3	46.4
회사 이외 법인	50,903	1,155,772	1.6	7.4
비법인 단체	115,123	421,308	3.5	2.7
합계	3,264,993	15,618,588	100.0	100.0

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대분류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을 제외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0(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ZTITLE&listid=K2_K1, 접속일: 2016. 7. 2)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산업대분류 기준으로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사업체 비중은 9.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20.42%로 사업체 비중의 2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제조업의 고용이 우리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비스업종 중에서 도소매와 숙박·음식업종의 사업체 비중과 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도소매업종의 사업체 비중은 26.81%로 산업대분류 기준 업종별 사업체 비중의 최고치이다. 그러나 도소매업종의 종사자 비중은 사업체 비중보다 낮은 수준인 16.69%로 나타나며 도소매업종 평균 종사자 수는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낮다. 숙박·음식업의 사업체 비중이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며 19.4%에 이르지만 역시 종사자 비중은 11.2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업종의 사업체 비중이 전체 사업체의 1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사자 비중은 5.37%로 도소매업 등 여타 주요 서비스업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종사자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10%를 상회하는 사업체 비중을 보이는 다른 업종으로는 사업체 비중 10.57%의 운수업이 있으며 운수업의 종사자 비중은 6.2%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5〉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2010년 경제총조사 기준

(단위: 개, 명, %)

산업대분류	사업체	종사자 수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A. 농림어업	1,065	13,101	0.03	0.08
B. 광업	1,252	7,663	0.04	0.05
C. 제조업	304,571	3,189,908	9.33	20.42
D. 전기가스증기수도	134	6,383	0.00	0.04
E. 하수폐기물 등	3,021	36,207	0.09	0.23
F. 건설	94,916	1,148,323	2.91	7.35
G. 도소매	875,245	2,607,017	26.81	16.69
H. 운수	345,108	967,854	10.57	6.20
I. 숙박 및 음식	633,295	1,758,617	19.40	11.26
J.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19,084	361,255	0.58	2.31
K. 금융보험	35,804	664,212	1.10	4.25
L. 부동산임대	124,518	435,101	3.81	2.79
M. 전문과학기술서비스	66,546	694,152	2.04	4.44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	33,340	737,385	1.02	4.72
P. 교육서비스	150,495	841,685	4.61	5.39
Q.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01,914	1,030,830	3.12	6.60
R.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	99,351	280,535	3.04	1.80
S.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	375,334	838,360	11.50	5.37
합계	3,264,993	15,618,588	100.00	100.00

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대분류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을 제외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0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외의 업종들은 대부분 1~5% 수준의 사업체 비중과 1~7.35%의 종사자 비중을 보이는 반면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하수폐기물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은 1%를 크게 하회하는 사업체 비중을 보이고 있다. 사업체 비중이 매우 낮은 이 업종들의 종사자 비중도 매우 낮은 수준이나 출판영상방송통신업종의 경우 0.58%에 불과한 사업체 비중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비중은 2.31%에 달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비중이 1~5% 수준인 여타 서비스업종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업체 비중보다 높은 종사자 비중을 보이며 사업체 평균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효과

최근 기준 사업체 조사 또는 기업체 조사결과가 가용하지 않고 과거 중소기업 범위 기준 변수들 중 매출액, 자본금 규모 등이 가용한 자료를 사업체 또는 기업체 수준의 미시자료 형태로 구할 수 없다는 점은 앞에서 소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략적으로나마 2015년과 2016년에 시행된 중소기업 범위 기준 변수들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한 정책 변경의 효과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소기업 범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경제총조사 미시자료에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이전과 이후의 업종별 중소기업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전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구하고 개편 이전과 이후 각 비중의 증감을 구하면 제도 개편에 따른 중소기업 포괄 범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 업종별 중소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중을 간략히 살펴보면, 개편 이전 중소기업 사업체 비중은 99.89%이었고 고용비중은 87%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었다. 개편 이후 중소기업 사업체 비중은 99.87%로 약 0.02%p 줄었으나 고용 비중은 89.39% 수준으로 2.49%p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³⁾ 이러한 변화는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함에 따라 매출액 규모는 크지만 상시근로자 수나 자본금 규모 기준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던 사업체들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고 상시근로자 수가 크지만 매출액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새롭게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매출액 규모로 개편함에 따라 발생한 중소기업 사업체 비중 증감은 0.02%p 감소에 불과하지만, 이는 사업체 비중이 증가한

3) 여기서 활용하고 있는 통계자료는 사업장별 조사자료로서 기업체별 조사자료와 차이가 있다. 익명의 외부심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기업체별 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기업체 전수 조사 자료는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사업장별 조사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있음을 다시 밝힌다.

업종과 감소한 업종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에 제시되어 있는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개편효과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사업체 비중이 감소한 업종은 제조업(C),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도소매업(G), 출판영상방송통신업(J), 금융보험업(K),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M),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R)이고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 사업체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사자 비중은 금융보험업(K)에서 7.09%p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사업체 비중이 축소됐어도 종사자 비중은 모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 업종별 중소기업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단위: %)

산업대분류	개편 전 비중		개편 후 비중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A. 농림어업	99.81	97.61	99.81	97.61
B. 광업	99.84	80.69	99.92	87.69
C. 제조업	99.70	78.71	99.65	78.76
D. 전기가스증기수도	88.06	19.21	90.30	48.93
E. 하수폐기물 등	99.67	94.85	99.57	97.18
F. 건설	99.59	80.78	99.80	91.73
G. 도소매	99.95	95.73	99.93	96.20
H. 운수	99.95	89.42	99.96	94.43
I. 숙박 및 음식	99.99	98.58	99.99	98.82
J.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99.32	76.03	99.22	78.94
K. 금융보험	98.95	80.45	96.36	73.36
L. 부동산임대	99.82	92.43	99.84	96.92
M. 전문과학기술서비스	99.69	78.40	99.62	80.97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	99.72	84.29	99.93	96.64
P. 교육서비스	99.74	78.60	99.90	85.24
Q. 보건사회복지서비스	99.85	83.69	99.91	86.86
R.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	99.95	92.30	99.93	93.03
S.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	99.98	98.34	99.99	99.66
합계	99.89	86.90	99.87	89.39

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대분류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을 제외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0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중소기업 사업체 비중과 종사자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업종은 전기가스증기수도업(D)이며 증가 폭은 각각 2.24%와 29.72%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기가스증기수도업(D)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 폭은 3개 사업체 1,897명에 불과하며 높은 비중 증가 폭은 이 업종의 특성상 전체 사업체 수와 고용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업체 수 증가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241개 증가했다. 그다음으로 건설업의 사업체 수 증가 규모가 195개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에 따른 전산업 종사자 수 증가 폭은 38만 9천명 수준이며 건설 12만 6천명, 운수 4만 8천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9만 1천명, 교육서비스 5만 6천명 등이 전체 고용비중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보험업의 경우 927개 사업체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고 4만 7천명의 종사자 수가 중소기업 고용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업종에 비해 중소기업 사업체 수 비중 및 종사자 수 비중 감소폭이 제일 크게 나타났다.

〈표 II-7〉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개편효과

(단위: 개, 명, %p)

산업대분류	사업체 증감	종사자 수 증감	사업체 비중 증감	종사자 비중 증감
A. 농림어업	0	0	0.00	0.00
B. 광업	1	537	0.08	7.01
C. 제조업	-152	1,737	-0.05	0.05
D. 전기가스증기수도	3	1,897	2.24	29.72
E. 하수폐기물 등	-3	844	-0.10	2.33
F. 건설	195	125,744	0.21	10.95
G. 도소매	-132	12,262	-0.02	0.47
H. 운수	57	48,472	0.02	5.01
I. 숙박 및 음식	4	4,273	0.00	0.24
J.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19	10,511	-0.10	2.91
K. 금융보험	-927	-47,071	-2.59	-7.09
L. 부동산임대	32	19,536	0.03	4.49
M. 전문과학기술서비스	-47	17,875	-0.07	2.58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	71	91,082	0.21	12.35
P. 교육서비스	241	55,875	0.16	6.64
Q. 보건사회복지서비스	61	32,724	0.06	3.17
R.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	-17	2,034	-0.02	0.73
S.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	44	11,011	0.01	1.31
합계	-588	389,343	-0.02	2.49

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대분류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을 제외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0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에 따른 전체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또는 50인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던 소기업 범위 기준을 매출액 규모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 18개 대분류 산업 중 소기업 사업체 수가 감소한 업종은 6개 업종(광업, 제조업, 건설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 불과하고 나머지 업종의 경우 소기업에 포함되는

사업체 수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 산업 소기업 사업체 수는 28,562개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기업 종사자 수는 1,274,931명 증가했다. 이러한 소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가는 각각 0.87%p 및 8.16%p의 비중 증가로 이어졌다.

〈표 II-8〉 업종별 소기업 기준 개편효과

(단위: 개, 명, %p)

산업대분류	사업체 증감	종사자 수 증감	사업체 비중 증감	종사자 비중 증감
A. 농림어업	303	6,369	28.45	48.61
B. 광업	-23	-405	-1.84	-5.29
C. 제조업	-1,204	127,066	-0.40	3.98
D. 전기가스증기수도	1	178	0.75	2.79
E. 하수폐기물 등	465	10,511	15.39	29.03
F. 건설	-229	110,488	-0.24	9.62
G. 도소매	5,538	265,910	0.63	10.20
H. 운수	1,021	183,427	0.30	18.95
I. 숙박 및 음식	6,884	108,382	1.09	6.16
J.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766	-4,911	-4.01	-1.36
K. 금융보험	3,909	112,605	10.92	16.95
L. 부동산임대	6,263	125,337	5.03	28.81
M.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853	-18,025	-2.78	-2.60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	198	98,941	0.59	13.42
P. 교육서비스	6,898	109,845	4.58	13.05
Q. 보건사회복지서비스	-5,140	-96,013	-5.04	-9.31
R.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	1,350	31,256	1.36	11.14
S.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	4,947	103,970	1.32	12.40
합계	28,562	1,274,931	0.87	8.16

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대분류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을 제외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0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과거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제조업에 속하는 모든 업종에 동일한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 규모 기준을 적용했었다. 그러나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하면서 제조업 내의 중분류 업종별로 서로 다른 매출액 기준으로 중기업과 소기업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편이 제조업 중분류 업종별 포괄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증감 및 비중의 증감으로 분석하여 <표 II-9>와 <표 II-10>에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함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152개 축소되고 소기업 사업체 수는 1,204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전체 사업체 비중과 소기업 사업체 비중은 각각 0.05%p와 0.4%p 축소되어 전 산업 중소기업 사업체 비중 축소 폭 0.02%p보다 컸다. 이는 매출액 규모는 크지만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 규모 기준을 충족하며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던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과거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무게중심이 다소나마 고용 수준이 높은 소기업들이 포함된 여타 산업을 보다 포괄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11-9〉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 개편효과

(단위: 개, 명, %p)

제조업 세부업종	사업체 증감	종사자 증감	사업체 비중 증감	종사자 비중 증감
10. 식료품 제조업	-42	-2,692	-0.08	-1.04
11. 음료 제조업	-5	-733	-2.24	-14.07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	896	0.01	0.68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	3,858	0.05	2.90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	438	0.03	1.58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2	-358	-0.04	-1.32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	776	0.04	1.36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	0	0.00	0.00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	-56	-0.90	-0.64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5	-3,906	-0.57	-3.50
21. 의약품제조업 및 의약품 제조업	-20	-2,573	-5.32	-13.24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	-1,656	-0.07	-0.77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	112	-0.08	0.12
24. 1차 금속 제조업	2	781	0.03	0.59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1	-1,248	-0.02	-0.33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	8,116	0.01	2.09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	385	-0.06	0.51
28. 전기장비 제조업	9	3,229	0.06	1.74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2,522	-0.07	-0.71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1,601	-0.28	-0.6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198	-0.05	0.13
32. 가구 제조업	1	301	0.01	0.54
33. 기타 제품 제조업	-1	-8	-0.01	-0.01
제조업 합계	-152	1,737	-0.05	0.05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0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10〉 제조업 소기업 기준 개편효과

(단위: 개, 명, %p)

제조업 세부업종	사업체 증감	종사자 증감	사업체 비중 증감	종사자 비중 증감
10. 식료품 제조업	-84	11,545	-0.16	4.45
11. 음료 제조업	-8	-305	-3.59	-5.86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19	5,366	-0.65	4.06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7	10,073	0.22	7.56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	626	0.03	2.27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62	-1,323	-1.39	-4.89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16	-2,230	-2.57	-3.91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76	7,161	0.50	11.15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486	-18.02	-5.58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91	-2,996	-3.12	-2.69
21. 의약품제조업 및 의약품 제조업	0	942	0.00	4.85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44	-9,357	-2.83	-4.37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6	104	-1.61	0.11
24. 1차 금속 제조업	-384	-7,260	-6.61	-5.49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9	20,743	0.05	5.47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2	32,202	2.07	8.30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90	-780	-1.36	-1.04
28. 전기장비 제조업	-46	5,685	-0.30	3.07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8	3,972	-0.53	1.12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	12,027	0.06	4.51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41	40,324	15.94	27.46
32. 가구 제조업	-8	676	-0.09	1.21
33. 기타 제품 제조업	-18	357	-0.12	0.66
제조업 합계	-1,204	127,066	-0.40	3.98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0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결집효과

중소기업청(2013)에 따르면 총 102개 법령(법률 56개, 시행령 46개)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준용하여 분야별 중소기업 육성·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세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그대로 원용하면서 서비스업종들을 정책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금융 및 조세·재정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의 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해당 범위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특정 구간에 기업들이 몰려 있는 결집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설정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기업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중소기업 범위 기준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수, 자본금, 자산총액, 매출액 등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 ‘기업활동조사’의 미시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2010년 단년도 자료이기는 하지만 ‘경제총조사’는 사업체 기준 자료이며 개인사업체를 포괄하고 있어서 개인사업체의 소기업 기준에 대한 결집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범위를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자산총액 변수를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체 단위의 조사결과이어서 기업단위의 분석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기업활동조사’는 자본금 3억원 이상 5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로서 연간 1만 2천여

4) 준용의 유형은 개념 정의 또는 선언적인 준용, 독자적 정책대상 또는 예외, 정책대상의 일부 또는 조건의 형태로 구분된다. 개념 정의 또는 선언적 준용의 사례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신용보증기금법」, 「상호저축은행법」, 「정보통신진흥법」 등 22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독자적 정책대상 또는 예외의 사례는 「가맹사업공정화법」, 「국세기본법」, 「조달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방위사업법」 등 13개 법률이 있으며 정책대상의 일부 또는 조건의 사례는 「공정거래법」, 「무역보험법」, 「산업융합촉진법」, 「여성기업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1개 법률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중소기업청(2013),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확정」, 2013년 12월 11일 보도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개 안팎의 회사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윤곽은 경제총조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인의 조직형태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분석에는 기업활동조사자료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기업규모에 미치는 결집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2010~2014년의 5만여 개의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의 분포 상에 특정한 양상이 관측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기업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러한 결집효과는 기업규모별 분포함수에 불연속적 구간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분석될 수 있다. 여러 학문분야에서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여 분포함수에 불연속적인 구간이 있는지를 그래프로 확인하고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결과들로는 McCrary(2008), Candela(2013) 등이 있다. McCrary(2008)은 연속적인 변수들의 분포함수가 인위적 조작에 의해 해당 변수 분포함수의 특정 구간에 불연속성이 발생하게 되고 이 불연속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Candela(2013)은 스페인 기업들의 분포를 분석하고 있다. 스페인의 기업 세무조사 강화대상 기준인 매출액 600만유로를 기준으로 기업의 매출액 600만유로가 상한인 구간에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집중 분포되는 결집효과(bunching effect)가 발생하는 것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600만유로 이전 매출액 구간들에 속하는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역U자 형태를 보이며 600만유로에 근접할수록 이후 구간들의 매출액 증가율보다 크게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결집효과의 양상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도 관측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McCrary(2008)에서 제시된 검증방법을 원용하고자 한다.⁵⁾

5) 먼저 실제 분포를 계산하고 결집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연속점의 이전 구간과 이후 구간에 대한 가상의 분포함수를 추정한다. 불연속점에서 추정된 두 분포함수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McCrary(2008)에 제시된 t-통계량을 이용하여 검증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 300명 기준 적용 업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이전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의 기준이 적용되던 대분류 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이다. 이 업종들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 이외에 자본금 또는 매출액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고 상시근로자 수 기준과 자본금 또는 매출액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이외에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기준이 적용됐고 광업, 건설업, 그리고 운수업의 경우 자본금 30억원 이하의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었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이외의 서비스 업종의 경우 매출액 300억원 이하의 기준이 추가적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업규모를 판단하는 기준 변수들의 상한선 전후로 기업들의 분포에 결집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이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고용자 수를 조정했다면 기업규모 분포함수의 불연속성이 해당 기준점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들 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 300명 전후로 기업규모 분포함수를 추정하고 두 개의 분포함수가 만나는 기준점에서 결집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평가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그림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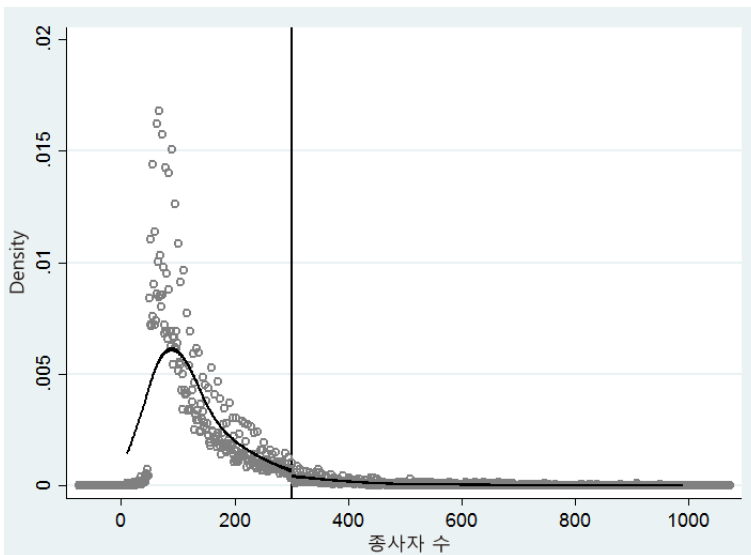
추정결과와 그래프를 통해서 운수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에서 기업규모 분포함수의 불연속성이 상시근로자 수 300인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상시근로자 수 300인 직전의 분포함수의 값이 이후의 값보다 커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300인 직전 구간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연속성 추정계수는 결집현상이 발생하는 불연속점 직후의 분포함수의 높이에서 직전 구간의 분포함수의 높이를 차감하여 구한다. 따라서 불연속성 추정계수의 값이 음(-)인 경우 해당 변수의 결집현상이 불연속점 직전 구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집현상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McCrary(2008)에서 제시된 t-검정 통계량이 운수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표 II-11〉 상시근로자 수 300명 기준 적용 기업규모 분포함수의 불연속성

〈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DC point	estimates	std. error	t-stat	nob
제조업	300명	-0.406	0.089	-4.591	26,182
〈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DC point	estimates	std. error	t-stat	nob
광업	300명	-	-	-	26
건설업	300명	-0.860	0.369	-2.329	2,544
운수업	300명	-0.049	0.188	-0.260	3,078
〈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DC point	estimates	std. error	t-stat	nob
출판영상방송통신	300명	-1.020	0.311	-3.281	3,356
사업시설관리·사업서비스	300명	-0.119	0.131	-0.908	2,334
전문과학기술서비스	300명	-1.078	0.299	-3.608	1,909
보건사회복지서비스	300명	-	-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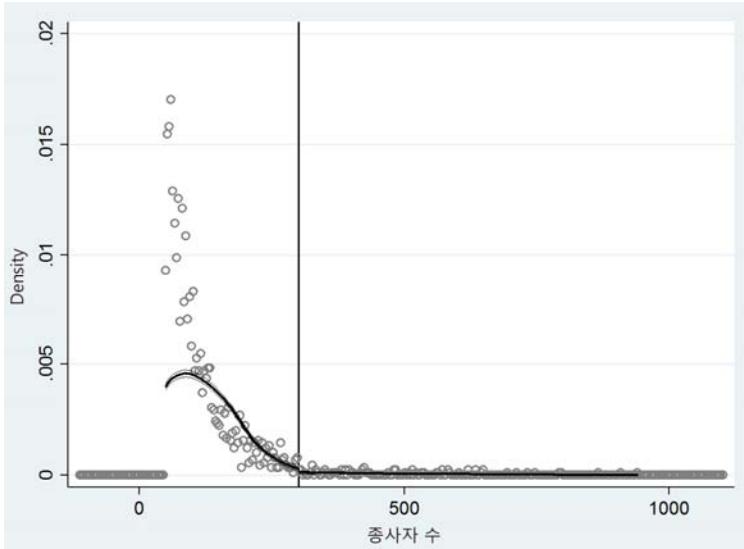
자료: 2010~2014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1〕 제조업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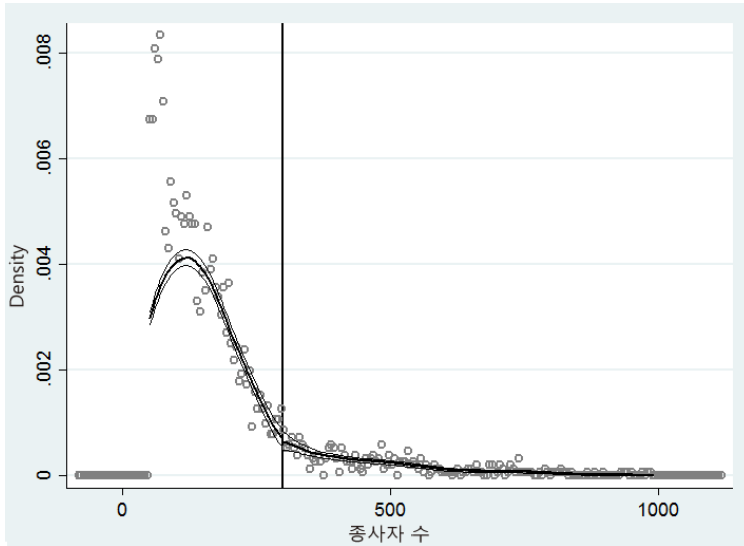
자료: 2010~2014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2] 건설업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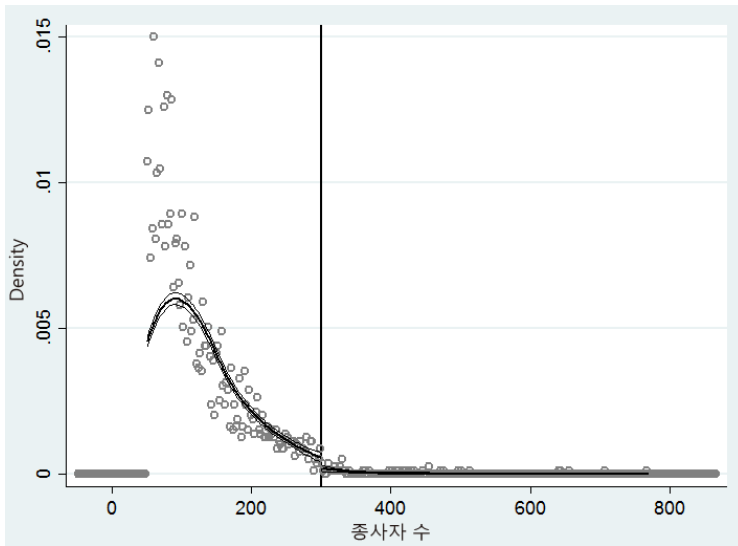
자료: 2010~2014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3] 운수업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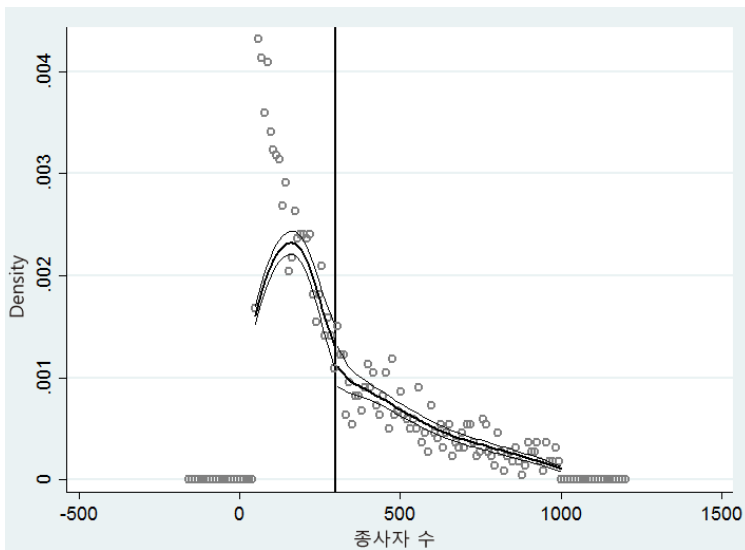
자료: 2010~2014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4] 출판영상방송통신업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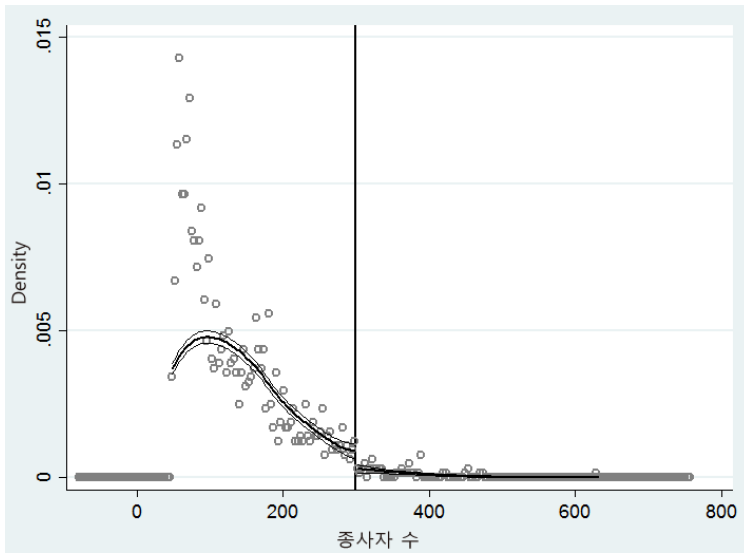
자료: 2010~2014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5] 사업시설관리·사업서비스업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자료: 2010~2014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자료: 2010~2014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상시근로자 수 200명 기준 적용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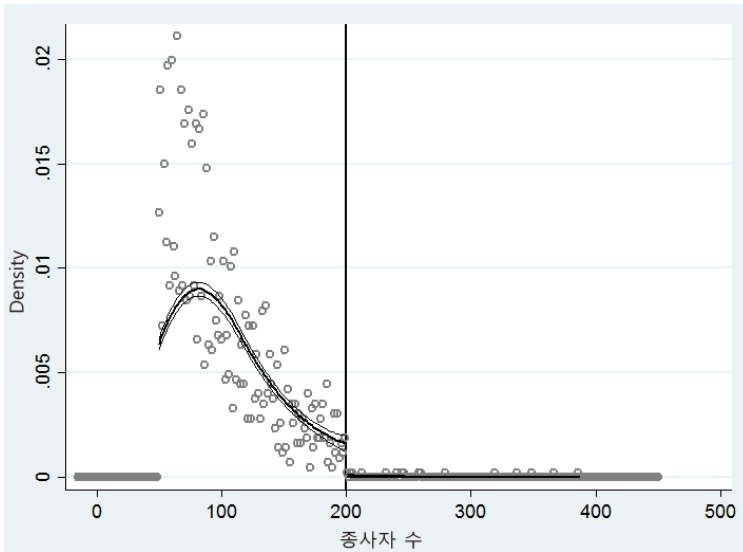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은 농림어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이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 이외에 이들 업종은 모두 매출액 200억원 이하 기준이 추가적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기업활동조사에 포함된 농림어업과 전기가스증기수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수가 적어서 해당 업종의 기업규모 분포함수의 불연속성이 추정되지 않았다. 도소매업과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기업규모 분포함수의 불연속성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범위 기준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표 II-12〉 상시근로자 수 200명 기준 적용 기업규모 분포함수의 불연속성

	DC point	estimates	std. error	t-stat	nob
농림어업	200명	-	-	-	68
전기가스증기수도업	200명	-	-	-	74
도소매업	200명	-2.965	0.570	-5.206	2,886
숙박음식업	200명	0.170	0.375	0.453	560
금융보험업	200명	-0.103	1.708	-0.060	344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	200명	-2.506	1.228	-2.041	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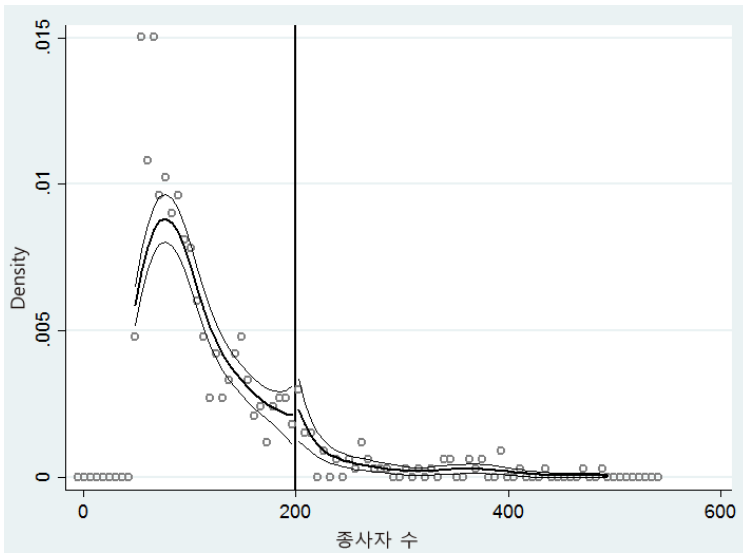
자료: 2010~2014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7] 도매 및 소매업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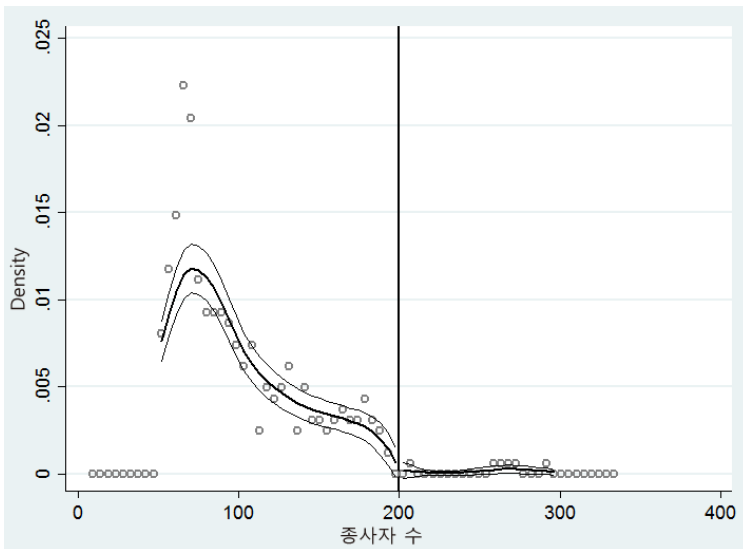
자료: 2010~2014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8] 숙박 및 음식점업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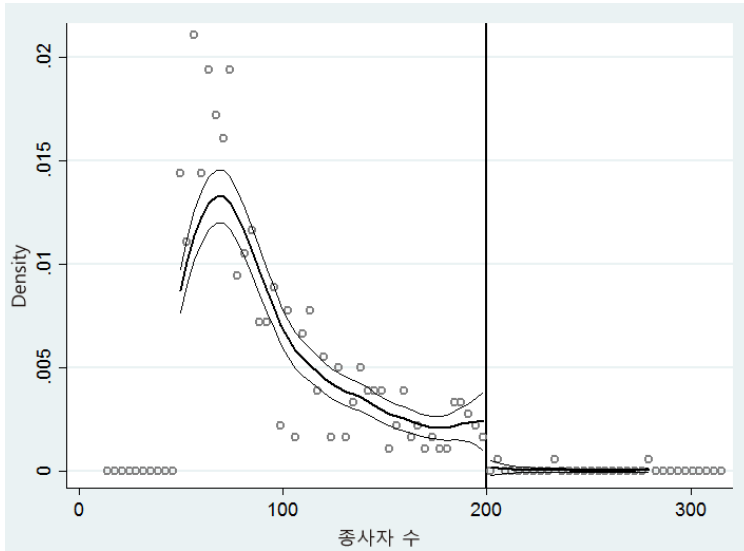
자료: 2010~2014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9] 금융보험업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자료: 2010~2014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10] 예술·스포츠·여가 등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자료: 2010~2014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 상시근로자 수 100명 기준 적용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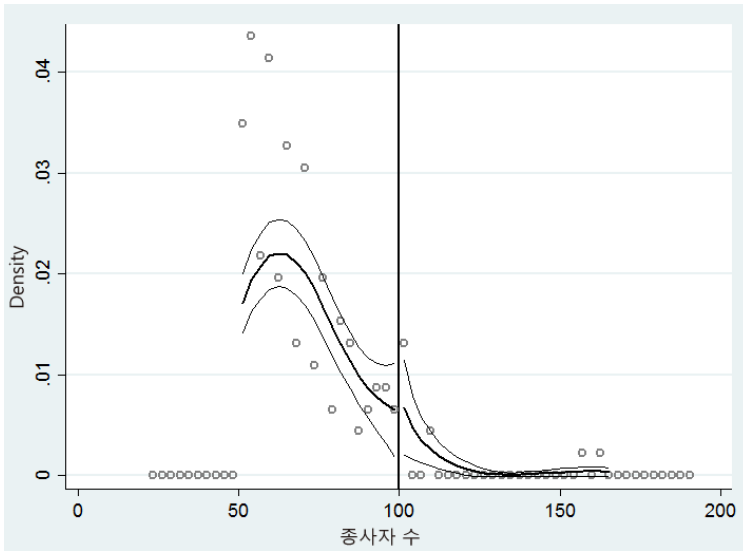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교육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기준이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으로 적용됐다. 위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기업 규모 분포함수의 불연속성을 추정한 결과,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의 경우 기업규모 분포함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불연속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교육서비스업과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에는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불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측정됐다. 이 업종들의 경우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결집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표 II-13〉 상시근로자 수 100명 기준 적용 기업규모 분포함수의 불연속성

	DC point	estimates	std. error	t-stat	nob
하수폐기물처리 등	100명	0.217	0.572	0.378	165
교육서비스업	100명	-0.954	0.548	-1.740	113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100명	-1.406	0.661	-2.126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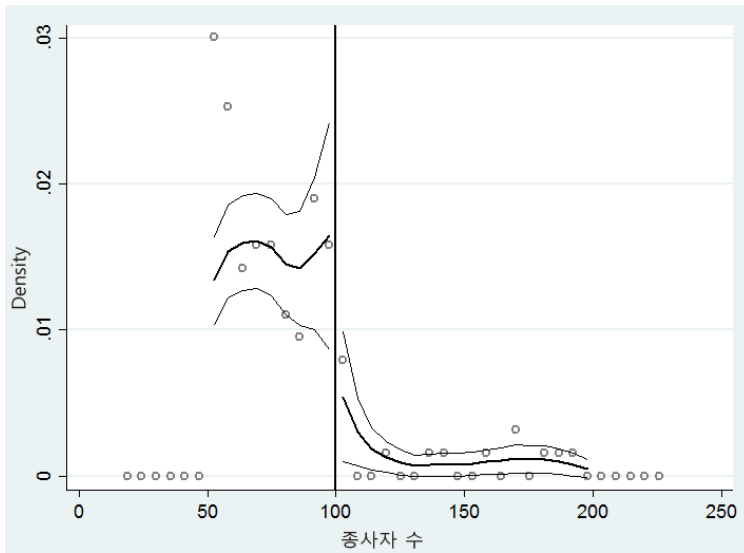
자료: 2010~2014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11] 하수·폐기물 등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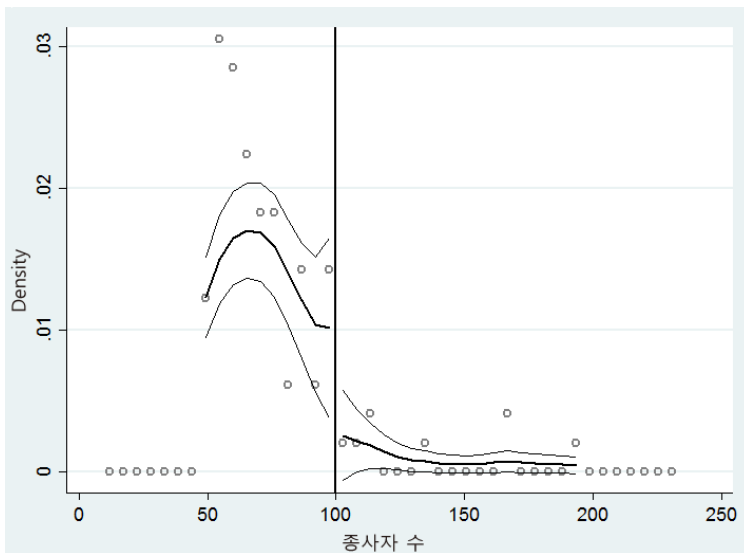
자료: 2010~2014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12] 교육서비스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자료: 2010~2014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13] 수리 등 개인서비스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자료: 2010~2014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라. 상시근로자 수 50명 기준 적용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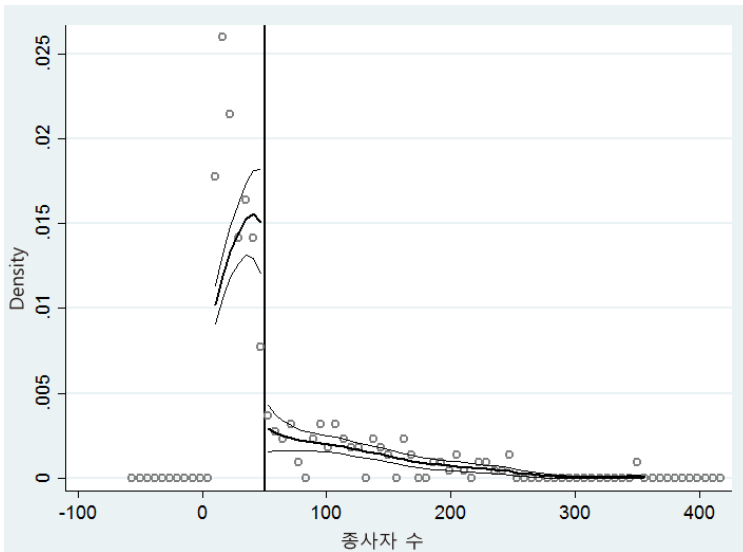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업의 상시근로자 수 조건은 50명 미만이었고 대체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던 매출액 조건은 50억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범위 기준에서 부동산 임대업 영위 기업들의 분포함수의 불연속성 추정계수는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음(-)의 값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여타 업종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해당 업종 영위 기업들의 규모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표 II-14〉 상시근로자 수 50명 기준 적용 기업규모 분포함수의 불연속성

	DC point	estimates	std. error	t-stat	nob
부동산임대업	50명	-1.578	0.280	-5.629	362

자료: 2010~2014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14] 부동산임대업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종사자 수 기준



자료: 2010~2014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마. 매출액 기준에 따른 결집효과

앞에서 살펴본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른 결집효과 분석결과 중에서 매출액과 함께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고 있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기준 기업규모 분포함수의 불연속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들에 대한 매출액 기준에 따른 결집효과를 다시 분석하는 것은 현행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범위 설정에 따른 결집효과를 예상하는 데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상기 네 개의 업종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과 숙박음식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기준 결집효과 분석결과와 달리,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 기업규모 분포함수의 불연속성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으로 분석됐다. 이는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설정하더라도 해당 기준점에서 결집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소개한 Candela (2013)의 경우에도 스페인 기업들이 세무조사 강화 대상 매출액 기준 규모에서 기업들의 분포가 결집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이 자의적으로 매출액 규모를 조절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선택적 판단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범위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한 것이 과거 기준들보다는 나은 선택일 수는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정의되고 있는 중소기업 규모의 범위 기준은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정책대상자 설정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고, 어떠한 변수를 사용하더라도 그러한 범위 기준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자기선택(self-selection)의 문제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특정 구간 이상으로 기업이 성장해가는 것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을 더욱 더 성장시키고 우리 경제의 주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제도 본연의 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규모 기준에 준거한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결집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먼저 과거 우리가 추진해온 중소기업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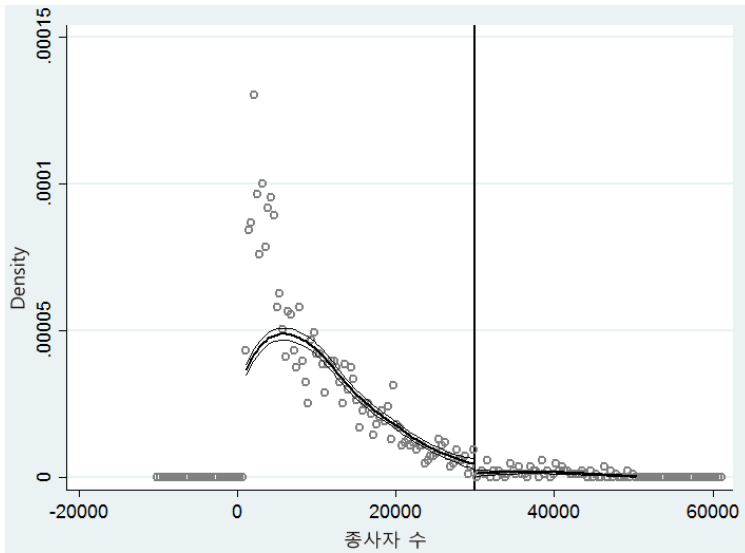
원정책이 뜻하지 않게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방향 개선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견기업이라는 또 다른 규모 기준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정책대상 설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은 정부의 취지와 달리 우리 기업들의 성장경로에 또 다른 부정적 요인이 제도화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견기업이라는 기업규모 기준이 도입된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지만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결집효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할 때, 그러한 개연성은 충분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 제Ⅳ장에서 살펴보았으나, 주요 국가들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 기준을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많지 않고 특정한 정책의 대상자를 설정함에 있어서 제도의 효과가 가장 크고 명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대상을 제도별로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표 II-15〉 매출액 기준 적용 기업규모 분포함수의 불연속성

	DC point	estimates	std. error	t-stat	nob
사업시설관리·사업서비스	300억원	-1.150	0.406	-2.834	2,307
숙박음식업	200억원	-0.927	0.445	-2.085	752
금융보험업	200억원	0.297	0.474	0.628	256
하수폐기물처리 등	100억원	-0.190	0.244	-0.779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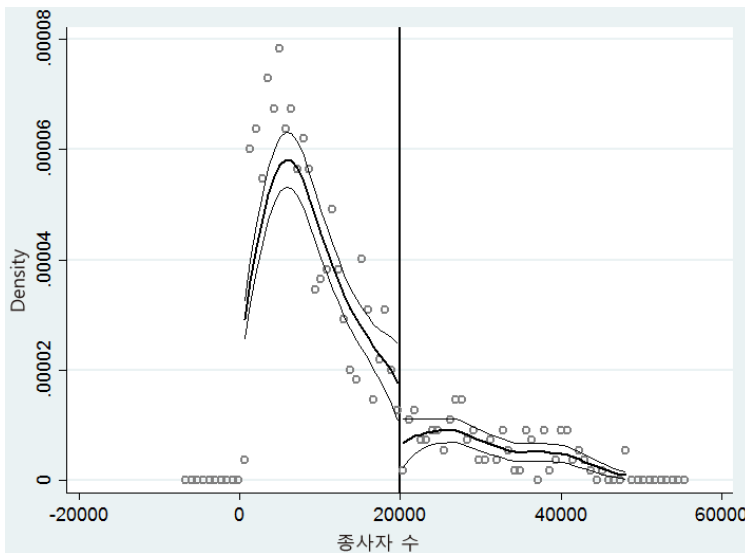
자료: 2010~2014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15] 사업시설관리·사업서비스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매출액 기준



자료: 2010~2014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16] 숙박·음식업 기업규모 분포: 2010~2014년 매출액 기준



자료: 2010~2014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중소기업의 혁신성향

가. 기업의 연구개발비투자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투자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연구개발비투자는 약 24조 1,554억원으로 GDP 대비 약 2.63%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4년 연구개발비투자는 약 63조 7,341억원으로 2005년에 비해 약 1.6배 이상 증가였으며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4.29%로 약 1.66%p 증가였다.

연구개발비투자 증가율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0%가 넘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8년과 2009년 증가 폭이 다소 감소하였고, 최근 2012년 이후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16〉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총연구개발비		GDP 대비 비중
	규모	증가율	
2005년	241,554	8.88	2.63
2006년	273,457	13.21	2.83
2007년	313,014	14.47	3.00
2008년	344,981	10.21	3.12
2009년	379,285	9.94	3.29
2010년	438,548	15.62	3.47
2011년	498,904	13.76	3.74
2012년	554,501	11.14	4.03
2013년	593,009	6.94	4.15
2014년	637,341	7.48	4.29

주: GDP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해당연도 자료를 활용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4년 국내 총 R&D 투자는 63조 7,341억원, 전년 대비 7.48% 증가」, 2015. 10. 29.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투자 비중은 2014년 기준 4.29%로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⁶⁾ 21개 OECD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연구개발비투자 비중이 2.56% 수준인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투자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연구개발비투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로 GDP 대비 4.21%의 연구개발비투자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3.47%), 핀란드(3.31%), 스웨덴(3.30%), 덴마크(3.06%) 등 국가는 GDP 대비 3% 수준으로 연구개발비투자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개발비투자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러시아로 2013년 기준 GDP 대비 약 1.12% 연구개발비투자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 외에도 스페인(1.24%), 이탈리아(1.26%), 캐나다(1.62%), 영국(1.63%), 네덜란드(1.98%)의 경우 연구개발비투자 비중이 GDP 대비 1%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6) 이처럼 높은 혁신 강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생산성이 낮은 이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 요건만 갖춘 연구인력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실제로는 연구개발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연구이고 본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향후 연구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

〈표 II-17〉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단위: 백만달러, %)

국가	기준연도	연구개발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순위
미국	2013	456,977	2.73	11
중국	2013	191,205	2.08	15
일본	2013	170,910	3.47	3
독일	2013	106,440	2.85	10
프랑스	2013	62,615	2.23	13
한국	2014	60,528	4.29	1
영국	2013	43,528	1.63	17
호주	2011	32,662	2.13	14
캐나다	2013	29,858	1.62	18
이탈리아	2013	26,825	1.26	19
러시아	2013	23,551	1.12	21
스위스	2012	19,740	2.96	9
스웨덴	2013	19,133	3.30	5
스페인	2013	17,276	1.24	20
네덜란드	2013	16,920	1.98	16
대만	2013	15,280	2.99	7
오스트리아	2014	13,046	2.99	7
이스라엘	2013	12,242	4.21	2
벨기에	2013	11,969	2.28	12
덴마크	2013	10,265	3.06	6
핀란드	2013	8,875	3.31	4
평균		64,278	2.56	

주: OECD가 2015년 7월에 발표(OECD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 대상)한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국가별 2014년 데이터가 공표(MSTI 2015-2로 2016년 2월 발간 예정)되면 순위 변동 가능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4년 국내 총 R&D 투자는 63조 7,341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2015. 10. 29.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투자를 살펴보면 대기업이 전체 연구개발비투자의 7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투자는 2001년 8조 7천억원에서 2014년도 38조 6천억원으로 약 4.4배 증가하였으며 2014년 기준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투자의 77.5%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투자비중은 2001년 71.2%에서 2004년에 79.1%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9년 70.9%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최근 다시 투자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II-18〉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합계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2001	87,370	71.2	19,588	16.0	15,778	12.9	122,736	100.0
2002	93,371	72.0	18,133	14.0	18,249	14.1	129,753	100.0
2003	110,842	76.4	18,260	12.6	15,994	11.0	145,096	100.0
2004	134,641	79.1	18,902	11.1	16,655	9.8	170,198	100.0
2005	146,429	78.9	19,911	10.7	19,302	10.4	185,642	100.0
2006	160,217	75.8	25,031	11.8	26,019	12.3	211,268	100.0
2007	175,119	73.4	32,710	13.7	30,820	12.9	238,649	100.0
2008	187,139	72.0	38,250	14.7	34,611	13.3	260,001	100.0
2009	199,699	70.9	44,873	15.9	37,086	13.2	281,659	100.0
2010	242,129	73.8	48,503	14.8	37,401	11.4	328,032	100.0
2011	283,462	74.2	52,192	13.7	46,179	12.1	381,833	100.0
2012	320,709	74.2	58,132	13.4	53,388	12.4	432,229	100.0
2013	357,782	76.8	58,645	12.6	49,173	10.6	465,599	100.0
2014	386,177	77.5	59,468	11.9	52,899	10.6	498,545	100.0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4년 국내 총 R&D 투자는 63조 7,341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2015. 10.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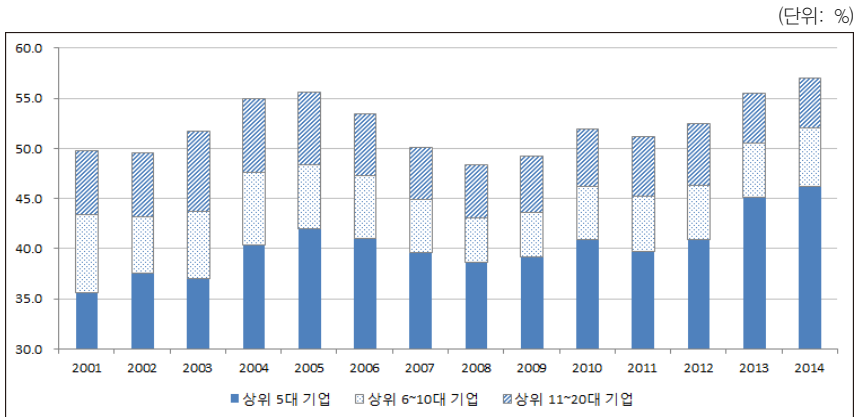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투자는 2014년 기준 약 6조원 수준으로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투자의 1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투자 비중은 대기업과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전체 기업에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6%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5년 10.7%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다시 2009년 15.9%까지 증가하였지만 최근까지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투자는 2014년 기준 5조 2,899억원으로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투자의 10.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투자 규모는 2001년 1조 5,778억원에서 2014년 5조 2,899억원으로 약 3.3배 이상 증가하였다.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투자 비중은 연도별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2001년 12.9%에서 2002년 14.1%로 최고를 기록하였고 2004년에 9.8%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10%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투자를 기업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상위 5대 기업의 투자규모가 2014년 기준 46.2%를 차지하며 상위 10대 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연구개발비투자 비중은 52.1%로 과반을 넘는다. 상위 5대 기업의 연구개발비투자는 2001년 35.6%에서 2014년 46.2%로 10%p 이상 증가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기업들의 연구개발비투자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상위 5대 기업의 하락 폭은 크지 않았고 상위 6~20대 기업의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

상위 5대 기업의 연구개발비투자는 변동 폭이 크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상위 6~2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투자는 경기 따라 변동 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뚜렷한 증가추세 없이 최근 다시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연구개발비투자는 상위 5대 기업에 더욱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상위 6~2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투자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은 향후 정책대안에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그림 II-17] 상위기업의 연구개발비 집중도



자료: 과학기술통계서비스(<https://sts.ntis.go.kr>, 접속일: 2016. 9. 22)

나. 기업 연구개발비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또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연구개발행위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필

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어 왔다. 기업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비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조세지원과 예산사업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구분된다. 조세지원의 경우 개발단계와 성과단계에 대한 아홉 가지 조세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과거 준비단계의 조세지원제도로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될 재원을 적립하면 손금에 산입하고 사용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과세이연제도가 시행됐었으나 2013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폐지하고 현재는 경과규정으로 남아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12개 항목으로 구분되며 2015년 전체 지원실적은 3조 1,697억원에 육박한다. 연구개발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실적은 2013년 3조 4,325억원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6년 추정치는 2조 4,305억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연구개발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활용도가 가장 높은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약 2조 8,158억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 투자에 대한 지원의 89%에 달하며 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지출 예상규모도 2015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2조 802억원 수준으로 전체 연구개발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출의 85%에 육박한다.

두 번째로 활용도가 높은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로 2015년 지원실적이 1,509억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투자 조세지원의 약 4.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6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지원제도보다 감소 폭이 작아 전체 지원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2015년 기준 1,430억원으로 지원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외국기업 및 외국인근로자를 유치하여 국내 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을 기대하여 운영하는

제도이지만, 실제로 제도의 효과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⁷⁾

〈표 II-19〉 「조특법」 제2장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원 추이

(단위: 억원, %)

조세지원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평균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준비 단계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600	1.9	244	0.8	161	0.7	335	1.1
	소계	600	1.9	244	0.8	161	0.7	335	1.1
개발 단계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7,860	85.9	28,158	88.8	20,802	85.6	25,607	86.9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15	0.0	8	0.0	9	0.0	11	0.0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2	6.2	1,509	4.8	1,464	6.0	1,662	5.6
	소계	29,887	92.2	29,675	93.6	22,275	91.6	27,279	92.5
성과 단계	(제12조)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9	0.0	14	0.0	2	0.0	8	0.0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70	0.2	41	0.1	34	0.1	48	0.2
	(제12조의3,4)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3	0.1	5	0.0	14	0.0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4	0.0	16	0.1	28	0.1	16	0.1
	(제14조) 창업자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0.0	-	0.0	-	0.0	-	0.0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22	0.1	66	0.2	134	0.6	74	0.3
	소계	105	0.3	160	0.5	203	0.8	156	0.5
기타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11	0.7	188	0.6	139	0.6	179	0.6
	(제18조의2) 외국인 근로자(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과세특례	1,628	5.0	1,430	4.5	1,527	6.3	1,528	5.2
	소계	1,839	5.7	1,618	5.1	1,666	6.9	1,708	5.8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출 합계	32,431	100.0	31,697	100.0	24,305	100.0	29,47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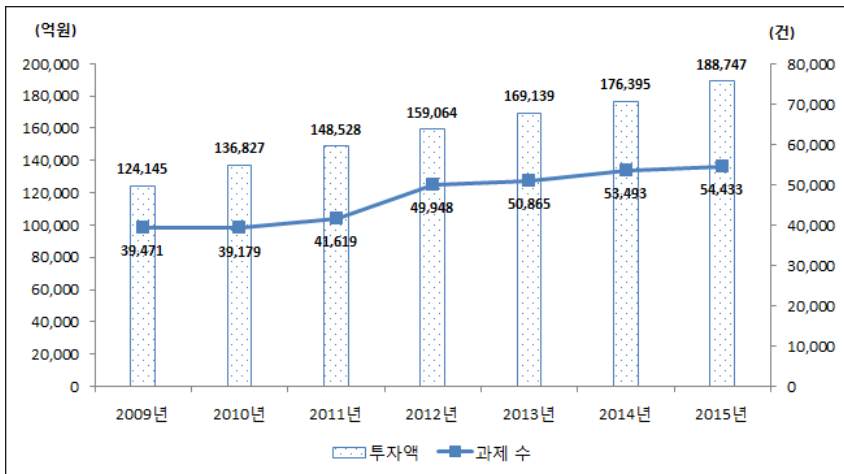
주: 2014~2015년도는 실적치, 201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6, pp. 28~33, p. 128, 2017, pp. 27~31, p. 128.

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와 관련하여 2016년 심층평가결과에 따르면 정책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외국인근로자 유인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중장기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조세지원제도뿐만 아니라 예산사업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도 기업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은 약 12조 4천억원 수준이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총투자액은 18조 9천억원으로 2009년에 비하여 약 52% 증가하였다. 2010~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7.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부과제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9년 39,471건에서 2015년에는 54,433건으로 약 38% 증가하였다.

[그림 II-18]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과 세부과제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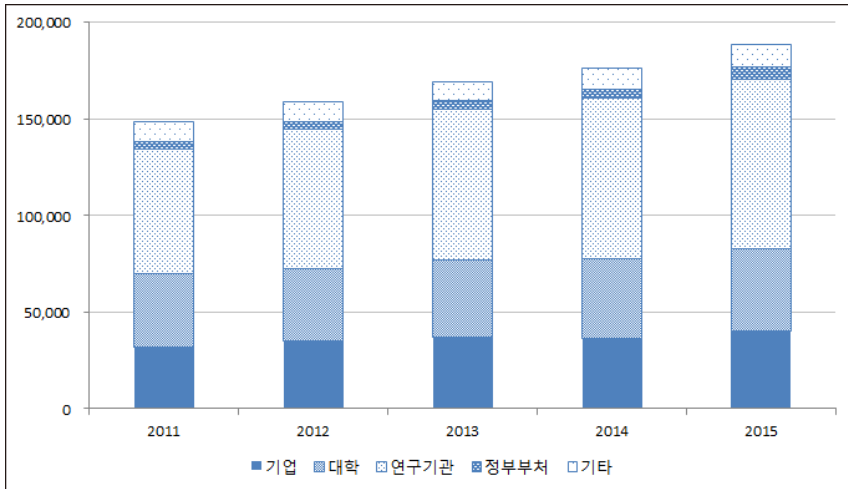
주: 범부처사업(Goldenseed프로젝트,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나노융합2020 등)은 2012년까지 사업 수와 세부과제 수를 중복계상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시행계획(안)」의 다부처 공동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통합 조사 시행에 따라 중복산정하지 않음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2016. 7. p. 6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주체별로 살펴보면 2015년 기업에 의해 약 4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21.4%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국공립연구소와 출연연구소를 포함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2015년 약 8조 8천억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가장 높은 비중(46.5%)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이 4조 3천억원으로 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해 2015년 기준 약 3조 2천억원 규모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예산 4조원을 더할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해 총 7조 2천억원 수준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19] 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 추이

(단위: 억원)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2016. 7. p. 22.

기업규모별로 정부의 지원을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국세통계연보』 상에 나타나는 「소득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모와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⁸⁾ 『국세통계연보』는 2014년 신고자료까지 가용하며 『국세통계연보』상 2014년 대기업 세액공제규모는 1조 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34.4% 비중을 차지하는 데 비해 대기업은 전체 세액공제의 65.6%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세액공제규모 비중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8)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는 2013년부터 기업규모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문의 표에 제시된 2013년과 2014년 대기업은 과거 시계열과의 연계를 위해서 중견기업을 과거와 같이 일반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작성된 통계이다.

추세를 비교해보면, 대기업은 201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중소기업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2014년 2조 4천억원으로 전체의 66.1% 비중을 차지하여 높게 나타난다. 대기업은 2014년 1조 2천억원으로 33.9% 비중을 차지하여 세액공제와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추세적으로 살펴봤을 때에도 대기업은 2010년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중이 감소된 데 반해 중소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중은 2010년 이후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봤을 때 대기업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제도를 통한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지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이후 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행해온 조세지원과 예산지원의 추이는 기업들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금융시장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달한 재원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조세지원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형태로 직접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원조달의 한계를 완화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지원방안으로 평가된다.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이 대기업에 모두 귀착되므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와 중소기업 관련 이익단체에서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제Ⅳ장에서 자세히 제시되겠지만, 현행 제도의 중소기업 우대 정도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제도적으로는 중소기업을 매우 우대해주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의 혜택이 대기업에 많이 귀착되는 것은 기업규모별 연구개발활동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최대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대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 수준은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받는 연구개발 조세지원 총계보다 큰 규모의 혜택을

받는 것뿐이다.

다시 말해, 대기업이 자체재원으로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이 전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 수준이지만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된 조세지출규모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도 자체는 중소기업에 우호적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부담세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다 우호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설정하더라도 중소기업들의 수혜금액이 더 확대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조세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조특법」 제10조의 세액공제규모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합하여 정부의 R&D 지원으로 분류하고 정부 R&D 지원의 대기업 집중도를 살펴보면 2014년 47.5% 수준으로 나타난다. 정부의 R&D 지원에 대한 대기업 집중도는 2007년 49.3%에서 2013년 52.6%까지 증가하였지만 2014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추이가 나타나게 된 주요 원인은 조세지원규모보다 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기업 지원이 2010년 43% 수준에서 2014년 33.9% 수준으로 낮아진 데 있다. 이처럼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의 대기업 비중이 축소되는 가운데 민간 연구개발비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73.4%에서 2014년 77.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처럼 예산사업의 형태로 지원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직접보조금을 함께 고려하면 민간 연구개발활동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및 예산지원이 중소기업들의 자체부담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중소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혜 비중은 2010년 57%에서 2014년 66.1%로 확대됐으나 자체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원 비중은 2010년 42%에서 2014년 34.4%로 축소됐다.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규모 자체는 2010년 7,729.9억원에서 2014년 9,433억원으로 확대됐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도 1조 6천억원 규모에서 2014년 2조 4천억원 규모로 확대됐으나 민간 연구개발 자체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2010년 26.2%에서 2014년 22.5%로 축소되며 중소기

업 자체부담 연구개발 활동이 정부지원의 증가만큼 촉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20〉 기업규모별 정부 R&D 지원 현황 비교

(단위: 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중소기업	7,729.9	9,192.8	9,701.6	9,170.9	9,433.0
		(42.0)	(39.8)	(38.4)	(32.2)	(34.4)
	대기업	10,686.9	13,920.3	15,555.5	19,322.9	18,003.8
		(58.0)	(60.2)	(61.6)	(67.8)	(65.6)
합계	18,416.8	23,113.0	25,257.1	28,493.8	27,436.8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	16,353.0	18,469.0	20,956.0	21,926.0	24,150.0
		(57.0)	(57.1)	(59.3)	(59.0)	(66.1)
	대기업	12,330.0	13,861.0	14,397.0	15,216.0	12,360.0
		(43.0)	(42.9)	(40.7)	(41.0)	(33.9)
합계	28,683.0	32,330.0	35,353.0	37,142.0	36,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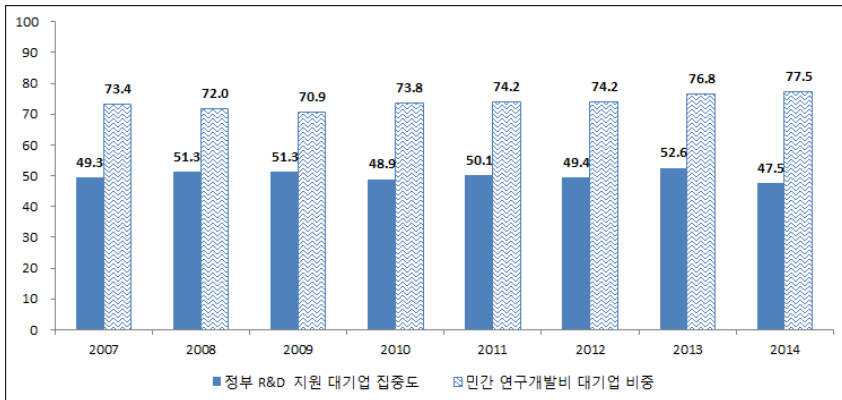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2016. 7. p. 73.

[그림 II-20] 연구개발비투자의 대기업 집중도

(단위: %)



자료: 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과학기술통계서비스(http://sts.ntis.go.kr, 접속일: 2016. 9.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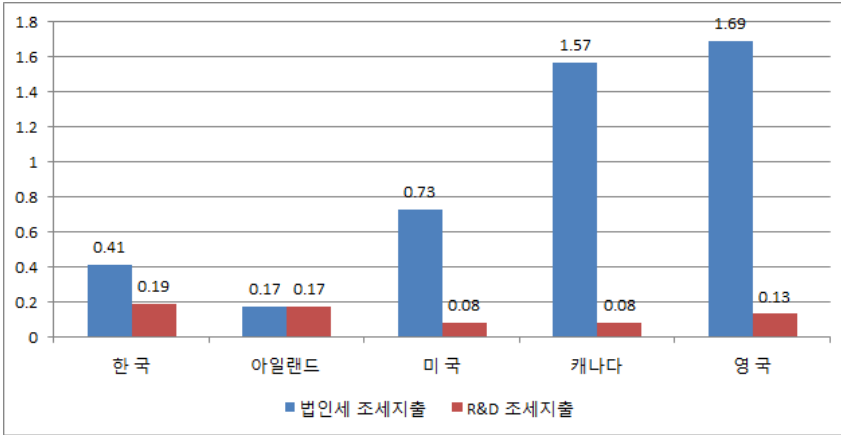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수준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에 대한 조세지원은 미국, 캐나다, 영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고, 연구개발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지출규모는 GDP 대비 약 0.41% 수준으로 나타난다. 영국은 1.69%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1.57%로 GDP의 1%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미국은 0.73%로 영국과 캐나다보다는 낮지만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며 아일랜드의 법인세 조세지출 규모가 GDP 대비 0.17%로 우리나라보다 낮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대한 조세지출규모는 낮게 나타났지만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다른 국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조세지출규모는 GDP 대비 0.19%로 아일랜드(0.17%), 영국(0.13%), 미국(0.07%), 캐나다(0.08%)보다 높으며, 미국이나 캐나다와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세율인 12.5%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는 아일랜드는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의 GDP 대비 비중도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소폭 낮은 수준의 20%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는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은 1.69%로 나타났으나 연구개발을 위한 조세지출의 GDP 비중은 0.13%로 우리나라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방세분 포함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법인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도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결과는 우리나라가 여타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얼마나 연구개발에 대해 지원을 많이 해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9) 아일랜드의 최근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아일랜드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의 2% 수준만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에 의해 유발되고 나머지는 모두 연구개발을 위한 조세지출로 나타났다.

[그림 II-21] 2015년 법인세 조세지출 및 R&D 조세지출의 GDP 대비 비중

(단위: %)



주: 1. 미국: 추정치, 기능별 분류(국방, 국제교류, 일반과학 및 기술, 에너지, 천연자원과 환경, 농업, 산업 및 주택, 운송, 지역개발, 교육·훈련·고용 및 사회사업, 의료, 소득보장, 사회보장, 보훈, 일반보조, 이자소득)별 각 항목의 단순 합계
 캐나다: 추정치, 개인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각 세목별 항목의 단순합계
 한국, 영국, 아일랜드: 실적치

2. R&D 조세지출의 GDP 비중은 법인 R&D 조세지출만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1. 미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alytical Perspectives*, 각 연도.

영국: HM Revenue & Customs, United Kindom, "Estimated cost of tax reliefs, expenditures, & allowances," 각 연도.

캐나다: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Tax Expenditures and Evaluations*, 2015.

아일랜드: Department of Finance, Ireland, *Report on tax expenditures*, 2015.

한국: 기획재정부, 『2017 조세지출예산서』, 2016.

2.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한국 GDP: Data extracted on 14 August 2016 16:15 UTC (GMT) from OECD.Stat

미국 GDP: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 접속일: 2016. 9. 22.

다. 기업 연구개발비투자의 성과

연구개발비투자는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나아가 우리 경제 전체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기업 경영의 궁극적 목표가 수익창출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은 기업 본연의 임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성과물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연구개발비투자가 충분히 수행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은 연구개

발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민간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연계되는지는 정부 지원의 타당성과는 또 다른 측면의 이슈이다. 따라서 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과 정부 지원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는 성과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개발활동의 성과물은 일차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수와 같은 중간성과물과 기업의 수익성과 같은 최종 성과물로 구분될 수 있다.

기업활동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규모별·업종별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비교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특허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과 2014년을 비교하여 살펴봤을 때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의 평균 특허 수는 2011년 203.6개, 2014년 219.2개로 49인 이하인 기업의 평균 특허 수가 2011년 2.1개 2014년 1.8개인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49인 이하의 소규모기업의 경우 특허 보유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전무하다. 상시근로자가 50~249인인 기업의 경우 평균 특허 수는 2011년 전 산업 평균 4.8개, 2014년 6.0개로 크지 않으며 상시근로자가 250~499인인 기업의 경우 전 산업 평균 특허 수는 2011년 11.9개, 2014년 15.0개 수준으로 다소 증가하고 있다. 2011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상시근로자 49인 이하 소규모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 특허 보유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상시근로자 50~249인 규모와 250~499인 규모의 기업의 평균 특허 수 증가율이 2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업종의 특성상 1차 산업의 경우 특허를 보유하는 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수도 32개에 불과하다. 여러 업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평균 특허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2011년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기업의 평균 특허 수가 203.6개인데, 제조업만 살펴봤을 때 평균 특허 수는 497.2개로 2.4배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2014년의 경우에도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전 산업 평균

특허 수는 219.2개 제조업 특허 수는 475.8개로 제조업 특허 수가 여전히 가장 많으나 그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2014년 업종별 평균 특허 수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수도가스전기업종의 특허 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나 대상기업 수가 2011년 28개, 2014년 11개로 적기 때문에 평균치 변동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업종의 경우 대상기업 수가 전체 기업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 평균 특허 수가 2011년 20.6개에서 2014년 40.9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전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21〉 기업규모별·업종별 평균 특허 수

(단위: 개, %)

구분	49인 이하		50~249인		250~499인		500인 이상		
	기업 수	평균 특허 수	기업 수	평균 특허 수	기업 수	평균 특허 수	기업 수	평균 특허 수	
2011	1차산업	-	-	16	0.6	-	-	16	-
	제조업	-	-	4,700	6.3	619	19.5	514	497.2
	전기가스수도	-	-	14	37.7	3	-	28	62.8
	건설업	-	-	492	2.3	51	5.6	52	56.5
	서비스업	906	2.1	3,006	2.8	561	4.3	744	20.6
	전산업	906	2.1	8,228	4.8	1,234	11.9	1,354	203.6
2014	1차산업	-	-	33	0.8	1	-	2	-
	제조업	-	-	4,758	8.3	714	23.7	477	475.8
	전기가스수도	-	-	34	1.5	10	8.1	11	221.4
	건설업	-	-	460	3.4	44	10.7	47	89.1
	서비스업	1,471	1.8	3,081	2.8	624	5.6	650	40.9
	전산업	1,471	1.8	8,366	6.0	1,393	15.0	1,187	219.2
평균 특허수 증감률	1차산업	-	-	40.1	-	-	-	-	-
	제조업	-	-	32.2	21.6	-	-	-	-4.3
	전기가스수도	-	-	-96.1	-	-	-	-	252.6
	건설업	-	-	46.0	91.6	-	-	-	57.9
	서비스업	-	-16.3	1.6	31.2	-	-	-	98.2
	전산업	-	-16.3	24.0	25.9	-	-	-	7.7

주: 기업규모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구분함

자료: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각 연도

기업의 수익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흑자기업 비중을 업종별·기업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모든 업종과 기업규모에 대해 2014년의 흑자기업 비중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 산업을 기준으로 2011년과 2014년의 흑자기업 비중을 종사자 수에 따라 비교해 보면 종사자 수가 49인 이하인 기업과 500인 이상인 기업의 흑자기업 비중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종사자 수가 49인 이하인 기업의 2011년 흑자기업 비중은 66.8%였으나 2014년 63.6%로 3.2%p 하락하였고, 종사자 수가 50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2011년 흑자기업 비중이 85.9%에서 2014년 82.6%로 3.4%p 하락하였다. 다만 종사자 수가 49인 이하인 기업의 경우 모두 서비스 업종에 해당하고 있다. 종사자 수가 250~499인인 기업의 경우 흑자기업 비중 감소폭이 가장 작게 나타나서 2011년 83.7%에서 2014년 82.0%로 약 1.7%p 하락에 그쳤다.

〈표 II-22〉 기업규모별·업종별 수익성(흑자기업 비율) 변화

(단위: %, %p)

구분		49인 이하	50~249인	250~499인	500인 이상
2011	1차산업	0.0	93.8	-	100.0
	제조업	0.0	82.6	82.4	85.4
	전기가스수도	0.0	100.0	100.0	100.0
	건설업	0.0	86.8	76.5	70.8
	서비스업	66.8	80.7	85.7	87.4
	전산업	66.8	82.2	83.7	85.9
2014	1차산업	0.0	66.7	100.0	100.0
	제조업	0.0	79.8	81.1	78.0
	전기가스수도	0.0	85.3	90.0	90.9
	건설업	0.0	85.2	72.7	51.1
	서비스업	63.6	78.0	83.5	88.0
	전산업	63.6	79.4	82.0	82.6
수익성 증감	1차산업	-	-27.08	-	0.00
	제조업	-	-2.81	-1.30	-7.38
	전기가스수도	-	-14.71	-10.00	-9.09
	건설업	-	-1.57	-3.74	-19.77
	서비스업	-3.15	-2.71	-2.25	0.63
	전산업	-3.15	-2.81	-1.73	-3.39

주: 기업규모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구분함
 자료: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각 연도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1년과 비교했을 때 2014년에 흑자기업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관측치 수가 적은 1차 산업과 전기·가스·수도업종을 제외할 경우 건설업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서비스업의 감소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500인 이상 대기업의 흑자법인 비중이 가장 크게 축소된 업종은 건설업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도 흑자법인 비중이 2011년 대비 7.38%p나 축소됐다. 500인 대기업의 흑자법인 비중이 유일하게 소폭이나마 증가한 업종은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500인 이상 제조업과 50~249인 규모의 전기·가스·수도업을 제외하고 연구개발 활동의 중간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특허 수는 2011년 대비 2014년에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앞서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활동의 중간 성과물의 증가세와는 달리 흑자법인 비중은 500인 이상 서비스업 영위 기업들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기업들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연구개발활동이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매출액 대비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비율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을 살펴보면,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종사자 수가 49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과 5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의 경우 2014년 수익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종사자 수가 49인 이하인 기업의 경우 2011년도 전체 산업의 세전순이익률이 4.9%로 나타났으나 2014년 3.7%로 1.2%p가량 감소하였다. 종사자 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전순이익률이 2011년 6.2%에서 2014년 4.5%로 1.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가 50인~499인 기업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014년 수익성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사자 수가 250~499인 경우 세전순이익률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2011년 3.0%에서 2014년 4.5%로 1.5%p 증가하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도업은 종사자 수 250~499인 규모의 기업을 제외하고 2011년과 비교했을 때 2014년의 수익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종사자 수 500인 이상인 경우 수익성이 감소하였고 종사자 수 50~499인인 경우에는 수익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기업들이 분포한 제조업의 경우에는 250~499인 규모의 기업들의 수익성이 0.17%p 개선됐으나 여타 규모의 기업들의 수익성은 2011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0인 이상의 대기업들은 전기·가스·수도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수익성이 2011년보다 최소 0.95%p에서 최대 1.91%p까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3〉 기업규모별·업종별 수익성(매출액 대비 세전순이익 비율) 변화
(단위: %, %p)

구분		49인 이하	50~249인	250~499인	500인 이상
2011	1차산업	-	4.68	-	11.48
	제조업	-	3.53	4.43	6.63
	수도가스전기	-	5.54	3.52	4.20
	건설업	-	-1.11	-9.46	1.79
	서비스업	4.90	3.78	2.79	6.31
	전산업	4.90	3.42	2.96	6.20
2014	1차산업	-	2.30	6.56	10.51
	제조업	-	3.26	4.60	4.98
	수도가스전기	-	4.00	8.10	7.12
	건설업	-	1.76	1.90	-0.11
	서비스업	3.70	4.63	4.23	4.55
	전산업	3.70	3.82	4.48	4.54
수익성 증감	1차산업	-	-2.38	-	-0.98
	제조업	-	-0.27	0.17	-1.65
	수도가스전기	-	-1.54	4.59	2.93
	건설업	-	2.87	11.36	-1.91
	서비스업	-1.19	0.85	1.43	-1.76
	전산업	-1.19	0.41	1.51	-1.66

주: 기업규모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구분함
자료: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각 연도

이상에서 살펴본 기업의 연구개발행위, 특히 보유진수, 매출액 대비 세전 이익으로 측정된 기업의 수익성 사이의 관계를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자체부담 연구개발지출이 클수록 특히 보유진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기(RD_t), 전기(RD_{t-1}), 2기 전 기업의 자체부담

연구개발(RD_{t-2})이 금기의 특허 보유건수($Patent_t$)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결과는 모두 5% 또는 1%의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허 보유건수가 기업의 수익성($EBT_t/Sales_t$)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기업들의 연구개발행위의 중간 성과물이 기업의 수익성과의 연계성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업의 연구개발행위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결과들을 고려해서 특허 보유건수 대신 기업의 자체부담 연구개발 지출을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기의 자체부담 연구개발활동의 증가는 기업의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금기의 자체부담 연구개발과 2기 이전의 자체부담 연구개발은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활동이 기업의 수익성으로 연계되는 연결고리가 미약한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특허 보유건수 등과 같은 일차적 성과물에 의해 연구개발활동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표 II-24〉 자체연구개발, 특허 보유건수, 매출액 대비 세전수익률 사이의 관계

	$Patent_t$		$EBT_t/Sales_t$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RD_t	0.021	0.010	-	-	0.398	0.566
RD_{t-1}	0.032	0.000	-	-	1.878	0.018
RD_{t-2}	0.014	0.011	-	-	2.308	0.262
$Patent_t$	-	-	20.436	0.405	-	-
$Patent_{t-1}$	-	-	34.668	0.297	-	-
$Patent_{t-2}$	-	-	21.247	0.254	-	-
관측 수	6,995		7,531		8,744	
기업 수	3,987		4,183		4,961	
$within-R^2$	0.008		0.002		0.001	

주: 연도더미와 기업더미를 포함한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2011~2014

4. 시사점

우리 경제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혁신성향과 성장성을 더욱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경제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의 기준점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오랜 기간 동안 중소기업정책을 수립해왔다. 그러한 정책들의 취지는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책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문제까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회하고자 정부는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중기업과 소기업의 범위 기준을 기존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했다. 기업 쪼개기 이외에, 매출액은 기업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범위 기준 설정에 따른 결집효과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제도 개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운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매출액 기준 기업 규모 분포함수의 불연속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하더라도 기업의 규모가 해당 매출액 기준에서 결집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살펴봤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새로운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설정하더라도 정부 정책의 정책대상자로 남기 위해서 기업들의 성장회피 경향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Kushnir(2010)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산업별로 달리 규정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별로 다른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정도이다. 캐나다와 일본의 경우에는 조세지원제도의 정책대상자로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설정할 때 업종별로 달리 설정하지 않고 있다. 특정 업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타당성은 정부 지원의 수혜 업종에서 파급되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상대가격체제 왜곡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훼손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커야만 한다. 이에 대한 엄밀한 검토 없이, 신성장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경우 주요 국가들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폭 넓게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들이 있다. 이병기(2013)는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범위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주요국의 범위와의 정합성, 중소기업 정책대상 과다 포괄성, 창업 및 초기 혁신기업의 정책 효과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폭 넓게 설정된 규모의 범위 기준에 따른 지원보다는 창업 및 초기 혁신 기업과 같이 혁신성향과 성장성이 높은 소규모기업들에게 집중함으로써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방향은 결집효과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축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추이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투자 확대를 통한 총요소생산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정부는 연구개발행위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및 재정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 수준과 우리나라 연구개발 강도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고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의 총량이 대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성과라 할 수 있는 기업당 평균 특허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연구개발활동의 궁극적 성과물인 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개발활동과 기업의 수익성 사이에는 강건한 양(+)의 관계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우리 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를 통한 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Ⅲ. 현행 중소기업 과세체계 및 우대 정도

중소기업 세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기업이 법인화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살펴봐야 할 다른 측면은 기업규모에 따른 세부담 수준의 평가이다. 중소기업의 조직 유형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법인인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사이의 세부담 차이를 소규모 중소기업의 기업 유형별 실효세율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세 과세대상인 법인화 기업들의 세부담을 기업규모별로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 조세지원 정책이 법인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업 유형별 실효세율 비교

가. 전체 사업자 실효세율 비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과세표준 기준과 소득금액 기준으로 측정한 법인세 및 소득세 실효세율을 비교한다.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총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의 세부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국세통계연보』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 살펴볼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수준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사업자 신고자를 제외한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비교한다.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결정되는데 총수입금액이 필요경비보다 작아서 사업소득이 음수인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에서 순서대로 공제할 수 있다. 이처럼 결정된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정의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이후 6~3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비과세감면제도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면 총결정세액이 산출된다.

법인의 경우 영업이익과 영업외이익을 합산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무조정을 하고 기부금 한도초과액 등을 반영하여 흑자법인사업소득을 결정한다. 흑자법인사업소득이 결정된 이후 이월결손금,¹⁰⁾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여기에 10~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면 총부담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 기준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실효세율이 비사업자를 제외한 종합소득세 실효세율보다 2014년 약 1.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¹⁾ 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 이전 2008년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실효세율이 개인사업자의 실효세율보다 약 1.7%p 더 높았으나 2009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실효세율이 소폭 더 높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사이의 실효세율의 차이가 2013년 2.3%p까지 확대됐으나 2014년 1%p 축소되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사이의 실효세율 차이는 1.3%p로 나타났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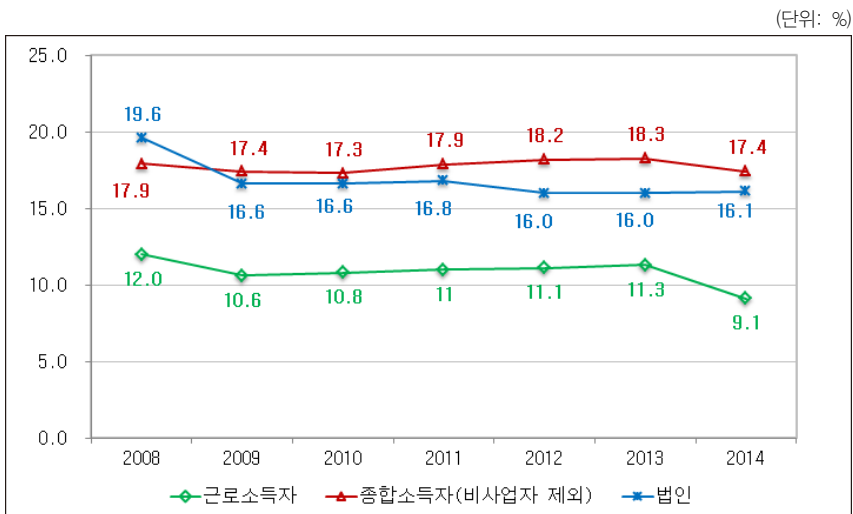
10) 개인의 경우 해당 연도의 여타 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이후 10년간 발생하는 양(+)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이월공제하여 미래의 과세표준을 축소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결정과정에서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누적된 이월결손금을 당기순이익의 80%의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11)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산출 방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출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어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지표와 세부담을 별도로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하나의 대용지표로서 사업소득이 없지만 이자 또는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한 비사업자를 제외한 종합소득자의 실효세율을 측정하여 법인사업자의 실효세율과 비교한다.

12) 사업자 유형은 아니지만 참고의 목적으로 함께 나타낸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기준 실효세율은 2013년까지 11% 안팎 수준이었으나 2014년 9% 수준으로 나타나며 여타 유형의 납세자들보다 7~8%p 정도 낮은 수준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지만, 기업과세를 살펴보는 본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근로자의 세부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른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이러한 추이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 사업연도 소득금액 기준 실효세율 추이에서 관측된다. 2008년 비사업자를 제외한 종합소득자의 소득금액 기준 평균 실효세율은 13.5%로 법인사업자들의 평균 실효세율 17.4%보다 3.9%p나 낮았다. 이후 두 사업자 유형 사이의 실효세율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며 2014년 0.3%p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기준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 법인세율 인하 이후 15% 안팎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종합소득자(비사업자 제외) 실효세율은 2009년 12.7%를 저점으로 2014년 14.2%로 지속 증가하며 법인사업자와의 실효세율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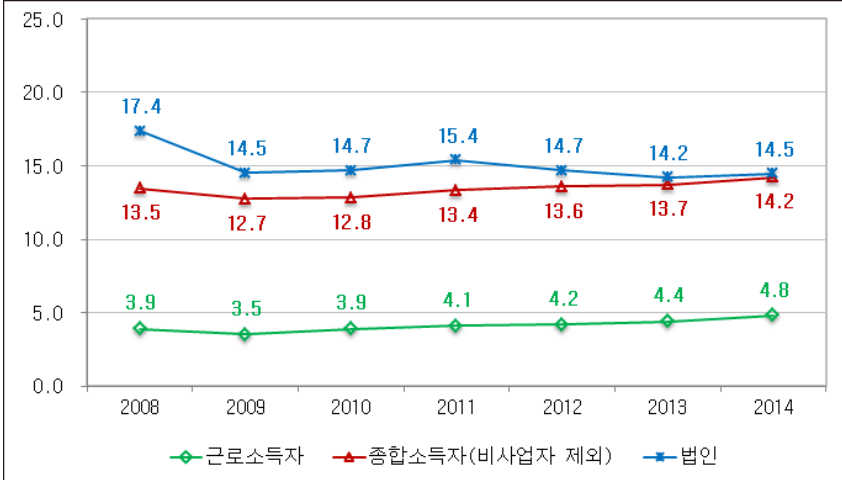
[그림 III-1] 납세자 유형별 평균 실효세율 추이
(a) 과세표준 기준



13)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기준 실효세율은 2008년 3.9%에서 2014년 4.8%로 0.9%p 확대됐으나 여타 유형의 납세자들의 실효세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b) 소득금액 기준

(단위: %)



- 주: 1. 각 평균 실효세율은 해당 연도 귀속 또는 결산 기준임
 2.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법인의 세액 지표는 각각 결정세액, 총결정세액, 총부담세액을 사용
 3. 패널 (a)의 소득지표는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표준을 사용하고 패널 (b)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소득지표로 총급여, 종합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사용
 4. 종합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사업소득 없이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의 발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를 제외한 실효세율이며, 과세미달자는 제외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I, 3-1-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총괄, 8-1-2 법인세 신고 현황 II, 각 연도

나. 수입금액규모별 평균 실효세율 비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평균 실효세율이 수입금액규모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사업자 유형별 과세 형평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세통계연보』에는 개인사업자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이 발표되고 있지 않아서 엄밀한 비교검토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재차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국세통계연보』에서 찾을 수 있는 수입금액규모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은 비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사업자의 신고현황이 포함된 자료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¹⁴⁾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수입금액규모별 구간은 법인세 신고기업의

수입금액 규모별 구간과 일치하지 않아서 5억원 이하, 5억~10억원 이하, 10억~50억원 이하의 세 개 구간에 대한 비교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수입금액 최고 구간은 10억원 초과이어서 그 이상의 구간에 대한 상세정보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2014년 귀속 수입금액 10억 초과 구간의 14만 516명의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 수입금액은 21억 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10억~50억원 이하 구간의 12만 4,207개의 법인세 신고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은 23억 8,500만원으로 수입금액 10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 수입금액과 유사하게 나타나서 이 구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법인사업자의 평균 실효세율을 비교하고자 한다.¹⁵⁾

개인사업자의 평균 실효세율이 법인사업자의 평균 실효세율보다 낮은 구간의 기업규모는 수입금액 5억원 이하 구간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실효세율의 경우 2013년 귀속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인사업자의 평균 실효세율보다 법인사업자의 평균 실효세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 귀속의 경우에는 두 유형의 사업자 사이의 실효세율의 차이는 0.1%p 수준으로 축소됐다. 2014년에는 다시 법인의 평균 실효세율이 0.6%p 높게 나타나며 이전 연도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소득금액 기준으로 살펴볼 때 개인사업자의 평균 실효세율이 법인사업자의 평균 실효세율보다 높게 나타난 경우는 2012년 수입금액 5억원 이하의 구간으로 2010년 단 한번 관측된다. 이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사업자보다 더 높은 평균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5억~10억원 구간과 10억~50억원 구간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평균 실효세율이 법인사업자보다 10~16%p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12년 귀속분부터 적용된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한 명목세율 2%p 인상과 3억

14) 2014년 귀속 기준 비사업자의 신고건수 비중은 9.9%이나 총수입금액 비중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종합소득세 신고자 전체의 수입금액구간별 평균실효세율을 크게 왜곡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5)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50억~100억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31,579개 기업들의 평균 수입금액은 69억 6,900만원으로 10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 수입금액이나 10억~50억원 구간의 법인사업자 평균 수입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므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원 초과분에 대한 5%p 인상에 의해 세부담이 확대되면서 법인사업자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세율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4년 귀속 분부터 최고세율 적용 소득 구간을 1억 5천만원으로 인하함에 따라 추가적인 세부담 확대로 이어져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사업자 실효세율보다 높은 세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 기업 유형별 ·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실효세율 추이

(단위: %, %p)

수입금액 구간	2010			2011			2012			2013			2014		
	개인 (A)	법인 (B)	차이 (A-B)	개인 (A)	법인 (B)	차이 (A-B)	개인 (A)	법인 (B)	차이 (A-B)	개인 (A)	법인 (B)	차이 (A-B)	개인 (A)	법인 (B)	차이 (A-B)
과세	12.8	13.2	-0.4	13.1	13.6	-0.5	12.9	15.1	-2.2	13.4	13.3	0.1	12.1	12.7	-0.6
표준	20.2	10.3	9.9	20.5	10.5	10.0	21.0	9.9	11.1	21.4	10.4	11.0	21.4	9.9	11.5
기준	24.6	10.7	13.9	25.0	10.9	14.1	26.5	10.3	16.2	26.7	10.9	15.8	27.0	11.1	15.9
소득	8.4	7.7	0.7	8.5	7.9	0.6	8.4	9.4	-1.0	9.0	8.3	0.7	9.1	7.5	1.6
금액	17.3	7.4	9.9	17.5	8.0	9.5	17.9	7.6	10.3	18.3	7.9	10.4	19.4	7.6	11.8
기준	22.9	8.8	14.1	23.2	9.2	14.0	24.5	8.8	15.7	24.7	9.2	15.5	25.8	9.5	16.3

주: 1. 평균 실효세율

- 종합소득자: 총결정세액/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법인: 총부담세액/과세표준(특지방인소득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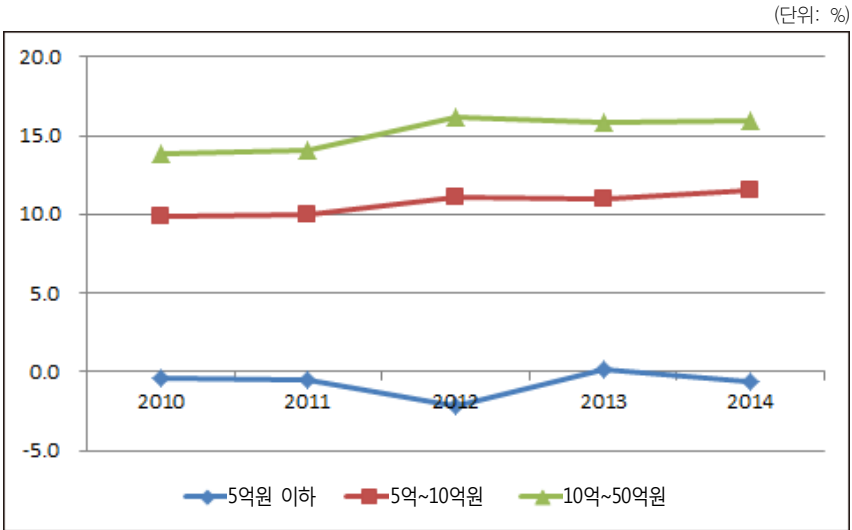
2. 종합소득자는 비사업자를 제외한 수입금액 규모별 통계가 적용되지 않아 비사업자(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소득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 포함

3. 2014년 귀속 수입금액 10억원 초과 개인 종합소득신고자의 평균 수입금액은 21억 7천만원이고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사업자 평균 수입금액은 23억 8,500만원으로 나타남. 여기서 수입금액 10억원 초과 종합소득신고자의 평균실효세율과 수입금액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의 평균 실효세율을 비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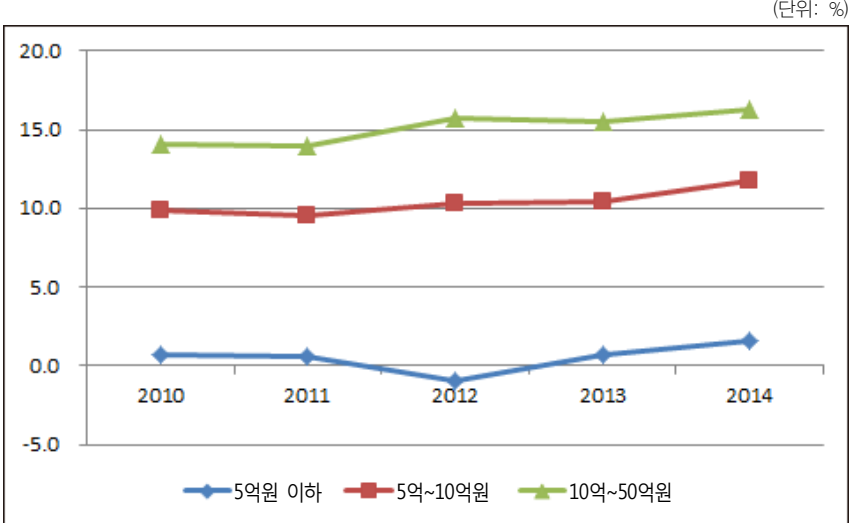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종합소득자) 3-2-1 주요항목 신고 현황, (근로소득자)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 2015, (국세통계 조기통계) 8-1-3 법인세 신고 현황Ⅲ(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2016

[그림 Ⅲ-2] 수입금액 규모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실효세율 차이

(a) 과세표준 기준



(b) 소득금액 기준



주: 1. 각 평균 실효세율은 해당 연도 귀속 또는 결산 기준임
 2. <표 Ⅲ-1>에서 제시된 '차이'의 추이만을 재구성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종합소득자) 3-2-1 주요항목 신고 현황, (근로소득자) 4-2-4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신고 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 2015, (국세통계 조기통계) 8-1-3 법인세 신고 현황Ⅲ(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2016.

2. 법인 규모별 평균 실효세율 비교

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소득에 대해서는 20%, 20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낮은 세율과 중간 세율은 소득 크기에 따라 적용될 수 있어서 세법상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3단계 초과누진구조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고 특정 법인규모에 한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감세율 체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인세제 상의 법인규모별 과세체계의 차이는 비과세·감면제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법인 수입금액규모별 평균 실효세율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는 비과세·감면제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범위가 달리 설정되어 있어서 비과세·감면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제도적 요인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가. 법정 법인규모별 평균 실효세율 비교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법인규모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 외 기업으로 구분된다. 본 절에서는 법인들이 부담한 총부담세액의 과세표준 대비 비율로 측정한 평균 실효세율을 이용하여 세부담 수준을 비교한다. 결산연도 2014년 일반법인의 평균 실효세율은 17.3%이고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으로 구분되는데 가장 높은 실효세율을 부담하는 그룹은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들 중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그 외의 기업으로 분류되는 그룹으로 이들의 2014년 평균 실효세율은 1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귀속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각각 17%와 16%이다. 이처럼 상호출자제한기업의 평균 실효세율

이 낮은 이유는 높은 해외사업 비중으로 인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¹⁶⁾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의 표면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을 계산해보면 전체 법인의 표면세율은 19.9%이고 중소기업의 표면세율은 16.2%로 나타난다. 일반법인의 표면세율은 21.1%이고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의 표면세율은 각각 20.2%, 20.4%, 21.8%의 순서로 나타난다. 여기서 구한 표면세율은 기업들의 비과세·감면제도 활용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감면을 차감하기 이전의 세율이다. 결과적으로 표면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는 공제감면율이 된다.¹⁷⁾

이렇게 계산된 공제감면율이 가장 높은 기업규모는 상호출자제한기업들로서 평균 공제감면율이 2014년 5.8%에 달하며 전체 평균 공제감면율보다 2%p나 높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제감면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세액공제제도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이나 투자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최저한세 적용배제 대상인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확히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이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의 규모는 파악되지 않지만 해외사업 비중이 큰 기업들이므로 대부분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의 실효세율을 축소시키는 즉, 공제감면율을 크게 만드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귀속분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는 국세통계 조기공개 항목이 아니라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최소 2013년 귀속분 수준인 2조 8천억원은 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¹⁸⁾ 이러한 수준의 외국납부세액공제규모는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의 2014

16) 『국세통계연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되어 발표될 뿐 여타 기업규모나 수입금액규모별 또는 업종별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정보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세통계연보』의 향후 개선사항 중 하나로 판단된다.

17)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구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합산하면 총부담세액이 되고 이를 분자로 삼고 과세표준으로 나눠주면 평균 실효세율이 구해진다. 그런데 가산세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 실효세율과 표면세율의 차이가 공제감면율(공제감면세액/과세표준)이라 볼 수 있다.

18) 2013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2조 7,856억원 규모이고 이 중 752억원은 중소기업의 공제액이고 나머지가 모두 일반법인의 공제액이다.

년 과세표준규모 98조원의 2.8%에 달하는 수준이어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이들의 공제감면율은 약 3% 초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준의 공제감면율은 중소기업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3년 귀속 750억원 수준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소기업 과세표준의 0.1% 수준에 불과하여 중소기업 실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중소기업의 공제감면율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의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중소기업의 소득은 대부분 국내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반법인 중 그 외 기업의 경우 공제감면율이 1.3% 수준으로 전체 평균 공제감면율보다 2.5%p나 낮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3.2%로 평균 공제감면율보다 0.6%p 낮은 수준으로 중소기업 수준보다 낮다.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적으로 높은 공제감면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에게만 지원되는 다수의 조세지원제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기업들 중 중견기업과 그 외 기업들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면서 확보된 수익성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 적극적으로 투자나 연구개발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감면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2〉 2014년 귀속 법인규모별 실효세율 및 공제감면율 현황

(단위: %)

	표면세율	실효세율	공제감면율
전체	19.9	16.1	3.9
일반법인	21.1	17.3	3.8
중견기업 ¹⁾	20.2	17.0	3.2
상호출자제한기업 ²⁾	21.8	16.0	5.8
그 외 기업	20.4	19.1	1.3
중소기업법인 ³⁾	16.2	12.6	3.6

주: 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상 적합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함

1. 반올림 오차가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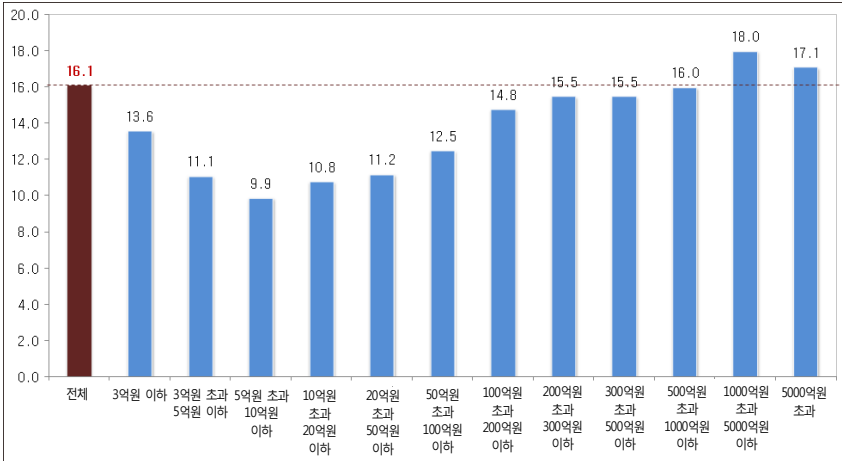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조기공개통계) 『국세통계연보』, 8-1-2 법인세 신고 현황II, 2016.

나. 수입금액규모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2014년 귀속 수입금액규모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수입금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평균 실효세율이 전체 평균 실효세율 16.1%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1천억~5천억원 구간의 경우 2014년 귀속 평균 실효세율은 18%로서 전체 평균보다 1.9%p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금액 5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의 경우 17.1%의 평균 실효세율을 보이며 전체 평균을 1%p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500억~1천억원 구간에 속하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평균 실효세율과 거의 유사한 수준인 16.0%의 평균 실효세율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수입금액규모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5억~10억원 구간에서 가장 낮은 9.9%로 나타났고 수입금액 3억원 이하의 영세 소기업의 경우 평균 실효세율이 2014년 13.6%로 이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기업들의 평균 실효세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입금액 3억원 이하의 영세 소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이 이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구간의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원인은 3억원 이하 소기업들의 경우 비과세·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와 같이 산출세액 기준의 표면세율과 총부담세액 기준의 실효세율의 차이로 측정된 수입금액 규모별 공제감면율이 제시되어 있는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수입금액 3억원 이하 구간의 공제감면율은 2014년 0.5% 수준으로 이는 이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구간들의 공제감면율보다 0.5%p에서 2.2%p나 작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II-3] 2014년 수입규모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비교

(단위: %)



자료: 국세청, (조기공개통계) 『국세통계연보』, 8-1-2 법인세 신고 현황II, 2016.

2009년 대비 2014년 평균 실효세율이 가장 많이 낮아진 기업들은 수입금액 3억~5억원 구간에 속하는 기업들로서 동 기간에 약 1.6%p나 해당 구간의 평균 실효세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억~10억원 구간에 속하는 기업들의 평균 실효세율 하락 폭은 1.4%p로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났다. 50억~100억원 구간에 속하는 중소기업들의 2014년 평균 실효세율도 2009년 대비 약 1.1%p 수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500억~1천억원 구간의 중소기업들과 1천억~5천억원 구간에 속하는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각각 0.9%p씩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0억~200억원 구간과 200억~300억원 구간에 속하는 기업들의 경우 0.1%p 정도 소폭 실효세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구간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체 평균 실효세율 하락 폭 수준 내외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수입금액규모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추이

(단위: %, %p)

수입금액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9 대비 14 증감
전체	16.6	16.6	16.8	16.0	16.0	16.1	-0.5
~3억원	14.0	14.1	14.6	16.5	14.4	13.6	-0.4
3억~5억원	12.7	11.0	11.0	10.4	11.2	11.1	-1.6
5억~10억원	11.3	10.3	10.5	9.9	10.4	9.9	-1.4
10억~20억원	10.8	9.7	10.3	9.8	10.4	10.8	0.0
20억~50억원	11.7	11.1	11.1	10.5	11.1	11.2	-0.5
50억~100억원	13.6	12.7	12.8	12.2	12.7	12.5	-1.1
100억~200억원	14.7	15.0	14.5	14.3	14.6	14.8	0.1
200억~300억원	15.4	15.8	16.2	14.8	14.7	15.5	0.1
300억~500억원	15.9	16.0	16.4	15.3	15.9	15.5	-0.4
500억~1천억원	16.9	16.7	17.2	15.5	15.8	16.0	-0.9
1천억~5천억원	18.9	18.8	18.7	17.7	17.7	18.0	-0.9
5천억원~	17.4	17.4	17.7	17.0	17.1	17.1	-0.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8-1-3 법인세 신고 현황 III, 각 연도

2014년 공제감면율을 수입금액규모별로 살펴보면, 수입금액 5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의 공제감면율이 4.7%로 나타나며 전체 평균 공제감면율 3.9%를 0.8%p나 초과하고 있다. 이는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수혜대상자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공제감면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수입금액규모별로 구분되어 발표되지 않고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의해 세금 부담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실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기업이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중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이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운용되는 제도라는 점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외의 수입금액 구간의 공제감면율은 전체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고 수입금액 3억원 이하 구간부터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제감면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추이는 수입금액 1천억~5천억원 구간에 속

하는 기업들에게서는 관측되어지지 않는데, 이는 이 구간에 속한 중견기업 이상 일반기업들이 확보된 수익성에 안주하며 투자나 연구개발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구간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 해외사업보다는 국내사업에 치중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표 III-4〉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공제감면율 추이

(단위: %, %p)

수입금액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9 대비 14 증감
전체	4.1	4.1	3.9	4.0	3.9	3.9	-0.3
~3억원	2.5	1.5	1.0	0.6	0.5	0.5	-2.0
3억~5억원	1.1	1.0	1.1	1.1	1.1	1.0	-0.1
5억~10억원	1.4	1.4	1.6	1.6	1.6	1.6	0.2
10억~20억원	2.0	3.2	2.0	2.1	1.9	1.9	-0.1
20억~50억원	2.9	2.7	2.8	3.4	2.8	2.7	-0.1
50억~100억원	3.7	3.9	3.8	3.5	3.5	3.5	-0.1
100억~200억원	4.5	3.8	4.5	3.2	3.1	3.0	-1.5
200억~300억원	4.7	4.2	3.7	3.6	3.9	3.0	-1.7
300억~500억원	4.6	4.3	4.0	3.5	3.0	3.5	-1.1
500억~1천억원	4.2	4.2	3.7	3.7	3.5	3.3	-0.9
1천억~5천억원	2.9	2.9	3.0	2.6	2.8	2.5	-0.3
5천억원~	4.7	4.6	4.3	4.8	4.8	4.7	0.1

주: 반올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8-1-3 법인세 신고 현황 III, 각 연도

2009년 대비 2014년의 공제감면율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평균 공제감면율 축소 폭은 0.3%p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3억원 이하 영세 소기업의 경우 2%p나 공제감면율이 축소되면서 가장 큰 폭의 공제감면율 하락을 시현했고 이후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제감면율 축소 폭이 0.1%p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들부터 공제감면율 축소 폭이 1.5%p 수준으로 확대됐다. 수입금액 200억~300억원 구간의 공제감면율 하락 폭은 1.7%p로 나타나며

수입금액 3억원 이하 구간의 하락 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후 공제감면율 하락 폭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금액 5천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에는 2014년 공제감면율이 2009년 공제감면율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이 구간에 속하는 일반 기업들의 공제감면 혜택은 중소기업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과 2009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입금액 5천억원 초과 구간에 속한 기업들에 주어진 투자 및 연구개발활동 등과 같은 특정 경제활동 수행을 통한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은 축소됐을 가능성이 크다.¹⁹⁾

다. 기업규모별 차등적 조세지원제도

법인 관련 조세지원제도들은 정책대상자의 범위설정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정책대상자가 중소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제도들이다. 두 번째 유형은 정책대상자를 모든 기업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을 우대하는 유형의 제도들이 있다. 이외에 내국법인 내지 거주자를 정책대상자로 설정하거나 영농법인 등 특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있으나 조세지원 수준이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되지 않으므로 기업규모별 세부담 차이가 제도에 의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이러한 제도들에 의해 기업규모별 세부담 차이가 초래된다면 그 원인은 제도의 차이라기보다는 활용도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한하여 해당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 공제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주에 속하는 기업이더라도 해당 기업의 주된

19) 이는 국제청 자료의 추가적 확보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문제이다.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법인으로 간주되어 해당 조세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²⁰⁾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는 중소기업만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의 경우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약 23억원의 조세지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소기업의 지위를 벗어난 기업들이 과거 중소기업 지위에서 발생한 세액공제감면액을 이월하여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중소기업에만 지원되는 조세지원제도로도 2013년 귀속 약 8,772억원의 중소기업 세금부담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소기업 전용 조세지원의 혜택으로 2013년 귀속 중소기업 평균 실효세율이 1.5%p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조세지원제도들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기업을 정책대상자로 삼고 있으나 조세지원의 수준이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축소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 당기분 방식의 경우 25%이나 중견기업과 일반기업 당기분 방식의 경우 각각 8~15%와 2~3%에 불과하다. 각종 투자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의 경우 0~3% 수준이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보다 높은 공제율인 5~7%를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을 모두 포괄하여 정책대상자로 삼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일반기업에는 보다 낮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차등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은 1조 1,249억원의 세금부담 감소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법인들은 총 3조 3천억원 수준의 조세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중의 입장에서 이러한 숫자를 바라보면 조세지원 혜택의 대부분을 일반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크다.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기업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들은 중소기업에 훨씬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조세지

20) 이러한 중소기업 범위에 관련된 업종별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수행했어야 할 투자나 연구개발과 같은 소정의 경제행위가 일반법인에 의해 훨씬 더 많이 수행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은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평균 실효세율 2%p 감소효과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두 번째 유형의 조세지원을 통해 3조 3천억원의 세부담 감소를 통해 일반법인도 평균 실효세율 2%p 감소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의 세부담 감소효과는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소기업에만 지원되거나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조세지원제도들은 법인세에 대응하여 개인사업자들의 투자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지원을 소득세 공제감면의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들의 이러한 제도들의 활용도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총 3조원에 육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세액공제제도의 경우 소득세분 조세지원 규모는 2015년 신고 기준 52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세지출예산서는 보고하고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조세감면제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한 경제행위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수익성을 확보한 중소기업들에 규모, 입지 여건, 그리고 업종에 따라 5~3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해 2015년 신고기준 76만 5천여 명의 개인사업자들이 9천억원을 상회하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15만개의 중소기업이 7천억원에 육박하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1조 6천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의 세액감면이 기업들의 어떠한 경제행위와 연계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폐지는 중소기업의 혁신성향과 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여타 조세지원제도의 보다 적극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향후 동 제도의 개선에 관한 정부의 의지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²¹⁾

2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학수 (2016)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III -5〉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한정적인 법인세 관련 조세지원제도와 2013년 귀속 수혜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근거법령	지원내용	중소기업	일반법인	합계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신규상장 중소기업·중견기업 우대공제율은 2015.12.31 이전에 상장한 기업에 한해 이후 3년간 4% 공제	25,332	2,262	27,59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세액 감면	110,102	-	110,10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소득세·법인세 5%~30% 세액 감면 *수도권·지방기업, 중소기업·소기업 여부에 따라 감면을 차등	696,669	-	696,669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이전소득의 50% 세액감면,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대역소득의 25% 세액감면	175	1	176
신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	0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2015년 신설	-	0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중소기업)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	1	-	1

〈표 III -5〉의 계속

(단위: 백만원)

구분	근거법령	지원내용	중소기업	일반법인	합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의 50% 또는 100%를 세액공제	30,041	62	30,103
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2조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이월과세	1	-	1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 법인세의 50% 세액감면	-	-	0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세액감면(성장·지역권역, 수도권 인접지역, 지방광역시, 지방중규모 도시 등으로 이전시는 5년간 100%, 2년간 50%)	14,797	-	14,797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10년 이상 사업 영위 중소기업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2년 거치 2년 분할이익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100	-	100
합계			877,218	2,325	879,543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6. 9.

〈표 III-6〉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규모별 차등 적용되는 법인세 관련 조세지원제도와 2013년 귀속 수혜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근거법령	지원내용	중소기업	일반법인	합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당기분 R&D 비용의 20%(중소기업은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시 ①. ② 방식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① 당기분: 당해연도 지출액×2~3% (중간기업 8~15%, 중소기업 25%) ② 증가분: 직전연도 지출액 초과분×40% (중소기업 50%)	943,302	1,800,379	2,743,68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1% 세액공제(중간기업 3%, 중소기업 6%)	5,491	193,654	199,145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투자금액의 3%(중간기업은 5%, 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	12,630	64,252	76,882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안전설비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3%(중간기업은 5%, 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	493	9,925	10,418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투자금액의 1% 세액공제 (중간기업 3%, 중소기업 6%)	5,815	204,078	209,893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중간기업 5%, 중소기업 10%)	4,893	55,710	60,603

〈표 III -6〉의 계속

(단위: 백만원)

구분	근거법령	지원내용	중소기업	일반법인	합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금액 3% 세액공제(중견기업 5%, 중소기업 7%)	3,355	15,001	18,35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 기본공제: 투자금액의 0~3% (대기업 제외) - 추가공제: 투자금액의 3~6% (한도: 고용증가인원 1인당 1~2천만원)	148,966	957,733	1,106,699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5% (중견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	2015년 신설		0
청년고용증대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경우 증가 인원 1인당 200만원(중견중소기업 500만원) 세액공제	2015년 신설		0
합계			1,124,945	3,300,732	4,425,677

주: 1.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의 수혜금액은 2013년 귀속분 기준임.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신고 현황은 2016년말 발표될 예정
 2. 조세지출예산서에는 2014년 실적 및 이후 2개년 잠정 및 전망치가 발표되지만 기업규모별로 구분되어 발표되지 않고 있어서 「국세통계연보」를 활용
 자료: 1. 기획재정부,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6.
 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8-3-2 세액공제현황, 8-3-3 세액감면현황, 2015.

3. 시사점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이용하여 법인의 세부담과 비교한 결과는 세부담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비사업자를 제외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2014년 귀속 기준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보다 약 1.3%p 높은 수준이고 소득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0.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혜택은 주어지지 않지만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들을 활용하여 세부담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들에 의해 과세표준이 다소 낮게 설정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평균 실효세율이 법인의 평균 실효세율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입금액규모별로 조금 더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수입금액이 5억~50억원 구간에 속하는 개인사업자들은 10~16%p 정도 높은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금액 5억원 이하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평균 실효세율 부담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법인사업자의 평균 실효세율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사업자에게 주어진 소득공제의 세부담 인하효과보다는 낮은 세율과 공제감면제도에 의한 수입금액 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세부담 감소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의 기업규모별 실효세율 추이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살펴본 공제감면 이전의 표면세율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표면세율은 2014년 귀속 16.2% 수준이나 표면세율이 가장 높은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의 표면세율은 2014년 귀속 21.8%로 나타나며 그 격차는 5.6%p 수준이다. 그러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 모든 공제감면을 반영한 실효세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12.6%,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16%, 중견기업의 경우 17%, 그 외 일반법인의 경우 19.1%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제감면율이 상호출자제

한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일반법인의 순서로 높게 발생한 것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제감면율이 크게 나타난 것은 해외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이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을 중심으로 공제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사전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외국납부세액공제규모가 2014년 귀속 3조원 수준이므로 이 중 90%가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의 공제액으로 간주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의한 실효세율 감면효과는 과세표준의 2.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효세율을 2.8%p 낮추고 공제감면율을 2.8%p 높이는 효과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에 주어지는 공제감면제도들 중에서 중소기업에만 허용되거나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들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들에 의해 최소 3%p의 평균 실효세율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p 수준의 중소기업 실효세율 감면효과가 중소기업에만 허용되는 조세지원제도들에서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경우 특정 요건을 수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긍정적 외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도로 판단되므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업 유형의 선택은 기업가의 선택의 문제이나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수입금액 5억~50억원 구간에 속하는 개인사업자들이 기업의 법인화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관대한 세무조사와 같은 조세행정 차원의 차별적 정책방향도 해당 개인사업자의 법인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주요국과의 중소기업 과세체계 및 우대 정도 비교

중소기업 과세체계에 대한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세부담 정도가 얼마나 관대한가를 살펴보고 표준기업으로 설정된 기업들의 세부담을 주요 국가의 제도하의 세부담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존 연구, OECD(2015), IBFD Tax Research Platform 등을 이용하여 주요국의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및 과세체계에 대해 조사하고 비교한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타 국가들의 경우 여러 정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및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일반적으로 정하지 않고 제도에 따라 그 범위와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고 일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우리나라 소규모기업 수준의 법인들에 대해서 낮은 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주요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경우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거의 모든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이 기업규모에 반비례하는 형태의 우리나라 지원체계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수입금액규모별 표준법을 설정하고 그러한 법인이 다른 국가에서 활동할 때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 수준을 평균 실효세율로 측정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1.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가. 우리나라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²²⁾

우리나라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2) 이 항은 김학수·오종현(2016)의 제Ⅲ장에서 발췌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령」 제2조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동일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모두 포괄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은 육성지원의 대상인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에 근거하여 전 업종을 대상으로 평균매출액 등을 정하고 있어서 업종별 매출액 기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의 업종 분류 중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외된 업종은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과 “U. 국제 및 외국기관”으로 중소기업과 무관한 행정 및 외교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판단된다. 2015년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업종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존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의 기준에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개편됐다.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소기업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업종 및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와 불일치함에 따라 다른 특례조항에서 업종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더라도 서비스업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도 정책대상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의 경우 세분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모든 제조업이 포함되며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았으나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²³⁾

23) 제조업의 경우 「조특법」에서는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조업에 포함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소재 업체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하고, ②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며, ③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매출액 요건을 충족 하더라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다수의 업종이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경기장 운영업(9111)부터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9129)에 이르기까지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전체가 정책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물론 91 해당 산업 중에서 오락장 운영업(9112)과 갬블링 및 베팅업(9124)의 경우 육성 및 지원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이 사회적으로 유해한 외부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오락장 운영업(9112)의 경우 중독성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육성 지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산업의 제품을 최종 소비하는 장소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정부 정책사이의 부조화로 볼 수도 있다.

개별 세법에서 중소기업 구분은 「조특법」상의 중소기업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조특법」의 중소기업 기준보다 넓은 의미의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제35조의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상증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른다. 이러한 사례들이 반드시 서비스 전체 업종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중소기업 구분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 구분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 중 일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와 정확히 매칭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조특법」상 중소기업 해당 업종 명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일치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대분류 산업명칭과 일치하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중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 업종 명칭과 일치하고 있어서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 분류체계를 보다 일관적

이며 체계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5단위 코드를 이용하여 정책대상 또는 배제대상 업종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분류기호 알파벳 문자 사용) 수준의 업종 분류를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대상 업종과 비교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과 “K.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는 「조특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서 전부 제외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은 네트워크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업종이라는 판단으로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고리의 유사대부업체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배제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B. 광업”과 “C. 제조업”, “E. 하수·폐기물처리²⁴⁾,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에 대해서는 「조특법」에서도 동일하게 전부 중소기업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밖에 업종 분류에 대해서는 「조특법」에서 일부 해당 업종에 한하여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각 업종별로 「조특법」상의 중소기업 업종을 검토한다.²⁵⁾ 한국표준산업분류의 “A. 농업, 임업 및 어업”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조특법」상 중소기업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은 작물재배업과 축산업뿐이다.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수준에서 일치하며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이나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임업은 「조특법」 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어업은 중분류 수준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분류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조특법」에서는 하수·폐기물처리에 재활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 이하 각 업종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조특법」의 중소기업 대상 업종을 비교하는 표에서는 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분류기호 3자리 숫자 사용) 수준에서 비교하여 표로 나타냈으며, 세분류나 세세분류로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류번호를 기재하였다.

〈표 IV-1〉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와 「조특법」의 중소기업 대상 업종 비교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대상 업종
A. 농업, 임업 및 어업	일부 업종 포함
B. 광업	모든 업종 포함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제외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모든 업종 포함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일부 업종 포함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제외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일부 업종 포함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자료: 김학수·오종현(2016), p. 36에서 인용

〈표 IV-2〉 농업, 임업 및 어업

A. 농업, 임업 및 어업		「조세특례제한법」
농업	작물 재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제외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제외	
임업		임업
어업	어로 어업	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자료: 김학수·오종현(2016), p. 37에서 인용

한국표준산업분류의 “H. 운수업” 중에서 「조특법」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은 여객운송업만 포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운송 수단에 따라 육상·해상으로 운수업종을 구분하고 있는 데 반해 「조특법」에서는 통틀어 여객운송업으로 구분하고 있어 업종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운수업 외에도 「조특법」상에서는 「조특법」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을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업종에는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업종 구분을 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표 IV-3〉 운수업

H. 운수업		「조세특례제한법」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도운송업	제외	
	육상 여객운송업	여객운송업	
	도로 화물운송업	화물운송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제외		
수상 운송업	해상 운송업	(일부)여객운송업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일부)여객운송업	
항공 운송업	정기 항공 운송업		
	부정기 항공 운송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보관 및 창고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일부)화물터미널 운영업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제외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화물 취급업	화물 취급업
그외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일부)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52991),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52992)		

자료: 김학수·오종현(2016), p. 38에서 인용

한국표준산업분류의 “I. 숙박 및 음식점업”중에서는 음식점업(561)에 대해서만 「조특법」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고 있다.

〈표 IV-4〉 숙박 및 음식점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조세특례제한법」
숙박업	숙박시설 운영업	제외
	기타 숙박업	제외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제외

자료: 김학수·오종현(2016), p. 38에서 인용

한국표준산업분류의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중에서는 우편업을 제외하고 모두 「조특법」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L.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과 무형재산권 임대업에 한하여 「조특법」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다.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구분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조특법」에서는 광고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으로 포함되어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으로 업종을 분류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과 업종 구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조특법」에서는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으로 열거하고 있다. 「조특법」의 중소기업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납세자의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경비, 경호 및 탐정업 전체가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세세분류 중에서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7531)만이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교육서비스업” 중 「조특법」에서 중소기업 대상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업종은 기타 교육기관 중에 일부 업종이 존재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타 교육기관(856) 중에서 사회교육시설(8563), 직원훈련기관(8564), 직업기술분야학원(8565)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 IV-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출판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출판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일부)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 제외)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통신업	우편업	제외
	전기통신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 서비스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정보 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자료: 김학수·오종현(2016), p. 39에서 인용

〈표 IV-6〉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조세특례제한법」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일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동산 제외	운송장비 임대업	제외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일부) 무형재산권 임대업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자료: 김학수·오종현(2016), p. 40에서 인용

〈표 IV-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전문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제외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제외
	광고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제외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일부)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수의업	제외
	전문디자인업	전문디자인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제외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외

자료: 김학수 · 오중현(2016), p. 40에서 인용

〈표 IV-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제외
	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일부)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제외
	경비, 경호 및 탐정업	(일부)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일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자료: 김학수 · 오중현(2016), p. 41에서 인용

〈표 IV-9〉 교육 서비스업

P. 교육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교육 서비스업	초등 교육기관	제외
	중등 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일반 교습 학원	
	기타 교육기관	(일부) 사회교육시설(8563) 직원훈련기관(8564)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분야학원(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59)
교육지원 서비스업	제외	

자료: 김학수 · 오종현(2016), p. 42에서 인용

한국표준산업분류의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조특법」에서 중소기업 대상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업종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있다. 「조특법」의 중소기업 대상 업종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각각 열거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에서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11)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업종 구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표 IV-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보건업	병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자료: 김학수 · 오종현(2016), p. 42에서 인용

한국표준산업분류의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업종 구분과 「조특법」에서 중소기업 대상 업종을 비교해 보면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IV-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서비스업(독서실운영업 제외)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제외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자료: 김학수 · 오종현(2016), p. 43에서 인용

한국표준산업분류의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협회 및 단체를 제외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이나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다.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중소기업 대상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구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표 IV-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협회 및 단체	산업 및 전문가 단체	제외
	노동조합	
	기타 협회 및 단체	
수리업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일부)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제외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자료: 김학수·오종현(2016), p. 43에서 인용

이처럼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차용하면서도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조세지원 정책대상자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업종 간 세부담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새로운 산업이 생성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 관련 업종 규정이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법 조항에 열거된 업종만이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제때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업종만을 조세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나. 주요국의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각국의 세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호주 등이 있으며, 대부분 법인세율 또는 중소기업 조세지원 세법 조문별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법인세법」에 자본금 총액이 1억엔 이하인 법인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호주는 「소득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에서 연간 통합매출액이 200만호주달러 미만인 법인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독일,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각 조세지원별로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매출액 763만유로 미만인 기업이고 개인 주주 소유권이 75% 이상인 경우를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IV-13〉 각국의 세법상 중소기업 규정 유무

국가	세법상 중소기업 규정 유무	세법상 중소기업 규정	
미국	×	-	
영국	×	-	
캐나다	×	-	
일본	○	· 법인세법 제66조	· 자본금 총액이나 출자금이 1억엔 이하인 중소기업인은 경감세율 적용
호주	○	· 소득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Section 328-110	· 연간매출액 200만호주달러 미만
프랑스	○	매출액 763만유로 미만(개인주주 지분 75% 이상)	
독일	×	-	

자료: 1. 일본 재무성(http://www.mot.go.jp/tax_policy/summary/corporation/215.htm, 접속일: 2016. 7. 13)

2. 호주 소득세법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Section 328-110

1) 미국

미국의 경우 「내국세법」에 소기업(small business)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고, 조세지원 혜택에 따라 적용대상 소기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내국세법」상 단체(association),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ies), 보험회사(insurance companies)를 법인(corporation)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며, 소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다.²⁶⁾ 우리나라는 세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조세지원을 나열하고 있지만, 미국은 각각의 조세지원별로 소기업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조세지원별 소기업 규정의 예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되는데, 3년간 평균 총수입(gross receipts)이 75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²⁷⁾ 또한 사업 개시 최초연도의 경우 모든 유형의 법인이 최저한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되지만 둘째 연도에는 최초 과세연도의 총수입이 500만달러 이하인 경우에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미국의 독특한 법인유형인 S법인 또한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으며, 일반 법인에 비해 기업규모가 작아 법인단계의 과세를 하지 않고 주주단계에서 과세만을 선택할 수 있다. 다음의 조건²⁸⁾을 만족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S유형의 법인이 된다.²⁹⁾ S법인은 미국 내에 설립된 법인(내국법인)이어야 하며, 금융·보험회사, DISC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³⁰⁾³¹⁾ S법인의 소득은 급여와 배당형태로 개인에게 지급되고 개인주주 지분율만큼 개인소득세

26) IRC §7701(a)(3)

27) IRC §55(e)

28) IRC §1361(b)

29)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corporations>, 접속일: 2016. 7. 13)

30) 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의 약자로, 제품을 미국에서 제조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감세혜택을 받는 기업을 말함

31)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해야 하며, 주주의 수는 100명 이하이며, 이들 주주의 자격은 개인, 법인, 상속재단(estates), 신탁재단(trust), 합자회사 등으로 제한된다.

로 신고하므로³²⁾, C법인과 같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S법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과세항목은 1) 단기 자본자산의 양도손익 2) 장기 자본자산의 양도손익 3) 자선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4) 외국납부세액 등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³³⁾

2) 영국

세법상 중소기업을 규정하는 별도의 기준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조세지원별로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R&D 조세지원에서 중소기업 판단 시 종업원 수가 500명 이하이고, 연간매출액이 1억파운드 미만 또는 총자산이 8,600만파운드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업종별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³⁴⁾

3) 캐나다

캐나다는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조세지원 및 세율 등에 중소기업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은 캐나다 내국법인으로서 비거주자나 상장법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배되지 않는 비상장법인으로 CCPC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50만캐나다달러를 한도로 소규모사업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 11%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이어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별다른 요건은 없다. 이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나 고용주 부담 사회보험료 경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³⁵⁾

32) IRS §1363(b)

33) IRS §702(a)

34) 영국 정부(<https://www.gov.uk/>, 접속일자 2016. 7. 24)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해당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35) 캐나다 국세청(<http://www.cra-arc.gc.ca/>)을 통해 조사한 결과 해당 구분이 존재하지

4) 일본

「법인세법」 제66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에서 보통 법인 중 각 사업연도 말 자본금 총액이나 출자금이 1억엔 이하인 법인은 경감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조치법」에 의한 조세지원제도는 대부분 「법인세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통 법인(자본금 및 출자금이 5억원 이상인 타법인에 의한 직·간접적으로 지배되는 경우는 제외) 중 각 사업연도 종료 시에 자본금 등이 1억엔 이하인 것이나 자본금 등을 가지지 않은 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공익법인, 협동조합, 인격이 없는 사단 등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³⁶⁾

5) 호주

호주는 소규모사업자(small business)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간 통합 총매출액이 200만호주달러 미만인 경우 소규모 사업자로 정의한다.³⁷⁾ 연간 통합 총매출액에는 관계기업, 계열사의 매출액을 모두 포함하며, 매출액에 부과된 부가가치세(GST)는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일부 조세지원제도의 경우 소규모사업자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도 한다. 그러한 예로, 중소기업에 한해 영업용 자산 양도차익 면제를 하는 조세지원의 경우 순자산이 600만호주달러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³⁸⁾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Small business deduction은 캐나다 국세청(http://www.cra-arc.gc.ca/E/pub/tg/t4012/t4012-06-e.html#P2862_208254, 접속일자 2016. 7. 18)의 설명을 참고함

36) 일본 재무성(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corporation/215.htm, 접속일: 2016. 7. 13)

37) 호주 소득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Section 328-110

38) IBFD, “Corporate Income Tax-Australia,” Section 1.7.2, 2016. 6.

6) 프랑스

프랑스는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조세지원 및 세율 등에 중소기업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기본 법인세율은 33.33%이지만, 중소기업은 과세소득 37,120유로까지는 15%의 경감세율을 부과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763만유로 이하이며, 개인 또는 기타 중소기업에 의해 최소 75% 이상 지배되는 기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7) 독일

세법상 중소기업을 규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조세지원별로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설비투자 조세지원에서 중소기업은 순자산 23만 5천유로 이하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약간의 업종별 차등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농·임업의 경우 설비투자 조세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은 12만 5천유로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또 다른 측면은 순자산 기준 이외에 과세소득 10만유로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의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기업규모별 경감세율 적용 여부 및 요건 국제비교

미국은 8개의 과세소득 구간에 따라 초과누진구조의 세율체계로 법인세를 부과하며, 영국과 독일은 과세소득 및 법인 유형별 차등 없이 20%(영국), 15.83%(독일)의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특징이 있다. 일본, 캐나다 등 여타 국가들의 경우에도 일반 법인들은 단일세율로 법인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낮은 세율로 법인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경감세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IV-14〉 주요국의 법인세율 체계

(단위: %)

	과세소득구간			법인세율	
				기본	경감
미국 ¹⁾	0	-	USD 50,000	15	-
	USD 50,001	-	USD 75,000	25	
	USD 75,001	-	USD 100,000	34	
	USD 100,001	-	USD 335,000	39	
	USD 335,001	-	USD 10,000,000	34	
	USD 10,000,001	-	USD 15,000,000	35	
	USD 15,000,001	-	USD 18,333,333	38	
	USD 18,333,334	-	~	35	
영국	-			20	-
일본	0	-	¥ 8,000,000	23.4	19
	¥ 8,000,001	-	~	23.4(23.2) ²⁾	23.4(23.2)
캐나다 ³⁾	-			15	11
프랑스	0	-	EUR 38,120	33 $\frac{1}{3}$	15
	EUR 38,121	-	~	33 $\frac{1}{3}$	
호주	-			30	28.5
독일	-			15.83 ⁴⁾	-

주: 1) 개인서비스기업(qualified personal service corporation)은 35% 단일세율 적용됨

2) 2015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는 23.9%, 2016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 시작하는 각 사업연도는 23.4%, 이후는 23.2%가 적용됨. 미국의 지방법인세율은 주마다 0~12% 정도이며, 모든 법인은 지방법인세를 부담함

3) 캐나다의 일반적인 기업의 연방법인세율은 38%이며, 연방법인세 감면과 연방세율 공제에 따라 15%의 법인세가 부과되며, 추가로 지방법인세율은 고세율이 적용됨. 반면, 5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CCPC는 11%의 경감세율이 부과되며, 지방법인세율도 저세율로 부과됨

4) 독일의 연방법인세율은 15%이지만, 부가세(solidarity surcharge) 5.5%가 적용되어 총 15.83%가 법인세로 부과됨. 추가로 기업에는 과세소득의 3.5%와 과세소득×3.5% 세액에 자자체별 징수율(뮌헨 490%, 프랑크푸르트 470% 등)을 곱한 금액 즉, 영업세가 추가됨

자료: 1. IBFD, 국가별 "Corporate Income Tax" (<http://online.ibfd.org/>, 접속일: 2016. 7. 14)

2. 일본 국세청(https://www.nta.go.jp/shiraberu/ippanjoho/pamph/hojin/kaisei_gaiyo2016_4/pdf/03.pdf, 접속일: 2016. 7. 14)

3. 캐나다 국세청(<http://www.cra-arc.gc.ca/tx/bsnss/tpcs/crprtns/rt-s-eng.html>, 접속일: 2016. 7. 18)

일본은 자본금 총액이나 출자금이 1억엔 이하인 중소기업의 800만엔 이하의 과세소득에 대해 19%의 경감세율을 적용한다.³⁹⁾ 캐나다는 15%의 단일 세율로 연방정부의 법인소득세를 과세하지만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

39) 일본은平成 28년(2016년) 「법인세법」 세율 개정에 따라 일반 법인 등의 법인세율이 23.9%에서 23.2%(2016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 시작하는 각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23.4%)로 인하되었음

(CCPC)의 50만캐나다달러 이하의 사업소득에 11%의 낮은 세율로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33 $\frac{1}{3}$ (33.33%)의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매출액이 763만유로 이하인 중소기업 소득 38,120유로까지는 기본 법인세율 34.43%보다 낮은 15%로 법인세를 부과한다. 호주는 매출액이 200만호주달러 미만인 소기업의 법인소득에 대해 일반세율보다 1.5% 낮은 28.5%p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법인세율은 15~39% 세율로 8개의 과세소득 구간에 따라 초과누진구조의 형태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과거 3단계 누진구조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15년 20%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했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과세소득 구간이나 기업 규모별 차이 없이 20%의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6년 예산안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 및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행 법인세율을 2020년 17%까지 인하할 예정이다.⁴⁰⁾

3. 기업규모별 차등 조세지원제도 국제비교

가. 설비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

주요국의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 가속상각제도, 자산구입비용 공제, 세액공제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우대하여 세제지원을 차등 적용하는 국가는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로 파악된다. 미국은 설비투자 유형에 따라 가속상각, 비용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비용공제하는 ‘자본공제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들 국가에서 중소기업에 우대하는 설비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없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해 우호적인 조세지원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들 중 일본은 가속상각과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조세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기업에 비해 조세지원이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가

40) 영국 국세청, “Overview of Tax Legislation and Rates 2016,” p. 84.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1307/3/OOTLAR_complete_for_publication.pdf, 접속일: 2016. 7. 14)

넓게 설정되어 있다. 독일은 중소기업에 한해 가속상각과 비용공제를 허용하며, 두 제도의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특정 설비에 대해서만 모든 기업에 가속상각을 허용하며, 중소기업이 산업용 로봇을 구입하거나, Corsica지역에 있는 설비에 투자한 경우에 한해 가속상각 및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호주는 1만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용 자산 구입 시, 구입비용의 일부를 비용으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중소기업에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여 1천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용 자산 구입 시 비용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1) 미국

미국의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 투자세액공제, 특별비용공제, 초년도 특별상각제도를 운영 중이며, 중소기업에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설비투자에 대해 광범위하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설비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IRC §38에서는 일반사업비용공제(business tax credits)로서 투자, 고용 등 기업에 세제 지원하는 36개의 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 중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에서 세액공제 적용대상 설비를 규정하고 있다.⁴¹⁾ 투자세액공제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대상은 건물재건비용, 에너지설비, 석탄사업, 가스화사업, 고급에너지 사업 투자금액으로 주로 에너지, 환경 관련 세제지원이 주를 이룬다.⁴²⁾

41) IRC §38,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business-tax-credits>, 접속일: 2016. 7. 24)

42) 건물재건비용 세액공제(rehabilitation credit)는 1936년 이전 설립된 적격 재건건물 재건비용의 10% 세액공제, 역사적 건물의 경우 재건비용의 20% 세액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에너지 세액공제(energy credit)는 적격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난방설비, 태양에너지 조명설비의 과세기준금액에 30%를 세액공제하고 그 외 에너지설비 자산의 경우 10% 세액공제할 수 있다. 적격 석탄사업 세액공제(qualified coal project tax credit)은 석탄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산 투자금액의 15, 20, 30%만큼 세액공제하고 공제율별 한도액은 5억달러, 8억달러, 12억 5천만달러이다. 가스화사업 세액공제(qualified gasification project credit)는 가스화사업 프로그램 제도하에서 기술사를

설비투자에 대한 또 다른 조세지원제도로 특별비용공제, 초년도 특별 상 각제도를 운영하며, 특별비용공제와 초년도 특별상각 이후 남은 잔존 가액 에 대해서는 일반감가상각을 적용한다. 특별비용공제는 기업의 선택에 의해 50만달러를 한도로 사업용 상각자산 구입비용을 공제하는 제도이다.⁴³⁾ 총 투자금액이 2016년 투자기준금액인 200만달러를 초과하면 Phase-out-rule에 따라 초과금액만큼 공제금액에서 차감하며, 기준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수정된다. 초년도 특별상각은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의 경우 첫해에 자 산구입금액에서 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50%만큼 추가적인 감가상각 을 허용하는 제도이다.⁴⁴⁾ 초년도 특별상각 적용 대상자산은 내용연수가 20 년 미만인 자산 또는 감가상각대상인 컴퓨터소프트웨어, 수도시설 장비, 시 설개량권(improvement property)을 포함한다. 일반감가상각은 정률법 200% 또는 정률법 150% 중 선택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비거주용 부동산과 거주용 임대자산의 내용연수가 각각 39년과 27.5년인 경우에는 정액법을 적 용한다.⁴⁵⁾

고용하고, 적격단체에 의해 수행되며, 사업투자금액이 6억 5천만달러 이하인 가스회사 업의 경우 연간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배출을 최소 75% 이 상 줄이는 설비투자의 경우 30%의 공제율 적용하며, 고급에너지사업 세액공제(qualified advanced energy project credit)의 경우 태양, 풍력, 지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 투자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43) IRC §179

44) IRC §168(k)

45) IRC §168

〈표 IV-15〉 미국의 설비투자 조세지원 제도

조세 지원제도	내용	중소기업 차등지원 여부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자산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 건물재건비용: 10% (역사적 건물의 경우 20%) - 에너지세액공제: 적격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난방설비, 태양에너지 조명설비의 경우 30%(그 외 에너지설비 10%) - 적격 석탄사업 세액공제: IRS가 승인한 적격 석탄사업은 20%, 30%, 그 외 석탄사업 15% - 가스화사업 세액공제: 20%(이산화탄소 배출 75% 이상 감소시키는 사업은 30%) - 고급에너지사업 세액공제: 30% 	X
가속상각	자산구입 첫 해에 내용연수가 20년 미만 자산, 감가상각 대상인 컴퓨터S/W, 수도시설, 시설개량권을 대상으로 특별 비용공제를 차감한 금액의 50%만큼 추가상각 허용	X
비용공제	연 50만달러 한도로 사업용자산 구입비용 공제(단, 투자금액이 200만달러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큼 비용공제한도에서 차감함)	X

자료: 1. 미국 국세청, "Form 3468", "Instruction for Form 3468", 2016. 2. 1.

2. 미국 법령사이트, IRC §179, §168(k), (<http://uscode.house.gov/>, 접속일: 2016. 7. 24)

2) 영국

영국은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 자본적 지출비용의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2001년 「자본공제법(capital allowance act 2001)」을 제정하여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지 않고, 세법상 자본공제비용을 정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⁴⁶⁾ 자본공제는 연간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 초년도공제(First year allowances), 표준공제(writing down allowance)로 구분할 수 있다.⁴⁷⁾ 연간투자공제에 의해 사업용자산 구입비용

46) IBFD, "Corporate Taxation - United Kingdom," Section 1.5.1, 2015. 11.

47)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apital-allowances-and-balancing-charges->

에 대해 1년간 20만파운드를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연간투자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사업용 자산은 리스자산, 건물, 토지, 오락용 자산(요트, 노래방기계 등)이다. 초년도공제는 연간투자공제에 추가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특정 에너지절약설비에 대해 구입비용의 100%만큼 공제가 가능하다. 표준공제는 연간투자공제금액 한도를 초과하거나 연간투자공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자산 구입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며, 대부분 사업용 자산, 기계 및 설비의 공제율은 18%이고 상업용 건물, 내용연수가 25년 이상인 자산, 단열용 건물, CO₂ 배출량이 130g/km 이상인 자동차의 8% 공제율이 적용된다.⁴⁸⁾

〈표 IV-16〉 영국의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조세 지원제도	내용	중소기업 차등지원 여부
비용공제 (capital allowance)	연간투자공제: 연 20만파운드 한도로 사업용자산 비용 공제 초년도공제: 에너지절약 설비 구입 첫해에 100% 비용공제 표준공제: 연간투자공제 한도 초과 등의 이유로 연간투자공제 적용 못 받은 자산에 대해 자산유형별로 구입비용의 8%, 18%만큼 비용공제 허용	X

자료: 영국 국세청, "Guidance-HS252 Capital allowances and balancing charges(2016)," 2016. 4. 6.

3) 캐나다

캐나다는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 가속상각, 세액공제제도를 운영 중이며, 설비투자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조세지원 제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 설비의 경우 자산구입비용의 30%만큼 상각해야 하나,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임시적으로 50%로 가속상각을 허용하고 있다.⁴⁹⁾ 또한 특정 지역에서 사용할 자산의 투자금액에 대해 10%의

hs252-self-assessment-helpsheet/zcvv#who-can-claim-plant-and-machinery-allowances, 접속일: 2016. 7. 24)

48)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work-out-capital-allowances/writing-down-allowances>), 접속일: 2016. 7. 24)

49) 캐나다의 감가상각은 Capital Cost Allowance로, 자산을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

세액공제를 허용하며, 세액공제금액은 향후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⁵⁰⁾ 애틀랜틱 캐나다⁵¹⁾에서 제조, 농·임·어업목적으로 사용할 건물, 기계, 설비 및 각종 에너지 설비를 구입한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표 IV-17〉 캐나다의 설비투자 조세지원 제도

조세 지원제도	내용	중소기업 차등지원 여부
가속상각	기존의 기계·설비 구입비용의 30%로 감가상각하던 것을 향후 10년간 임시적으로 50%로 감가상각하도록 허용	X
세액공제	캐나다 특정 지역에서 사용하는 사업용자산 구입비용의 10% 세액공제(단, 2017년부터 폐지될 예정임)	X

자료: 1. IBFD, "Corporate Taxation-Canada", section 1.9.1., 2016. 4.

2. 캐나다 국세청, "Investment Tax Credit-Corporations-Schedule 31", 2016. 3. 2

4) 일본

일본은 청색신고 법인의 생산설비 및 에너지 절감장비 투자에 대해 추가상각 또는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산설비투자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생산설비에 대해 생산설비가액의 30% 추가상각 또는 3% 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하다.⁵²⁾ 2013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새로 취득한 생산설비의 취득가액이 당해 연도 총감가상각 관련 비용 또는 직전 사업연도 생산설비 취득가액 합계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에너지 사용량 또는 탄소배출량을 절감하는 장비를 2011년 3월 30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새로 구입한 경우, 장비취득

구분별로 다른 상각률을 적용함, 출처: IBFD, "Corporate Taxation-Canada," section 1.9.1.

50) 캐나다 국세청, "Investment Tax Credit-Corporations-Schedule 31," (<http://www.cra-arc.gc.ca/itc/>, 접속일: 2016. 3. 2)

51) 캐나다의 뉴파운드랜드, 라브레도, 프린드에드워드 섬, 노바스코티아, 뉴 브린즈윅 주에 속한 지방을 말함

52) 일본 국세청(<https://www.nta.go.jp/taxanswer/hojin/5455.htm>, 접속일: 2016. 7. 24)

가액의 30% 추가상각 또는 7% 세액공제 중 선택가능하다.⁵³⁾ 이러한 투자세액공제제도 모두 납부할 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허용된다.

일본은 중소기업이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고 지정된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추가상각 또는 세액공제를 허용하며, 이때의 중소기업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⁵⁴⁾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제도와 동일하게 가속상각과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일반기업에 비해 설비자산 범위가 넓고, 생산설비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일정가액 이상인 기계장치, 측정·검사도구, 소프트웨어, 차량, 선박 등이다.⁵⁵⁾ 지정된 사업은 제조, 건설, 농·임·어업, 광업, 운송업, 창고업, 음식업 등으로 풍속영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 물품임대업, 영화산업을 제외한 사업이다. 가속상각을 선택하는 경우 자본금 1억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며, 취득비용의 30%(선박의 경우 75%)만큼 추가로 상각 가능하다.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자본금 3천만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며, 납부세액의 20%를 한도로 취득비용의 7%만큼 세액공제할 수 있다. 이때의 중소기업 기준은 일본 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본금 1억엔 미만 기업들이 아니라 자본금 3천만엔 미만인 경우로 규정된다. 이 제도는 2017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53) IBFD, "Corporate Taxation - Japan," Section 1.9.3, 2016.01.

54) 일본 국세청(<https://www.nta.go.jp/taxanswer/hojin/5433.htm>, 접속일: 2016. 7. 24)

55) 기계장치: 1대당 취득가액 160만엔 이상, 측정·검사도구: 1개당 120만엔 이상, 소프트웨어: 1개당 70만엔 이상, 차량: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의 가액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내항해운업용 선박의 경우 가액기준 없이 허용된다.

〈표 IV-18〉 일본의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조세 지원제도		모든 기업 적용	중소기업 ²⁾ 차등 적용
택 1	추가상각	생산설비 ¹⁾ , 에너지절감 생산설비 취득가액의 30% 추가상각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용 자산(기계 및 설비, 소프트웨어, 차량, 선박, 시험도구 포함)을 구입한 경우 취득가액의 30% 추가상각
	세액공제	생산설비 ¹⁾ 는 취득가액의 3%, 에너지절감 생산설비의 경우 7% 세액공제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용 자산(기계 및 설비, 소프트웨어, 차량, 선박, 시험도구 포함)을 구입한 경우 취득가액의 7% 세액공제

주: 1) 단, 생산설비의 경우 당해 연도 총감가상각비용 또는 전년도 생산설비 취득가액 합계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 조세혜택 적용

2) 중소기업 기준은 추가상각과 세액공제에 달리 적용되며, 추가상각은 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본금 1억엔 미만으로 판단하는 반면, 세액공제는 자본금 3천만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봄

자료: 일본 국세청(<https://www.nta.go.jp/taxanswer/hojin/5455.htm>, 접속일: 2016. 7. 24)

5) 호주

호주는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 자산구입비용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중소기업에 우대하여 조세지원을 적용하고 있다. 비중소기업의 경우 1만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유형자산 구입 시 구입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산구입비용 기준을 1천호주달러로 한다. 중소기업은 연간 통합 매출액이 200만호주달러 미만인 기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규정과 동일하다.

6) 프랑스

프랑스는 특정 자산을 규정하고 해당 자산에 대해서만 가속상각을 허용하고 있다.⁵⁶⁾ 가속상각이 허용되는 자산은 내용연수가 최소 3년 이상인 제조 및 운송에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 공기·수질오염 방지시설, 열에너지 생산 설비, 의료장비, 과학·기술연구 장비, 창고설치비, 호텔빌딩 및 장비 등이다.⁵⁷⁾ 가속상각률은 내용연수에 따라 상이하며, 내용연수가 3~4년인 경우

56) IBFD, "Corporate Taxation-France," Section 1.5.1.5.2, 2016. 2.

57) 프랑스 세법 article 39 A and Annex II, article 22 of the CGI

각 자산별 기본 상각률의 1.25배, 5~6년인 경우 1.75배, 6년 이상인 경우 2.25배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투자촉진제도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그러나 프랑스는 중소기업이 산업용 로봇을 구입한 경우 가속상각제도로 지원하고 있고, 특정 지역인 Corsica에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⁵⁸⁾ 가속상각 대상인 로봇에 한해 내용연수를 2년으로 축소하여 가속상각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보기보다는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봇 수요 확대 정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처럼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인 가속상각과 세액공제의 중소기업 판단기준은 서로 다르다. 가속상각의 경우 EU의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정책대상자를 설정하고 있다. 반면 투자세액공제는 연간 매출액, 종업원 수, 자본금, 주식보유비율로 판단한다. 중소기업에만 허용되는 가속상각제도와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중소기업 요건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아래의 표에 잘 나타나 있다.

〈표 IV-19〉 프랑스의 설비투자 조세지원 제도

조세지원	모든 기업 적용	중소기업 적용
가속상각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특정설비의 경우 기본상각률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가속상각 허용	· 적용요건: EU law의 중소기업 정의 충족(종업원 수 250명 미만, 연간매출액 5천만유로 미만, 연간 순자산액 4,300만유로 미만)한 기업이 로봇을 구입한 경우 · 적용내용: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2월 기간 동안 구입한 로봇의 경우 내용연수 2년으로 하여 가속상각 허용
세액공제	-	· 적용요건: 중소기업이 Corsica지역에서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은 다음 조건 모두 충족 시 - 총매출액이 4천만유로 이하 - 종업원 수 250명 미만 - 자본금 전체가 납입자본금인 경우 - 기업주식의 75% 이상이 개인 또는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공제금액: 취득금액의 20%(2015~2016년에 발생한 투자는 10%)를 세액공제 함

자료: IBFD, "Corporate Taxation-France," Section 1.5.1.5.2, Section 1.9.2.1, 2016. 2.

58) IBFD, "Corporate Taxation-France," Section 1.9.2.1, 2016. 2.

7) 독일⁵⁹⁾

독일은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 가속상각, 비용공제를 운영 중이다. 적용대상 기업을 순자산 또는 과세소득이 일정규모 이하인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적용한다고 볼 수 있다. 가속상각의 경우 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5년간 20%로 가속상각을 허용하며, 비용공제의 경우 사업용 자산 구입비용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 판단기준은 두 개의 조세지원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net assets)이 23만 5천유로 이하 또는 과세소득이 10만유로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한 기업의 경우 가속상각과 비용공제 모두 적용 가능하다.⁶⁰⁾

〈표 IV-20〉 독일의 설비투자 조세지원 제도

조세 지원	모든 기업 적용	중소기업 차등 적용
가속상각	없음	취득일로부터 1년간 사업용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기존 상각액 외에 향후 5년간 20%만큼 추가적 상각 허용
세액공제	없음	사업용자산 구입금액을 사업용자산의 40% 한도 내에서 비용공제 가능

자료: IBFD, "Corporate Taxation-Germany," Section 1.9.1, 1.9.2, 2016. 4.

8) 종합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주요국 사례를 살펴본 결과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 동일한 제도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며 차등적 지원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 프랑스, 호주,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기업규모별로 조세지원의 혜택을 달리 규정하거나 일반 대기업에는 조세지원을 하지 않고 매우 제한적으로 중소기업의

59) IBFD, "Corporate Taxation-Germany," Section 1.9.1, 1.9.2, 2016. 4.

6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 2009. 10, pp. 49~50.

적격 설비투자에 대해서만 조세지원의 혜택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매출액 또는 근로자 수 등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업종에 따라 달리 매출액 등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관련 매출액 규정은 중소기업의 주된 업종에 따라 400억~1,500억원을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매출액 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프랑스나 호주의 경우 각각 5천만유로(원화 기준 620억원)와 200만호주달러(원화기준 18억원)로 설정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의 중소기업의 요건을 순자산 23만 5천유로(원화 기준 3억원) 또는 과세소득 10만유로(원화 기준 1억 2천만원)로 설정하고 있다.

조세지원방식의 경우에도 대부분 가속상각제도와 세액공제방식을 함께 설정하거나 자산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한 공통된 양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액공제방식으로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차등적인 공제율을 설정하고 있는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와 함께 중소기업만을 위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의 가속상각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은 중소기업 규모가 주요국보다 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설정 시 업종을 차별하고 있으며 유사한 종류의 조세지원제도를 중복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

조사대상 국가 대부분이 R&D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일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더 큰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기술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의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2016)에 따르면, 2014년 독일 정부는 GDP의 0.84% 수준의 연구개발 재원을 예산사업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을 뿐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비교대상 국가로 선정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경우

미국 0.76%, 영국 0.49%, 프랑스 0.79%, 캐나다 0.56%, 일본 0.57%, 호주 0.78%, OECD 평균 0.66%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GDP의 0.99%에 달하는 연구개발 재원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GDP의 약 0.2% 수준에 달하는 조세지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R&D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소득공제방식과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과 캐나다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환급형 세액공제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의 국가들은 세액공제방식으로 연구개발 활동의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액공제방식만을 운영하는 나머지 국가들 중 호주의 경우에는 환급형제도를 중소기업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각 국가들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본다.

1) 미국

미국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R&D 소득공제와 R&D 세액공제가 있다. R&D 소득공제는 R&D 비용을 당기 즉시 비용공제하거나 특별한 경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상각할 수 있다.⁶¹⁾ R&D 비용은 제품 개발 또는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역 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reasonable cost)을 의미한다. R&D 세액공제는 내국 세법에 규정된 적격 연구개발비(qualified research expenses)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당해 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와 합산하여 직전 1년 소급적용하거나, 20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다.

R&D 소득공제의 비용대상은 제품(product) 개발 또는 개선에 대한 비용을 의미하며, 제품의 구체적 항목은 다음과 같다.⁶²⁾ 견본품, 발명품, 특허, 기법, 공정과정(process)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을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혹

61) IRC §174

62)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Current-year-Deduction-of-Research-Development-Expenditures>, 접속일: 2016. 7. 24)

은 판매 등의 목적으로 보유한 제품을 의미하며, 광고 및 홍보활동, 경영지원관리, 효율성 조사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R&D 세액공제는 적격 연구개발비, 기초연구비(basic research), 에너지연구컨소시엄의 비용을 합하여 계산된다.⁶³⁾ R&D 세액공제의 금액은 1) 기준금액(base amount)을 초과하는 당해 과세연도 적격 연구개발비(qualified research expenses) 20%, 2) 기초연구(basic research) 지출금액의 20%⁶⁴⁾, 3) 에너지 연구를 위한 에너지연구컨소시엄에 당해 과세연도에 납세자가 사업 수행상 발생하거나 지출한 금액의 20%⁶⁵⁾의 합계로 계산된다.

적격 연구개발비(qualified research expenses)는 납세자가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 수행을 위해 발생하거나 지불한 1) 자체연구비(in-house research expenses), 2) 위탁계약연구비(contract research expenses)로 정의된다.⁶⁶⁾ 자체연구비는 적격서비스(qualified services)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인건비, 소모품비용, 컴퓨터 사용권(right to use computers) 지출 비용이다. 또한 위탁계약연구비로는 적격 연구를 종업원 이외 외부인에게 위탁한 지출비의 65%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1) 적격 소기업, 대학교, 연방연구원(federal laboratories)이 수행하는 에너지연구를 위한 비용은 전액, 2) 적격 연구컨소시엄에 사용한 비용은 75%, 3)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적격 비영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비의 65%를 위탁계약연구비로 인정한다.⁶⁷⁾ 적격 소기업(eligible small business)은 납세자가 기업의 주식발행총수의 50% 미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2과세연도 평균 종업원의 수가 500명 이하인 기업을 의미한다.⁶⁸⁾

세액공제금액 산출방식은 일반세액공제법(regular credit)과 대체간이세액

63) IRC §41

64) IRC §41(e)(1)

65) IRC §41(a)(3). 에너지연구를 위하여 적격 비영리기관, 적격 중소기업 등과 같은 적격 단체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에너지연구개발세액공제(Energy Research Credit)를 적용함

66) IRC §41(b)

67) IRC §41(b)(3)

68) IRC §41(b)(3)(D)(iii)

공제법(alternative simplified credit)이 있다. 일반 세액공제법에 의한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ext{당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 = \text{Min}[\text{당기 적격 연구개발비-기준금액}, \text{당기 적격 연구개발비의 } 50\%] \times 20\%$$

여기서 기준금액은 세액공제 직전 4과세연도 평균 매출액에 고정기준비율을 곱하여 기준금액을 계산하며, 1984년 이전 설립된 경우 고정기준비율(fixed-base percentage)은 16%를 초과하지 못하고 기준금액의 최소금액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적격연구비의 50%이다. 1983년 이후 설립되거나 연구와 매출 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인 기업은 적격연구비와 매출액이 발생한 첫 5과세연도에는 3%의 기준비율을 적용한다. 대체간이세액공제법의 세액공제 금액은 과거 3년 동안의 적격연구개발비 평균을 초과하는 적격연구비의 14%로 계산한다.

〈표 IV-21〉 미국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

공제 방식	대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소득 공제	· 제품 개발 또는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역 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reasonable cost)으로 인정하고 손금으로 처리	· 대기업과 동일
세액 공제	· 일반 세액공제법: $\text{Min}[\text{증분액}, \text{당기 적격R\&D비용} \times 50\%] \times 20\%$ · 대체간이세액공제법: 증분액의 14% · 1년 소급공제 및 20년간 이월공제	·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동일함 · 적격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에너지연구에 한해서 지출한 금액 전액을 위탁계약 연구비용으로 인정(일반기업은 65%만 인정) · 중소기업: 납세자가 기업의 주식발행총수의 50% 미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2과세연도 평균 직원 수가 500명 이하인 기업만 적용

자료: 미국 국세청(<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
Current-year-Deduction-of-Research-Development-Expenditures, 접속일: 2016. 7. 24); 미국 법령 사이트 IRC §41 (<http://uscode.house.gov/>, 접속일: 2016. 7. 24)

2) 영국

영국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R&D 수익적 지출(revenue expenditures)에 대한 추가소득공제와 R&D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에 대한 즉시상각 공제제도가 있다. R&D 자본적 지출 즉시상각 공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편 영국의 R&D 추가소득공제는 중소기업(Small or Medium-sized Enterprise(SME) Scheme)과 대기업(Large Company Scheme)으로 나뉘어져 있다.⁶⁹⁾

R&D 추가소득공제는 법인세의 수입금액에서 대기업은 R&D 지출액의 130%, 중소기업은 230%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즉, R&D 지출액에 추가적으로 지출금액의 30%와 130% 상당액을 과세대상소득에서 추가공제하는 제도로서 기업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지원제도이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5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연간매출액(annual turnover)이 1억파운드 미만 또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상 총자산이 8,600만파운드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⁷⁰⁾⁷¹⁾ 중소기업은 과세소득이 없으면(손실), 소득공제를 현금으로 환급가능하다. 모든 종업원의 원천징수 및 국가보험부담금 납부금액을 한도로 손실(surrenderable loss)의 1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과학연구공제(scientific research allowance)인 R&D 즉시상각공제(research and development allowance)는 지출액의 100%를 비용으로 즉시 상각할 수 있다. 석유와 가스 탐사활동과 관련된 과학연구(scientific research) 비용이 적격비용으로 인정되며, R&D 자본적 지출과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하여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

69) 영국 정부

(<https://www.gov.uk/guidance/corporation-tax-research-and-development-rd-relief>, 접속일: 2016. 7. 24)

70) 영국 정부

(<https://www.gov.uk/guidance/corporation-tax-research-and-development-tax-relief-for-small-and-medium-sized-enterprises>, 접속일: 2016. 7. 24)

71) R&D 조세지원제도의 중소기업 규정은 국세청이 법인세 등 다른 조세분야나 정부기관에서 사용되는 개념과는 다르다고 규정하고 있음

용할 수 있다.⁷²⁾

〈표 IV-22〉 영국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

공제 방식	대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소득 공제 (세액공제)	· R&D 지출액의 130%	· R&D 지출액의 230% · 중소기업은 5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연간매출액(annual turnover)이 1억파운드 미만 또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상 총자산이 8,600만 파운드 미만인 기업 ·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현금으로 환급가능(cash repayment)
즉시 상각 공제	· R&D 지출액의 100%를 비용인정(석유와 가스 탐사 활동)	· 대기업과 동일

- 자료: 1. 영국 정부(<https://www.gov.uk/guidance/corporation-tax-research-and-development-rd-relief>, 접속일: 2016. 7. 24)
 2. 영국 정부(<https://www.gov.uk/guidance/corporation-tax-research-and-development-tax-relief-for-small-and-medium-sized-enterprises>, 접속일: 2016. 7. 24)
 3. 영국 정부(<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oil-taxation-manual/ot26001>, 접속일: 2016. 7. 24)

3) 캐나다

캐나다의 R&D관련 조세지원제도는 SR&ED프로그램(Scientific Research & Experimental Development program)에 따라 당해 연구비용의 소득공제(SR&ED Expenditures Claim)와 세액공제(SR&ED Investment tax credit)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⁷³⁾ SR&ED 관련하여 발생한 경상비용과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비용공제할 수 있으며 적격 SR&ED 지출은 인건비, 원재료, 기계 임대비용 등이 해당된다.⁷⁴⁾ 법인, 개인, 파트너십 등이 적격 SR&ED 지출

72) 영국 정부(<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oil-taxation-manual/ot26001>, 접속일: 2016. 7. 24)

73) 캐나다 국세청(<http://www.cra-arc.gc.ca/txcrdt/sred-rsde/clmng/clmngsrd-eng.html>, 접속일: 2016. 7. 19)

74) ITA §37

에 사용한 일정 금액을 SR&ED 투자세액공제(SR&ED Investment tax credit)를 허용한다.⁷⁵⁾

일반 기업, 개인 및 신탁은 적격 SR&RD지출에 대해 15%의 비환급형 세액공제를 허용하지만,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인(Can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은 SR&ED 300만캐나다달러를 한도로 적격 비용의 35%의 환급형 세액공제를 해주며, 300만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비환급형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적격기업은 CCPC 또는 관계기업과 합산된 전년도 소득이 과세대상 자본소득금액기준⁷⁶⁾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당해 과세연도 미공제 SR&ED 세액공제액은 20년 이월가능하거나 직전 3년간 소급공제할 수 있다.

〈표 IV-23〉 캐나다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

공제 방식	대기업	중소기업(CCPC)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소득 공제	· 적격 SR&ED 지출비	· 적격 SR&ED 지출비
세액 공제	· 적격 SR&RD지출에 대해 15%의 비환급형 세액공제	· 적격 SR&RD지출의 35% 환급형 세액공제

자료: 캐나다 국세청(<http://www.cra-arc.gc.ca/bxcrdt/sred-rsde/clmng/clmngsr-d-eng.html>, 접속일: 2016. 7. 19)

4) 일본

일본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로는 1) 시험연구비에 대한 총액세액공제(試験研究費の総額に係る税額控除制度)와 증가분세액공제(試験研究費の額が増加した場合等の税額控除制度) 2) 특별시험연구에 관한 세액공제(特別

75) ITA §248(1)

76) $500,000 \times (\$40,000,000 - A) / \$40,000,000$ 으로 A는 자본소득금액이 1천만캐나다달러 미만이면 0, 이상이면 $\min(4\text{천만캐나다달러}, 1\text{천만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자본소득금액})$

試験研究に係る税額控除制度) 3) 중소기업 기술기반강화세제(中小企業技術基盤強化税制)가 있다.⁷⁷⁾ 시험연구비의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청색신고법인인 사업연도에 손금금액에 산입되는 시험연구비가 있는 경우, 그 시험연구비 금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⁷⁸⁾ 시험연구비는 제품의 제조 또는 기술의 개량, 고안 또는 발명에 관한 시험 연구에 필요한 원자재, 인건비 및 경비 외에 다른 사람에게 시험 연구를 위탁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등의 금액을 의미하지만, 시험 연구에 충당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시험연구비이다. 중소기업 기반기술강화세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으며, 해산(합병에 의한 해산 제외)일을 포함하는 사업연도와 청산 중의 각 사업연도를 제외한 사업연도에 적용 가능하다.

시험연구비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된 시험연구비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허용된다. 시험연구비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10%이며, 시험연구비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은 [(시험연구비 비율 × 0.2)+8%]에 따라 계산된다.⁷⁹⁾ 세액공제한도액은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25%이다.

시험연구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2008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시작하는 각 사업연도의 시험연구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시험연구비 총액의 세액공제한도 이외의 추가적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해당 시험연구비가 비교시험연구비 또는 기준시험연구비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비교시험연구비는 적용연도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시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시험연구비의 평균액이다. 기준시험연구비는 적용연도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개시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시험연구비 중 최고액을 의미한다. 이때 세액공제한도액은 (시험연구비 - 비교시

77) 일본 국세청(<http://www.nta.go.jp/taxanswer/hojin/5441.htm>, 접속일: 2016. 7. 23)

78) 일본 국세청(<http://www.nta.go.jp/taxanswer/hojin/5442.htm>, 접속일: 2016. 7. 23)

79) 시험연구비 비율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시험연구비 ÷ 평균매출액'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평균매출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평균매출금액을 말한다.

험연구비 또는 기준시험연구비)의 5%로 제한된다. 해당 시험연구비가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10%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한도액은 평균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시험연구비에 초과세액공제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다.⁸⁰⁾ 시험연구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액은 그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10%이다.

특별시험연구에 관한 세액공제는 청색신고법인이 그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되는 시험연구비 금액 중 특별시험연구비 금액이 있는 경우 그 특별시험연구비 금액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⁸¹⁾ 이 제도는 시험연구비 총액에 따른 세액공제제도, 중소기업 기반기술강화세제 등과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특별시험연구비는 국가의 시험연구기관, 대학과 공동 또는 위탁, 중소기업과 연계된 연구 등을 의미한다. 세액공제금액은 연구비의 30%(대학 또는 시험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위탁 연구) 또는 20%(이외의 기타)로 법인세액의 5%를 한도로 한다.

중소기업 기술기반강화세제(中小企業技術基盤強化税制)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용하고, 그 이외에 특정 업종에 한정하는 등의 제약은 없다.⁸²⁾ 다만, 청색신고서를 제출⁸³⁾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농업협동조합만 적용한다.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금액에 산입되는 시험연구비의 12%이며 법인세액의 25%를 한도로 한다. 확정신고서 등에 특별공제액의 기재 및 계산에 대한 명세서의 첨부 없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기술기반강화세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자본 및 출자금액이 1억엔 이하의 법인을 말하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및 둘 이상의 대규모 법인이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금액의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자회사는 제외된다.⁸⁴⁾

80) 초과세액공제비율 = (시험연구비 비율 - 10%) × 0.2, 시험연구비 비율 = 당해 연도 손금에 산입한 시험연구비 ÷ 평균매출액, 세액공제한도액 = (시험연구비 금액 - 평균매출액 × 10%) × 초과세액공제비율. 평균매출액은 각주 72)에서와 동일하다.

81) 일본 국세청(<http://www.nta.go.jp/taxanswer/hojin/5443.htm>, 접속일: 2016. 7. 23)

82) 일본 국세청(<http://www.nta.go.jp/taxanswer/hojin/5444.htm>, 접속일: 2016. 7. 23)

83) 우리나라의 성실신고제도와 유사함

〈표 IV-24〉 일본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

공제 방식	대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세액 공제	① 시험연구비 · 총액기준: 시험연구비 비율 10% 이상은 10%, 시험연구비 비율 10% 미만은 [(시험연구비 비율 × 0.2) + 8%] · 증가기준: 1)(시험연구비-비교시험연구비 또는 기준시험연구비) × 5%, 2)(시험연구비 금액 - 평균매출액 × 10%) × 초과세액공제비율 ② 특별시험연구비 · 연구비의 30%(대학 또는 시험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위탁 연구) 또는 20%(이외의 기타)	· 중소기업 기술기반강화: 시험연구비의 12%(다만, 시험연구비와 특별시험연구비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 중소기업: 자본 및 출자금액이 1억엔 이하의 법인, 자본 또는 출자를 가지지 않는 법인은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00명 이하의 법인

자료: 1. 일본 국세청(<http://www.nta.go.jp/taxanswer/hojin/5442.htm>, 접속일: 2016. 7. 23)
 2. 일본 국세청(<http://www.nta.go.jp/taxanswer/hojin/5443.htm>, 접속일: 2016. 7. 23)
 3. 일본 국세청(<http://www.nta.go.jp/taxanswer/hojin/5444.htm>, 접속일: 2016. 7. 23)

5) 호주

호주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활동은 적격 핵심 연구개발(Core R&D activities)과 적격 연구개발 지원(Supporting R&D activities)으로 구분된다.⁸⁵⁾ 적격 핵심 연구개발은 다음과 같이 신기술 취득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험적으로 연구하는 활동이다.⁸⁶⁾ 과학에 근거한 원리나 실험·가설 및 평가·논리적 결론에 이르는 것에 대한 현재의 지식, 정보, 경험에 기반하여 알거나 판별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체계적인 작업을 진행한 경우로서 새로운 지식(knowledge)을 생성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materials), 상품, 장치, 처리 또는 서비스의 새로운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한 연구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시장조사 및 탐사, 관리 및 효율성 연구, 사회과학 연구, 예술 및 인문학, 특허

84) 조령27의4

85) 호주 기업청

(<https://www.business.gov.au/assistance/research-and-development-tax-incentive>, 접속일: 2016. 7. 24)

86) ITAA 1997 s. 355-25(1)

및 라이선스 활동(patenting and licensing activities), 내부 관리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은 핵심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적격 연구개발 지원은 핵심활동과 직접 연관된 활동을 말하지만, 다음의 경우에 대해 지배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착수한다면 이 연구개발활동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지원으로 인정된다. 연구개발 핵심활동에서 제외된 활동과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관련된 활동이다. 이에 대해서는 Frascati Manual에 따라 기본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 등으로 정의되며, 일부의 경우 Oslo Manual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타 이노베이션 활동에 포함되기도 한다.

호주의 R&D 세액공제는 환급가능 세액공제와 비환급 세액공제로 구분되는데, 환급형 세액공제는 연간 매출액 200만호주달러 미만인 법인에 대해서 R&D 지출비용의 4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공제 한도는 1억호주달러이다.⁸⁷⁾ 비환급형 세액공제는 매출액 200만호주달러 이상인 법인에 적용하며, R&D 비용의 4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표 IV-25〉 호주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

공제 방식	대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세액 공제	· R&D 지출비의 40%(환급불가능)	· R&D 지출비의 45%(환급가능) · 연간 매출액 200만호주달러 미만 법인 적용

자료: 호주 기업청(<https://www.business.gov.au/assistance/research-and-development-tax-incentive>, 접속일: 2016. 7. 21)

6) 프랑스

프랑스의 연구개발비 관련 세제 혜택에는 연구개발 세액공제(Crédit d'impôt Recherche)와 중소기업 세액공제(Crédit d'impôt Innovation)가 있다. 프랑스는 연구개발비 세제 혜택 자격요건에 기업 형태를 제한하지는 않

87)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Business/Research-and-development-tax-incentive/In-detail/Guides-ATO/Research-and-development-tax-incentive---who-can-claim/>, 접속일: 2016. 7. 19)

지만 OECD(Frascati Manual)에 따른 정의를 만족해야 연구활동으로 인정된다.⁸⁸⁾ 현재와 비교해 상당한 테크놀로지(technological), 기술적, 과학적 발전을 제시해야 하고, 과학 및 기술적 불확실성과 기대한 결과물에 대한 불확실성이 연관되어야 한다.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적격 연구비는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 등의 감가상각비 특히 관련 비용, 특히 보험료, 규격화 비용, 기술동향 모니터링 비용,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대한 위탁연구 등을 포함한다.⁸⁹⁾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 또는 기술자 인건비의 50%를 인정하며, 보험료와 기술동향 모니터링 비용은 연간 6만유로를 한도로 하고, 위탁연구비용 상한은 연간 200만~1,200만유로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기타 적격 연구개발비 총액의 3배 수준이다.⁹⁰⁾⁹¹⁾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반적인 연구개발 세액공제에서 적용되는 연구활동과 거의 유사하다. 중소기업이 연구하는 프로토타입(prototypes) 설계 및 파일럿 설비(pilot assets)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세액공제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품 개발에 대한 지출이어야 하며 2)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제품이고 3) 기술·예코·인간공학·가능성 등에 대해 뛰어난 성능을 갖춘 기존 제품에 관한 활동이어야 한다.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기업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⁹²⁾ 기본적으로 세액공제액은 ‘적격 연구개발비 × 공제율(연간 1억유로 이하 30%, 1억유로 초과분은 5% 적용)’으로 산출되는데, 종업원이 250명 이하이고, 연간 매출액이 5천만유로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프로토타입(prototypes) 설계 및 파일럿 설비(pilot assets)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연간 40만유로까지 2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88) Deloitte(2015), *Global Survey of R&D Incentives*, p. 15.

89) FTC(French Tax Code) §244

90) 위탁처와 지배·종속 관계가 있는 경우(연간 200만유로), 위탁처와 지배·종속 관계가 없는 경우(연간 1,000만유로), 공공연구기관 등에 대한 위탁비용(연간 1,200만유로)

91)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5), 『주요국 연구개발 세제지원 현황』, p. 14.

92) Deloitte(2015), *Global Survey of R&D Incentives*, p. 15.

세액공제액은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고, 3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급된다.

〈표 IV-26〉 프랑스 R&D 관련 조세지원 대상의 인정비용

연구개발 세액공제	중소기업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 연구개발활동에 관련된 연구개발 비용 · 연구자 인건비(세전 급여총액, 법정사회보험료 포함) 및 그 50%가 경상경비로 가산 · 젊은 박사 고용 시부터 24개월간 급여의 400% 계상, 24개월 후 통상적인 연구자 인건비로 처리 · 연구개발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와 기기의 감가상각비의 75%를 경상경비로 가산 · 연구개발을 위해 취득한 특허권의 감가상각비 · 특허 및 식물신품종 보호권 취득·유지·보호에 필요한 비용 · 특허보험 계약에 관련된 보험료·분담금(연간 6만유로 상한) · 규격화 비용의 50% · 기술 동향 모니터링 비용(연간 6만유로 상한) · 공적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 위탁연구에 관한 지출은 금액의 2배로 계상, 위탁비용 상한선은 연간 1,200만유로 · 민간연구기관 등에 위탁연구에 관한 지출은 기타 적격 연구개발비 총액의 3배를 상한, 상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의 설계 및 신제품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이노베이션 비용 · 이노베이션 관련 사무에 필요한 부동산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75%가 경상경비로 가산 · 대상 사무에 배속된 인원의 인건비 중 50%가 경상비용으로 가산 · 공적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대한 위탁비 · 인정 민간연구기관 등에 대한 위탁비 · 특허, 디자인 신청비 · 특허, 디자인 보호에 관한 비용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5), 『주요국 연구개발 세제지원 현황』, p. 47.

〈표 IV-27〉 프랑스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

공제 방식	대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세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적격 연구개발비 총액의 30%(환급가능) · 1억유로 초과분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5%는 세액공제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차이 없음 · 적격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프로토타입 등에 지출한 R&D 적격 연구개발비 총액의 20%(환급가능)를 추가인정 · 적격 중소기업은 연간 매출액 5천만유로 이하 및 종업원 250명 이하인 기업

자료: IBFD, France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Surveys, (<http://online.ibfd.org/>, 접속일: 2016. 7. 21)

7) 독일

독일은 R&D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8) 종합평가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을 여러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주요 국가들의 조세지원제도의 세부내역을 살펴봤다. 이러한 내용을 보다 비교 가능한 수준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각 국가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조세지원 혜택을 얼마나 달리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하나의 표로 비교하고 각 국가의 대기업 조세지원을 100으로 볼 때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조세지원 혜택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림을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IV-28〉은 먼저 R&D 조세지원의 정책대상자인 중소기업을 정의할 때 업종에 대한 차별적 규정은 우리나라 이외에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용인 수 조건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설정하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 최소 250명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과거 상시근로자 수 규정보다 대체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이들 국가에서는 고용인 수 규정과 매출액, 총자산 또는 자본금 등의 추가적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추가적 요건은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에너지연구 관련 위탁계약연구비용의범위에 대한 규정만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업규모별 차등지원제도로 보기 어렵다. 영국의 경우 매출액 규정이 1억파운드(원화 기준 약 1,490억원)로 설정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으로 R&D 조세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중소기업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적격 중소기업의 범위 설정 요건으로 자본금 1억엔(원화 기준 약 10억원) 이하의 추가 요건이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매출액 규정으로

5천만유로(원화 기준 약 625억원)를 설정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연구개발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적격 중소기업 요건을 매우 좁게 설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캐나다인이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전년도 소득 50만캐나다 달러(원화 기준 약 4억 5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호주의 경우 매출액 200만호주달러(원화 기준 약 17억 5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 국가들 모두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제조업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좁게 중소기업을 설정하고 서비스업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가 얼마나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로 판단된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해 가야 하는 과정에서 전체 산업의 성장을 골고루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 제도적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28〉 R&D 조세지원의 중소기업 요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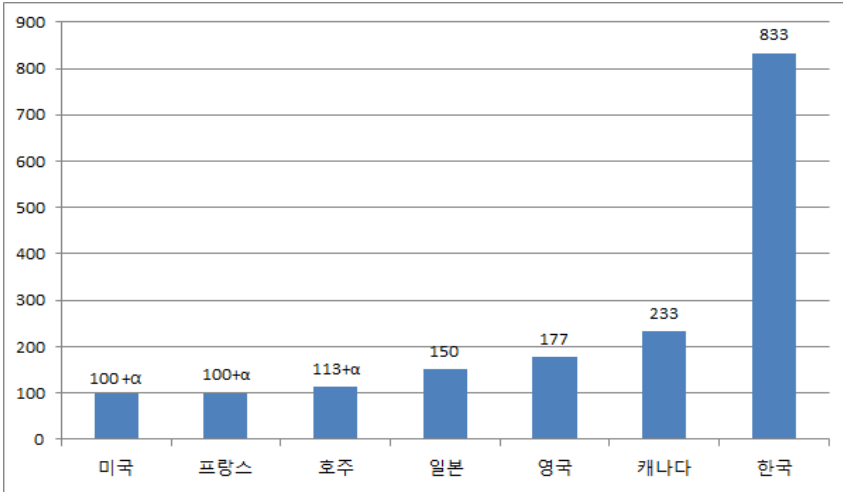
	공제방식	업종	매출액	고용인	기타
한국	세액공제	서비스업종 다수 제외	400억~1500억원 업종별 상이	없음	-
미국	세액공제	없음	없음	500명 이하	기본적으로 차등지원 없으나 에너지연구 관련 계약연구비용에 한해서 기업규모별 차등 적용
영국	추가 소득공제	없음	1억파운드	500명 이하	매출액 조건 대신 대차대조표상 총자산 8,600만파운드 미만과 고용조건 동시 충족시에도 가능
	세액공제	소득공제 지원과 중소기업 요건 동일(손실 발생기업의 경우 소득공제를 환급형 세액공제로 전환 신청 가능)			
캐나다	세액공제	없음	없음	없음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으로 전년도 소득 50만캐나다달러 이하
일본	세액공제	없음	없음	1,000명 이하	자본금 1억엔 이하 및 대기업 지분을 50% 미만과 고용인수 조건 모두 충족
프랑스	세액공제	없음	5천만유로	250명	매출액 및 고용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새로운 프로토 타입과 파일럿 설비에 대해 40만 유로 한도로 20% 세액공제
호주	세액공제	없음	200만호주달러	없음	-

자료: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

우리나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한다. 먼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 중소기업 30%이다.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0으로 볼 때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150이 된다. 일반연구개발비의 당기분 방식의 경우 대기업은 최대 3%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우대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833이 된다. 한편 일반 연구개발비 증가분방식의 경우 대기업 세액공제율 40%와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50%에서 중소기업 우대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125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중소기업 우대 지수는 833으로 나타내고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그림 IV-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조세지원혜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우대지수는 100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에너지연구 관련 위탁계약연구비 인정 범위의 차이로 인해 약간의 추가적 인센티브가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최종 지수는 $100+\alpha$ 로 나타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의 세액공제제도가 운용되고 적격 중소기업의 경우에 한해서 프로토타입 등 시제품 관련 비용에 대한 추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100+\alpha$ 로 중소기업 우대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적격 중소기업에 한해서 대기업 세액공제율보다 5%p 높은 45%을 적용하고 환급가능한 제도가 적용되므로 $113+\alpha$ 로 중소기업 우대 정도를 표시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기업이 받을 수 있는 시험연구비 총액방식 최저 공제율 8%와 중소기업 기반강화 공제율 12%를 이용하면 일본의 중소기업 우대 정도는 150으로 측정된다. 영국의 경우에는 대기업 130%와 중소기업 230%의 소득공제율을 이용하여 177의 중소기업 우대 정도가 측정됐으며 캐나다의 경우 적격 연구개발비 300만캐나다달러까지만 차등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인 대기업 15%와 중소기업 35%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우대 정도를 233으로 측정했다.

[그림 IV-1] 중소기업 R&D 조세지원 우대 정도 비교



자료: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관련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국제비교와 상대적 중소기업 우대 정도를 통해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는 제조업 중소기업을 매우 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이나 혁신성향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현행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중소기업 업종 관련 제한을 축소해서 보다 많은 업종을 조세지원제도 정책대상자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보다 축소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고용 관련 조세지원제도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로 고용인원 증가 또는 임금 인상 시 세액 공제하는 제도와, 고용주 부담 종업원 보험료 경감제도가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는 이 제도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모든 기업에 취업취약계층 채용 시 법인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와, 소기업에 한해 고용주부담 보험료의 50%만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캐나다는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직원 채용 시 임금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와, 소기업에 한해 고용주 및 종업원 부담 보험료를 경감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임금 인상 또는 고용인원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중소기업에 세액공제한도를 높게 설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임금지급액의 6%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중소기업에 한해 초과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및 조기 환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독일, 영국의 경우 고용지원 조세지원제도 관련 특별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미국

은퇴군인, 저소득가구 구성원,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 취업취약계층 및 고용시간에 따라 임금지급액의 25% 또는 40%를 고용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용창출 세액공제(working opportunity tax credit)를 운영 중이다. 동 제도의 적용 대상 취업취약계층은 실업 은퇴군인, 가구 수혜원조를 받는 가족의 구성원, 푸드스탬프 수혜자, 기업유치, 지역개발을 위해 지정한 지역의 거주자,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전과자, 생활보조금 수혜자, 여름청년취업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등이다. 모든 기업규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용창출 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고용주가 고용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따라 상이한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 IV-29>를 참조하기 바란다.

미국은 상시 근로자 수가 25명 미만, 연간 평균 임금지급액이 5만달러 미만이며, 고용주가 종업원 보험료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주 부담 종업원 보험료의 50%만큼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⁹³⁾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35%로 낮아진다.

93)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uac/small-business-health-care-tax-credit-questions-and-answers-who-gets-the-tax-credit>, 접속일: 2016. 7. 23)

〈표 IV-29〉 미국의 고용창출세액공제 제도

(단위: 달러)

고용 시간	TANF 수혜자 가족 ¹⁾	은퇴군인		그 외 ²⁾		
		120시간 이상 400시간 미만	400시간 이상	120시간 이상 400시간 미만	400시간 이상	
공제율	1년차: 40% 2년차: 50%	25%	40%	25%	40%	
공제 한도	2년간 9,000	· 푸드스탬프수령자	1,500	2,400	1,500 (Summer youth 참가자의 경우 750)	2,400 (Summer youth 참가자 1,200)
		· 장애군인				
		- 장애인보상금 수령	3,000	4,800		
		- 장애인보상금 수령하면서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	6,000	9,600		
		· 실업군인				
		- 실업기간 최소 4주	1,500	2,400		
- 실업기간 최소 6주	3,500	5,600				

주: 1) 가구원조(Temporary Assistance Needy Families)를 18개월 이상 받는 가족의 구성원인 경우
 2) 푸드스탬프 수령자, 특정지역 거주자, 재활프로그램 참여 장애인, 범죄자, 생활보조금 수령자
 자료: 미국 노동부(https://www.doleta.gov/business/incentives/opptax/eta_default.cfm, 접속일: 2016. 7. 23)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6), p. 31 재인용

〈표 IV-30〉 미국의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조세 지원	대기업 적용	중소기업 적용
세액 공제	고용주 부담 보험료의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요건: 다음의 조건 모두 충족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근로자가 25명 이하 - 종업원의 연간 평균 임금이 5만달러 미만 -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한 보험료비용의 최소 50%를 지원하는 경우 · 공제금액: 적격 중소기업의 고용주가 지급한 보험료의 50%만큼 법인세액 공제

자료: 1. 미국 노동부(https://www.doleta.gov/business/incentives/opptax/eta_default.cfm, 접속일: 2016. 7. 23)
 2. 미국 국세청(<https://www.irs.gov/uac/small-business-health-care-tax-credit-questions-and-answers-who-gets-the-tax-credit>, 접속일: 2016. 7. 23)

2) 캐나다

캐나다는 고용주가 자격 조건을 갖춘 수습 직원 채용 시 연봉의 10%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Apprenticeship Job Creation Tax Credit(AJCTC)’ 제도를 운영 중이다.⁹⁴⁾ 여기서 자격 조건을 갖춘 수습 직원은 규정에 따라 약 2년의 계약기간 동안 고용계약이 체결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2006년 5월 1일 이후 고용한 수습직원에 한하여 적용되며, 신청 가능한 최대 금액은 수습직원당 연 2천캐나다달러이며, 동 제도는 현금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비환급형 세액공제제도이다. 그러나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20년간 이월공제 또는 3년간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캐나다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종업원 보험료액이 1만 5천캐나다달러 미만인 경우, 고용주 및 종업원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인하하는 ‘Small Business Job Credit’를 운영 중이다.⁹⁵⁾ 동 제도에 의해 중소기업의 종업원부담 보험료는 100캐나다달러당 1.88캐나다달러에서 1.66캐나다달러로 인하되며, 고용주 부담 보험료는 100만캐나다달러당 2.632캐나다달러에서 2.24캐나다달러로 인하된다.

〈표 IV-31〉 캐나다의 고용지원 조세지원제도

조세 지원	대기업 적용	중소기업 적용
세액 공제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직원을 채용한 경우, 직원 연봉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 (한도액은 수습직원당 연 2천캐나다달러)	
종업원 보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요건: 고용주가 지급하는 총 종업원 보험료액(Employment Insurance)이 1만 5천캐나다달러 미만인 경우 적용내용: 중소기업의 경우 종업원 부담 보험료 1.88캐나다달러에서 1.66캐나다달러로 인하, 고용주 부담 보험료는 2.632캐나다달러에서 2.24캐나다달러로 인하 (보험료율은 100캐나다달러 당 세율임)

자료: 1. 캐나다 국세청

(<http://www.cra-arc.gc.ca/tx/ndvdl/tpcs/ncm-tx/rtrn/cmptng/ddctns/lns409-485/412/jctc-eng.html>, 접속일: 2016. 7. 23)

2. 캐나다 국세청(<http://www.cra-arc.gc.ca/whtsnw/tms/sbjc-eng.html>, 접속일: 2016. 7. 23)

94) 캐나다 국세청(<http://www.cra-arc.gc.ca/tx/ndvdl/tpcs/ncm-tx/rtrn/cmptng/ddctns/lns409-485/412/jctc-eng.html>, 접속일: 2016. 7. 23)

95) 캐나다 국세청(<http://www.cra-arc.gc.ca/whtsnw/tms/sbjc-eng.html>, 접속일: 2016. 7. 23)

3) 일본

일본은 고용인원을 증가시키거나, 임금인상을 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고용촉진세제’, ‘소득확대촉진세제’를 운영중이다. 고용증가기업은 2011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기업이며, 청색신고법인이어야 한다. 임금인상기업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기업이며, 청색신고법인이어야 하며 고용촉진세제와 소득촉진세제는 중복 적용될 수 없다.

고용증가기업은 작년에 비해 고용인원이 5명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종업원을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으면서 작년에 비해 임금을 인상한 기업이며, 고용증가 인원당 20만엔씩 총법인세액의 10%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⁹⁶⁾ 그러나 사업개시연도가 2013년 4월 1일 이후인 신생기업은 고용증가인원당 40만엔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총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당해 연도 지급한 종업원 총급여액이 기준연도(2013년 4월 1일 이후)에 비해 처음 2년간은 2%, 3년차에는 3% 인상되고 평균 급여액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임금인상기업으로 인정되고, 임금인상액의 10%를 총법인세액의 10%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⁹⁷⁾ 중소기업의 경우 총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중소기업 기준은 세법 상 중소기업 규정인 자본금 총액 1억엔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96) 일본 국세청, 「조세특별조치법」 제42조의12, (<https://www.nta.go.jp/taxanswer/hojin/5926.htm>, 접속일: 2016. 7. 23)

97) 일본 국세청, 「조세특별조치법」 제42조의12의4, (<https://www.nta.go.jp/taxanswer/hojin/5927.htm>, 접속일: 2016. 7. 23)

〈표 IV-32〉 일본의 기업규모별 고용 관련 조세지원

조세 지원	조세지원 적용기준	대기업	중소기업 ¹⁾
고용 증가 기업 세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 수가 작년에 비해 10%, 최소 5명 이상 증가(중소기업은 2명) - 당해 연도, 직전연도 종업원을 1명도 해고하지 않은 경우 - 당해 연도 종업원 급여가 인상된 경우 • 공제금액: 신규고용 종업원 1명당 20만엔 (2013년 4월 1일 이후 설립기업은 40만엔) 	한도액: 법인세액의 10%	한도액: 법인세액의 20%
임금 인상 기업 세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연도 지급한 총종업원 급여액이 기준연도(2013년 4월 1일 이후)에 비해 처음 2년간은 2%, 3년차에는 3% 인상된 경우 - 올해 총지급액) 작년 지급액 - 올해 평균 급여액 > 작년 평균 급여액 • 공제금액: 임금인상액의 10% 	한도액: 법인세액의 10%	한도액: 법인세액의 20%

주: 1) 세법상 중소기업 규정인 자본금 1억엔 미만인 기업을 말함
 자료: 1. 일본 국세청(<https://www.nta.go.jp/taxanswer/hojin/5926.htm>, 접속일: 2016. 7. 23)
 2. 일본 국세청(<https://www.nta.go.jp/taxanswer/hojin/5927.htm>, 접속일: 2016. 7. 23)

4) 프랑스

프랑스는 「2012년 재정법(Finance Act 2012)」과 「2013년 재정법(Finance Act 2013)」을 통하여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고용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조세지원제도인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 Tax Credit (CICE)⁹⁸⁾제도를 도입했다. 노동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투자, 연구, 교육, 채용 등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CICE제도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고용주의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서 공제한도를 초과한 세액공제액은 3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2013년 기준으로 4%이었으며 2014년 이후에는 6%가 적용된다.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초과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월공제 대신 조기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소기업, 중소기업 규정은 EU의 중

98) Article 66 of French law no. 2012-1510, of December 29, 2012; IBFD, “Corporate Taxation-France,” Section 1.9.3.1., 2016. 2.

소기업 정의를 따르며, EU의 중소기업 기준은 1) 종업원 수 25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5천만유로 미만 3) 연간 순자산액 4,300만유로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다.

5) 종합

우리나라 고용 확대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산업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제도 중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차등적 조세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뿐이고 다른 제도들은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비교 대상 국가들 중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 모두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범위나 우대 방식이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취약계층 고용창출지원제도는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의 경우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을 높게 설정하고 있지만 이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요건은 상시근로자 수 25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서 매우 좁게 설정되어 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이외에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종업원의 연간 평균 임금도 5만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를 위한 보험료비용의 최소 50%를 지원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캐나다의 경우에 기업규모별로 차등적인 조세지원제도로 중소기업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소기업은 다른 제도들과 달리 고용

주가 부담하는 연간 보험료 총액이 1만 5천캐나다달러 이하인 기업들로 규정되어 있다. 캐나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들은 연봉 4만캐나다달러인 직원을 14명 이하로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즉, 이는 15명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매우 작은 기업들을 위한 제도이다. 이보다 더 많은 고용관련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은 동 제도의 정책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일본의 고용관련 조세지원제도들은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적용하기보다는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모든 규정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만 다르다. 이 경우 프랑스의 중소기업의 요건은 EU의 중소기업 요건인 매출액 5천만유로, 고용인 수 250명 미만, 순자산액 4,300만유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주요국의 표준법인 세부담 비교

가. 표준법인의 설정

표준법인 설정을 통해 세부담 국제비교를 수행한 연구로는 Djankov et al.(2008)이 있다. 이 연구는 85개 국가에 동일한 규모의 중소기업을 상정하고 세금부담을 계산하고 2004년 기준 실효세율을 조사했다. 표준법인의 실효세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법인세를 인하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외에도 매해 World Bank와 PWC가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Paying Taxes가 있다. 이 보고서에는 2016년 기준 189개 국가의 1인당 GNI의 약 60배 수준의 소득을 버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를 비롯해 사회보장기여금 등 고용관련 고용주 부담을 합산하여 계산된 총조세부담률이 담겨 있다.⁹⁹⁾

표준법인을 정교하게 설정할 수 있다면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99) 우리나라의 경우 약 20억원의 세전 이익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과 해당 법인의 고용주 부담을 합산한 결과로서 총세부담률은 33.2%로 보고되어 있다.

도 있겠으나 회계장부에서 각 기업의 물적 투자, 연구개발활동, 고용 등 경영 활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같이 단순한 형태의 표준법인을 설정하되 기업규모별 세부담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국세통계연보』의 수입금액 규모별 신고현황을 이용하고자 한다.

올 하반기 초기 공개된 2015년 신고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서 각 수입금액 구간별 평균 매출액을 구하고 Thomson Reuters의 기업재무자료에서 우리나라 수입금액 구간별 평균 매출액의 $\pm 15\%$ 의 구간에 속하는 흑자기업들을 선정했다. 해당 기업들의 국가별 법인세율 체계에 따라 결산서상 세전 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국가별·수입금액 구간별 평균 표면세율을 구했다. 이 표면세율은 세무조정과 공제감면세액을 반영하기 이전에 기업이 직면한 세율로서 단일세율체계에서는 법정세율 자체가 된다. 다단계 누진구조 세율체계로 과세할 때는 해당 기업소득이 과세될 때 직면하는 법정 평균세율의 개념이 된다. 이후 흑자기업의 결산서상 세전 이익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법인세액을 이용하여 평균 실효세율의 근사치를 계산하고 이 평균 실효세율과 표면세율의 차이로 기업소득 1원당 세무조정 및 공제감면에 따른 세부담 감소효과를 추정했다. 이를 공제감면율이라고 정의할 경우, 결과적으로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법정 평균세율인 표면세율과 공제감면율의 차이가 된다.

〈표 IV-33〉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매출액 및 실효세율: 2014 사업연도

(단위: 억원, %)

수입금액	평균 매출액	실효세율
20억원 이하	6	11.1
20억~50억원	32	11.2
50억~100억원	70	12.5
100억~200억원	138	14.8
200억~300억원	242	15.5
300억~500억원	384	15.5
500억~1,000억원	693	16.0
1,000억~5,000억원	2,001	18.0
5,000억원~	32,164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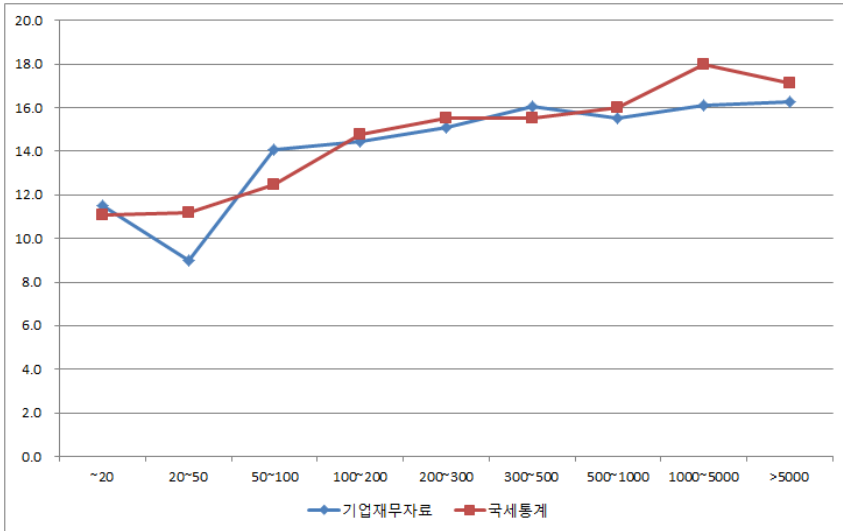
주: 평균 실효세율은 총부담세액의 과세표준 대비 비율로 정의함
 자료: 국세청, (조기공개통계) 『국세통계연보』, 2016

이렇게 구한 평균 실효세율, 표면세율, 공제감면율은 각 국가별·수입금액규모별 표준기업의 세부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보여줄 수 있다. 법정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높은 표면세율에 직면하지만 실제 평균 실효세율은 다시 높은 공제감면율에 의해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법정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표면세율은 법정 세율 수준에 따라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 등으로 공제감면율이 축소되면 상대적으로 실효세율은 높을 수도 있다. 단순한 국가별 실효세율의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실효세율이 도출되는 중간과정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나마 더 확보하는 것은 각 국가들의 법인세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규모별 표준법인과 유사한 법인들이 주요 국가의 법인세체계하에서 과세될 때의 세부담을 수입금액 구간별로 측정하여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인세체계가 얼마나 중소기업에 대해 관대한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기업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추정된 평균 실효세율이 『국세통계연보』상의 평균 실효세율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여기서 제안한 표준법인의 실효세율 추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20억~100억원 구간과 1천억~5천억원 구간에서 다소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실효세율이 『국세통계연보』상의 실효세율의 움직임과 유사해 보인다. 김학수(2013)에서처럼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한 실효세율이 국세통계를 이용한 실효세율에 비하여 얼마나 큰 오차를 갖는지 보여주는 RMSPE는 10.15%, MAPE는 6.95%로 나타나서 『국세통계연보』상의 실효세율 대비 기업재무자료 이용 실효세율은 약 7~10% 수준의 오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 수입금액 규모별 실효세율의 비교: 2014년 결산

(단위: 억원, %)



자료: 국세청, (조기공개통계) 『국세통계연보』, 2016; Thomson Reuters 기업재무데이터

나. 세부담 비교

위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각 수입금액규모별 표준법인의 세부담 수준을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7개 국가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는 아래의 표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여타 국가들은 중소기업 구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 발생하고 이후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물론 독일과 같이 예외적으로 가장 높은 실효세율이 수입금액 5천억원 구간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수입금액이 큰 구간에서 실효세율이 이전의 구간에서 발생한 최고세율보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누진구조를 가진 국가들 이외에 표면세율은 대체적으로 법정세율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누진구조의 법인세율 체계로 과세하거나 특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낮은 수입구간에서 다소 높은 실효세율이 관측된다.

〈표 IV-34〉 수입금액 규모별 실효세율 추정(2014년 기준)

(단위: %)

수입금액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20억원 이하	11.5	22.4	15.8	15.5	19.3	23.0	20.9	-
20억~50억원	9.9	17.0	10.2	13.4	18.6	15.9	11.9	17.1
50억~100억원	15.5	19.2	11.7	13.2	22.4	22.2	15.5	15.3
100억~200억원	15.9	21.3	14.4	14.5	22.4	19.6	14.9	16.3
200억~300억원	16.6	24.3	15.1	16.5	22.2	14.5	12.1	25.3
300억~500억원	17.7	18.8	13.9	16.2	21.5	16.7	15.2	7.3
500억~1,000억원	17.1	24.9	13.7	16.3	21.7	18.1	16.9	18.9
1,000억~5,000억원	17.7	21.6	12.8	15.5	21.3	18.9	17.5	20.9
5,000억원~	17.9	21.6	14.7	15.6	24.4	22.2	22.1	19.5

자료: Thomson Reuters 기업재무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35〉 수입금액 규모별 표면세율 추정(2014년 기준)

(단위: %)

수입금액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20억원 이하	20.5	34.4	21.0	26.3	31.9	37.0	30.1	-
20억~50억원	20.3	35.4	21.0	26.1	31.6	37.0	30.3	30.0
50억~100억원	20.5	36.0	20.9	26.1	31.5	37.0	30.2	30.0
100억~200억원	20.8	36.1	21.0	26.3	33.3	37.0	30.2	29.9
200억~300억원	21.2	36.3	21.0	26.2	33.3	37.0	30.1	30.0
300억~500억원	21.4	36.6	21.1	26.2	33.3	37.0	30.2	29.9
500억~1,000억원	21.9	36.6	21.0	26.2	33.3	36.8	30.2	30.0
1,000억~5,000억원	22.8	37.2	21.0	26.1	33.3	36.9	30.2	30.0
5,000억원~	24.0	36.4	21.0	26.2	33.3	36.9	30.2	30.0

자료: Thomson Reuters 기업재무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우리나라의 법인세 공제감면율은 수입금액이 클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500억~1천억원 구간에서 다시 소폭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세율, 그러나 조금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는 영국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세전소득의 10%가 넘는 공제감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율이 높은 국가들은 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큰 폭의 공제감면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36〉 수입금액 규모별 공제감면율 추정(2014년 기준)

(단위: %)

수입금액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20억원 이하	9.0	12.0	5.2	10.8	12.6	14.0	9.3	-
20억~50억원	10.4	18.4	10.8	12.8	13.0	21.1	18.4	12.9
50억~100억원	5.0	16.7	9.3	12.9	9.2	25.7	14.7	14.6
100억~200억원	4.9	14.8	6.6	11.8	10.8	17.4	15.3	13.7
200억~300억원	4.6	12.0	5.9	9.7	11.1	22.4	18.0	4.7
300억~500억원	3.7	17.8	7.2	10.0	11.8	20.3	15.0	22.6
500억~1,000억원	4.8	11.7	7.3	9.9	11.6	18.8	13.3	11.0
1,000억~5,000억원	5.0	15.6	8.2	10.7	12.0	18.0	12.7	9.1
5,000억원~	6.1	14.8	6.3	10.6	8.9	14.7	8.1	10.5

자료: Thomson Reuters 기업재무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37〉 주요국 대비 실효세율 차이

(단위: %)

수입금액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20억원 이하	-10.9	-4.3	-4.0	-7.8	-11.5	-9.4	-
20억~50억원	-7.1	-0.3	-3.5	-8.7	-6.0	-2.0	-7.2
50억~100억원	-3.7	3.8	2.3	-6.9	-6.7	0.0	0.2
100억~200억원	-5.4	1.5	1.4	-6.5	-3.6	1.0	-0.4
200억~300억원	-7.7	1.5	0.1	-5.6	2.1	4.5	-8.7
300억~500억원	-1.1	3.8	1.5	-3.8	1.0	2.5	10.4
500억~1,000억원	-7.8	3.4	0.8	-4.6	-1.0	0.2	-1.8
1,000억~5,000억원	-3.9	4.9	2.3	-3.5	-1.2	0.3	-3.2
5,000억원~	-3.7	3.2	2.3	-6.5	-4.3	-4.2	-1.6

자료: Thomson Reuters 기업재무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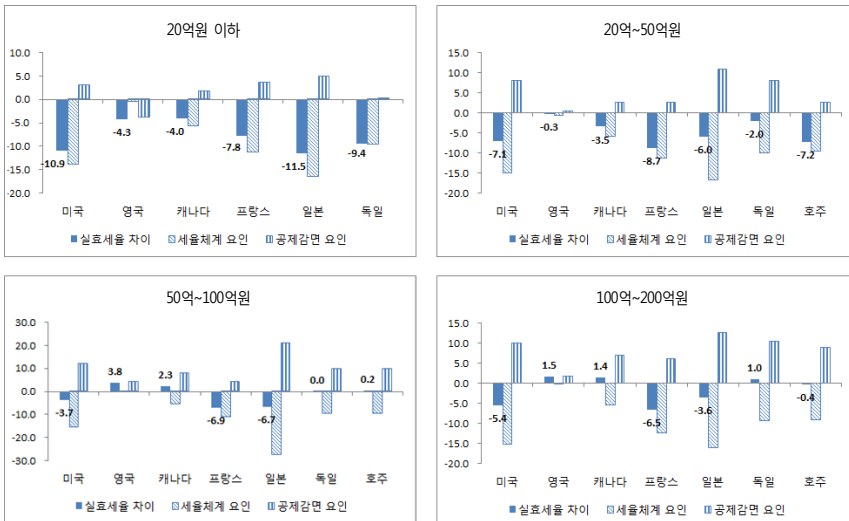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미국과 프랑스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영국, 독일, 캐나다의 실효세율보다는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8단계 누진구조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미국과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매출액 1천억원 이하 구간에서 특히 세부담이 낮게 나타났으며 1천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평균 실효세율은 미국 기업들의 실효세

율과 4%p 차이도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국가의 명목세율의 차이가 13%p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실효세율의 차이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효세율의 차이는 대규모 법인에 대한 공제감면율의 차이가 큰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영국 및 캐나다와의 표면세율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이 국가들이 큰 규모의 조세지출을 통해 자국 기업들의 실효세율을 큰 폭으로 낮춰서 우리나라 유사 규모의 기업들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과의 비교에서도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실효세율을 갖고 있으며 이는 주로 세율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일본 기업들의 비과세·감면을 통한 세부담 인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규모별 세부담의 차이는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가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세율부터 비과세·감면제도에 이르기까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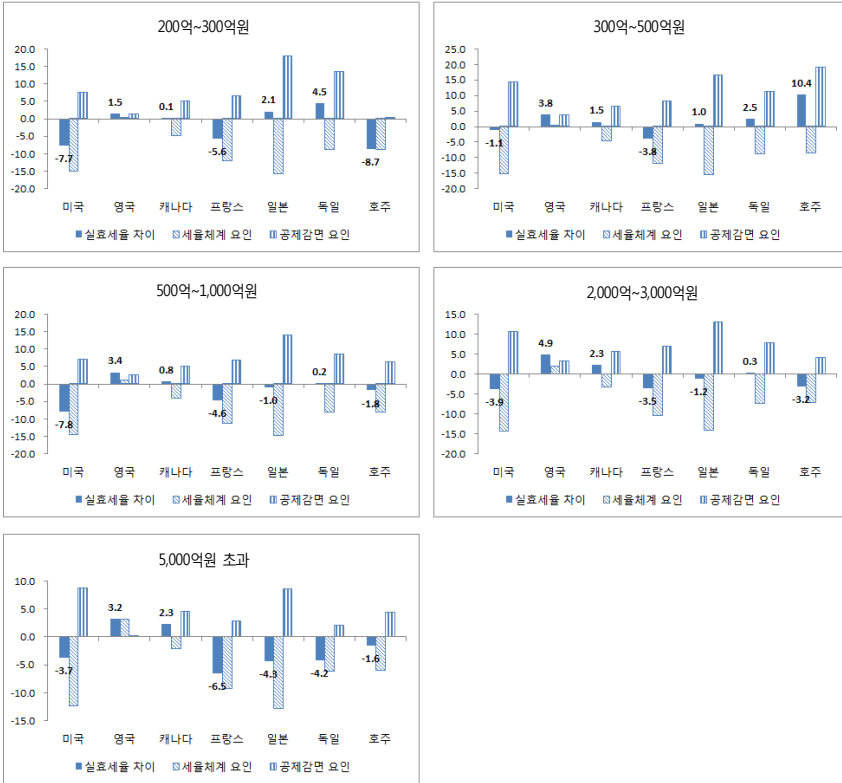
[그림 IV-3] 주요국 대비 수입금액규모별·요인별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

(단위: %)



[그림 IV-3]의 계속

(단위: %)



자료: Thomson Reuters 기업재무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V.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중소기업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검토한 결과, 과거 상시근로자 수 등의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개편한 것은 비제조업 중심의 고용 수준이 크지만 매출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새롭게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며 다소나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각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기준점에서 결집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기업규모 분포함수의 불연속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점을 검증했다. 한편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은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활성화되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특허와 같은 연구개발활동의 중간 성과물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으로 잘 연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제도적 요인으로 우리나라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도 개선의 대상임을 살펴보았다. 제도적으로 여러 서비스업종들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세법상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대상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업종 간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경우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매우 좁게 설정하고 있으며 여타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제도별로 정책대상자 중소기업의 범위를 달리 설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살펴봤다. 또한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는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기보다는 대체로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보다 혁신지향적이고 성장지향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다음의 개편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소기업들의 범위 기준을 새로운 모든 업종이 포괄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개발연대에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세지원제도가 제조업 중심으로 도입되어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세계경제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롭게 생성되어 발전하는 신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업종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법상 중소기업들의 범위 기준 중 하나인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원용하지 말고 현재보다 좁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 한정하더라도 여타 국가들의 조세지원을 위해 제도별로 설정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매우 작은 영세기업 수준으로 축소하면 영세기업 수준에서 벗어난 기업들의 추가적인 성장을 제한하는 근본적 세제상의 요인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규모기준에 의존하지 말고 조세지원제도별로 해당 지원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정책대상을 보다 특정화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대체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업종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과세체계의 기본 개편방향을 견지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 구체적 개편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개편안은 법인세를 단일세율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현재의 3단계 초과누진 구조의 법인세율 체계는 국제적 추이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 5억~5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의 수평적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금액 5억~50억원 구간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에 약 10~15%p 수준의 실효세율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세율 격차는 법인세율을 단일세율체계로 개편함으로써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금액 5억~10억원 구간에 속하는 법인의 기업당 평균 과세표준은 6,100만원이고, 10억~20억원 구간에 속하는 법인의 기업당 평균 과세표준은 1억 900만원, 20억~50억원 구간에 속하는 법인의 기업당 평균 과세표준은 2억 400만원으로 평균적으로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므로 22%의 단일 세율로 과세될 경우 평균 실효세율이 상승하여 개인사업자와의 실효세율 격차를 상당부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한 실효세율 감소효과도 축소되어 개인사업자와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방안은 중소기업의 조세저항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예상되는 조세저항을 다소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든 법인의 세율을 특정 수준의 단일세율체계로 개편함과 동시에 많은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특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도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개편안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과감한 정비이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거나 긍정적 외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는 오남용의 여지가 큰 제도들에 대한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비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우대 조세지원제도들이 중소기업들을 보다 혁신지향적이고 성장지향적인 기업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정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미 도입된 혁신지향적이고 성장지향적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을 제한하는 제도부터 과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지원제도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이다. 김학수(2016)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동 제도는 수익성을 확보한 중소기업들에 영위 업종, 기업규모, 소재위치에 따라 세액의 5~30%를 단순히 감면해주는 제도이고 많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들이 활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

로부터 기대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없다. 동 제도의 수혜요건은 수익성을 확보한 흑자 중소기업이라는 요건 이외에는 별다른 수혜요건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동 제도의 수혜대상 업종에 속해야 하고 보다 많은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위치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한 기업이 고용을 더 늘리거나 투자를 더하거나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등 긍정적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특정 경제행위 요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논리적으로 판단할 때 이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지만 동 제도의 폐지가 국회 등 정치권에서 수용되기 쉽지 않다. 김학수(2016)는 대안적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와 통합하여 설립한 지 오래된 기업일수록 낮은 세액감면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설립 후 15~20년 이후부터는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용과 같은 기업의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와 연계하여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유사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투자 및 고용 관련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사지원제도를 동시에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정책목표의 타당성, 제도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조세특례 성과평가체계 안에서 수행되고 있는 심층평가는 주로 하나의 특례제도에 한해서 시계열적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여러 지원제도를 하나의 군(群)으로 묶어서 어떤 기업들이 어떤 지원제도를 주로 활용하는지 분석하고 특정 제도에 의해 다른 제도의 활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¹⁰⁰⁾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도입 취지를 구현하는데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0)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적극적 자료 협조가 필요하다. 특정 과세연도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들의 개별 납세자료 부속서류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각종 공제감면신청내역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의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즉 한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 공제액, 감면액, 부담세액뿐만 아니라 공제액과 감면액이 각각 어떤 조세지원제도에 의한 것인지 세부적인 내역까지 모두 포함하는 형태의 분석자료를 구축하는 작업이 국세청으로부터 지원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법인세 신고안내』, 2016.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0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기사 관련」, 2015. 8. 17.
- 기획재정부, 『2013 조세개요』, 2013.
-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10.
- 김학수, 『기업 특성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2.
- _____,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정포럼』, 제237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김학수·오종현, 『서비스산업 친화적 세제 개편방안』, 기획재정부 용역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6·2017.
- 이병기,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재검토 방향: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KERI Insight』, 2013.
-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각 연도.
-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201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요국 연구개발 세제지원 현황』, 2015.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성장저해 조세제도 개선방안」, Issue Paper 2012-01, 2012.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6년 제1호, 2016.
- _____, 「2016년도 사업계획서」, 2016. 3. 31.

- Autio, E. and W. Holzl, "Addressing Challenges for High-Growth Companies: Summary and Conclusions of the Europe Innova Gazelles Innovation Panel," Europe Innova Paper No. 6, 2008.
- Candela, M. A., *Size-Dependent Policies and Firm Behavior*,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2013.
- Deloitte, *Global Survey of R&D Incentives*, 2015.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Tax Expenditures and Evaluations*, 2015.
- Department of Finance, Ireland, *Report on tax expenditures*, 2015.
- Djankov, S., Ganser, T., McLiesh, C., Ramalho, R. and Shleifer, A., "The Effect of Corporate Taxes on Investment and Entrepreneurship," NBER Working papers, No. 1375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8.
- Freedman, J., "Reforming the Business Tax System: Does Size Matter? Fundamental Issues in Small Business Taxation," in Evans, C. and R. Krever(eds.), *Australian Business Tax Reform in Retrospect and Prospect*, Thomson Reuters, Australia, 2009.
- Gale, W. and S. Brown, "Small Business, Innovation and Tax Policy: A Review," Tax Policy Center, Urban Institute and Brookings Institution, 2013.
- HM Revenue & Customs, United Kingdom, "Estimated cost of tax reliefs, expenditures and allowances," 각 연도.
- Kushnir, K., How Do Economies Define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MSMEs)?, *Companion Note for the MSME Country Indicators*, IFS, 2010.
- McCrary, J., "Manipulation of the running variable in the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A density test," *Journal of Econometrics*, 142, 2008, pp. 698~714.
- OECD, "Taxation of SMEs in OECD and G20 Countries," OECD Tax Policy

Studies, 2015.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alytical Perspectives*, The White House, 각 연도.

World Bank Group & PwC, 『Paying Taxes 2016』, 2016.

〈웹사이트 및 기타자료〉

과학기술통계서비스(<https://sts.nti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B%B3%B8%EB%B2%95#J6369527>, 접속일: 2016. 4. 2)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statisticsList>, 접속일: 2016. 7. 2)

미국 국세청(<https://www.irs.gov/>, 접속일: 2016. 7. 24)

미국 노동부(https://www.doleta.gov/business/incentives/opptax/eta_default.cfm, 접속일: 2016. 7. 23)

미국 법령사이트(<http://uscode.house.gov/>, 접속일: 2016. 7. 24)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국내 총 R&D 투자는 63조 7,341억원, 전년 대비 7.48% 증가」, 보도자료, 2015. 10. 29.

영국 정부 통합 사이트(<https://www.gov.uk/>, 접속일: 2016. 7. 24)

일본 국세청(<https://www.nta.go.jp/>, 접속일: 2016. 7. 23)

일본 재무성(<http://www.mof.go.jp/>, 접속일: 2016. 7. 2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확정」, 보도자료, 2013. 12. 11.

캐나다 국세청(<http://www.cra-arc.gc.ca/>, 접속일: 2016. 7. 18)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0(http://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ZTITLE&listid=K2_KI, 접속일: 2016. 7.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https://www.mnd.or.kr/info-service>, 접속일: 2016. 7.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접속일: 2016. 9. 22)

- 호주 국세청(<https://www.ato.gov.au/>, 접속일: 2016. 7. 19)
- 호주 기업청(<https://www.business.gov.au/>, 접속일: 2016. 7. 24)
- 호주 법령사이트(<https://www.legislation.gov.au/>, 접속일: 2016. 7. 24)
- IBFD, (<http://www.ibfd.org>, 접속일: 2016. 7. 21)
- OECD, Measuring R&D Tax Incentives (www.oecd.org/sti/rd-tax-stats.htm), 2013.
- The World Bank, 미국 GDP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RP.CID>, 접속일: 2016. 9. 22)

중소기업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학수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반 제도들의 문제점을 실증적 분석과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중소기업 과세체계와 기업 과세체계를 보다 성장 친화적이고 혁신 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설정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의 정책대상자 설정의 기준으로 삼음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특정 기준변수의 상한선에 결집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거의 모든 업종에서 그러한 현상이 관측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을 우대하는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얼마나 중소기업에 우호적인지를 국제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업종 제한을 폐지한다. 둘째,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세법상 중소기업의 규모를 현재의 수준보다 현저히 작은 규모로 다시 설정한다. 셋째,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일괄적으로 설정하지 말고 지원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제도의 정책대상자를 보다 특정화한다.

이상의 세 가지 기본 개편방향을 견지하며 추진해야 할 두 가지 구체적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수입금액 5억~50억원 구간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단일세율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익성을 확보한 중소기업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 해주고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

Fundamental Issues in Small & Medium Business Taxation

Hag-Soo Kim

This Report suggests the direction for reforming small & medium business taxation in order to make SMEs being more growth and innovation oriented, based on some empirical analyses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of SMEs tax system. Korean general criteria for SMEs setting policy targets of many implemented SMEs' policies limits the growth of SMEs due to the bunching effect just around the threshold level. It is also discussed how Korean preferential tax regime for SMEs is relatively more generous than other countries.

It provides three basic directions for reforming small & medium business taxation with a couple of specific policy remedies. Three basic directions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hat the sales criteria for SMEs should include all the industries at least for the purpose of taxation, the second is that the sales criteria for SMEs should be set much smaller than the current, and the last is that the policy target of SMEs should be set differently so as to enhance the efficacy and efficiency of tax reliefs.

There are two specific policy remedies that should be pursued right away. One is reforming gradual corporate income tax rates into a unified

one so that the horizontal equity between those unincorporated firms and the incorporated. The other is to repeal the special tax exemption for SMEs that allows 5~30% off of the calculated tax amounts simply because the firm is small, located in non-metropolitan area and profitable.

■ 저자약력

김학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Duke University 경제학 석사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김현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구보고서 16-03

중소기업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행	행	2016년 12월 30일
저자	자	김학수
발행인	인	박형수
발행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지	www.kipf.re.kr
등록	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가	9,000원
조판 및 인쇄	쇄	상일인쇄(주)
I S B N		978-89-8191-840-8 9332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